K-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미나

· K-SDGs 이행계획 검토
· L-SDGs 추진방안 토론

CONTENTS

❒ 세미나 개요

추진목적 ····· 003

개요 ····· 003

프로그램 ····· 004

❒ 세미나 1

K-SDGs 추진경과 설명 ····· 005

K-SDGs 이행계획 설명 ····· 035

첨부자료1.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안) ····· 039

첨부자료2. K-SDGs 이행계획(안) ····· 061

K-SDGs 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 ····· 281

❒ 세미나 2

L-SDGs 추진 사례 ····· 285

K-SDGs 확산과 L-SDGs로 전환을 위한 자유토론 ····· 295

세미나 개요

세미나 개요

|추진목적|

❍ K-SDGs 목표 및 이행계획 검토

❍ K-SDGs 목표 및 이행계획 의견 수렴 및 보완

❍ K-SDGs를 통한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방안 논의

|개 요|

❍ 주 제 : K-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미나

❍ 일 시 : 2018년 11월 15일(목) 14:00 ~ 18:00

❍ 장 소 : 대전NGO지원센터 대교육장

❍ 참석대상 :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및 관계자 등

❍ 주 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부

❍ 사업내용

- K-SDGs 목표 및 이행계획 검토, 의견수렴 및 보완
- K-SDGs를 활용한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방안 논의

|프로그램|

❍ 11월 15일(목) 14:00 ~ 18:00 / 전체 진행 : 손명균 사무관

구분	시간	주요 내용
개회식	13:00~14:00	• 접수
	14:00~14:10	• 참가자 소개
세미나 1	14:10~16:00	• K-SDGs 추진경과 설명 - 진행 :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 K-SDGs 이행 계획 설명 - 진행 : K-SDGs 작업반 • K-SDGs 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
휴식	16:00~16:10	• 휴식
세미나 2	16:10~16:40	• L-SDGs 추진 사례 - 진행 : 당진협의회 이동준 사무국장
	16:40~17:40	• K-SDGs 확산과 L-SDGs로 전환을 위한 자유토론 - 진행 : 전국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
석식	18:00~	• 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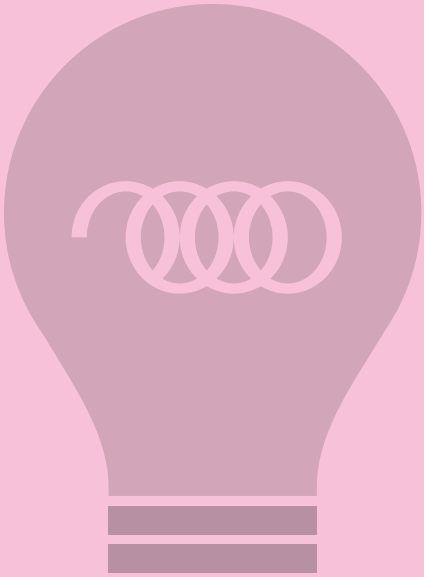

세미나 1

- 세미나 1 -

K-SDGs 추진경과 설명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K-SDGs 수립 경과 및 중간 결과
2018. 10. 31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ntents_ 목차
Ⅰ K-SDGs 수립 경과
Ⅱ K-SDGs 중간 결과
Ⅲ K-SDGs 향후 보완 단계 설명
Ⅳ 향후 추진계획

I
K-SDGs 수립 경과

I K-SDGs 수립 경과
지구촌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UN의 글로벌 비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Ⅰ K-SDGs 수립 경과

UN SDGs 수립과정

❖ SDGs Decision Making Proces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Ⅰ K-SDGs 수립 경과

2018년 K-SDGs 수립 추진

국무회의 보고 후 확정

Ⅰ K-SDGs 수립 경과

K-SDGs 민관학 공동작업반

SDGs	총계	1,10	2	3	4	5	6	7,13	8,9	11	12	14	15	16	17
총계	192	8	10	10	18	10	11	28	18	11	21	11	12	11	13
민	87	4	4	6	8	3	5	14	8	7	10	3	5	5	5
관	72	3	3	3	7	6	4	10	5	2	10	6	5	2	6
학	33	1	3	1	3	1	2	4	5	2	1	2	2	4	2

Ⅰ K-SDGs 수립 경과

K-SDGs 공동작업반 운영경과

- K-SDGs 작업반(430명*) 섭외확정 및 K-SDGs 설명회 개최 (4.26, 작업반 kick-off)
  * 민간 전문가 192명, 33개 부처 공무원 238명
- K-SDGs 작업반 보고서 초안 확정 및 공개 (5.18)
- 제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5.21~5.31)
- K-SDGs 보고서(안)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3회, 800여명 참석, 6.7~12) * 경남권, 호남권, 수도권
- K-MGoS 그룹별 입장보고서 제출 (~6.11)
- K-SDGs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그룹(K-MGos)대표 간 회의개최 (6.14)
- 상반기 국민 대토론회 개최 (6.21)
- UN 고위급정치포럼 참석 및 K-SDGs 수립 경과 발표 (7.17)
- 부처별 세부목표 지표(안)에 대한 이행계획 작성 (8월~)
- K-SDGs 전문가 작업반 워크숍 개최 (18.9.5)

Ⅰ K-SDGs 수립 경과

MGoS 참여의 의의 및 운영경과

	여성	청소년	NGO	노동조합	기업	과학기술	농민	지역 공동체	농민	이주민	장애인	자원 봉사	……
빈곤													
기아													
건강													
……													
인권													
주거권													
노동권													
보행권													
……													

- 이해관계자 그룹(K-MGoS) 그룹대표 확정 및 설명회 개최 (5.11)
  *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88개 기관 및 53명 참여
- K-MGoS 그룹별 입장보고서 제출 (~6.14)
- K-SDGs 이행계획에 대한 입장보고서 제출 ('18.11.9)

Ⅰ K-SDGs 수립 경과

MGoS 입장문 검토와 반영

의견제시	반영결과
5.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성폭력 유형별 피해율 가정폭력 건수 성폭력 신고/검거율
5.5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기회 보장	공공부문, 장관급 여성 비율
5.6 모성보호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대한 접근 보장	성교육 실적 성건강 보건서비스 이용경험 임신중절 접근성
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확대	1.1 / 4.1 / 4.2 / 4.4 / 7.1 / 8.5 / 8.6 / 10.1 / 10.3 / 10.4
국토체계 적합성 제고	7.3 / 7.4
성평등	성평등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Ⅱ
K-SDGs 중간 결과
(지표 체계 및 이행계획)

비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
전략
2. 지구환경
3. 번영
4. 평화
5. 파트너십
사람이 사람답게
지구환경
원칙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④ 교육증진
⑪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⑰ 지구촌 협력강화
5. 파트너십
지구촌 협력강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
2030년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 구현
2. 지구환경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⑬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수비
⑤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⑮ 육상생태계 보전
4. 평화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3. 번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성장
⑨ 성평등 보장
⑩ 불평등 하소
⑯ 인권 · 정의 · 평화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⑨ 사회간 반시설 구축, 정보 확대 및 경제성장
⑫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증진

Ⅱ
사회 분야
(1, 3, 4, 5, 10)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1, 10 :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OECD 주요국 노인 상대빈곤율 현황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서울 노인근로자 실태 조사(임금근로자)
12.9시간
122만8000원
한국
49.6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1, 10 :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1분기 기준 전국가구
소득 1분위-5분위가계소득 격차
1분위
5분위
10.15
04
06
08
12
14
16
18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1, 10 :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주요 세부 목표

1.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2. 나이, 성별, 성에 대한 차별, 지위 등 기관제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확대

주요 지표

1. 중위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4.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고용률

주요 이행목표

1. 기초생활보장 부양수준 강화
   - 중위소득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 수급자 대상자 확대, 기준 임대료 인상
2. 서민, 중산층 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
3. 장애인의 기본 교육 활성화 중심의 발전 로드맵(19~23) 마련
4.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 추진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3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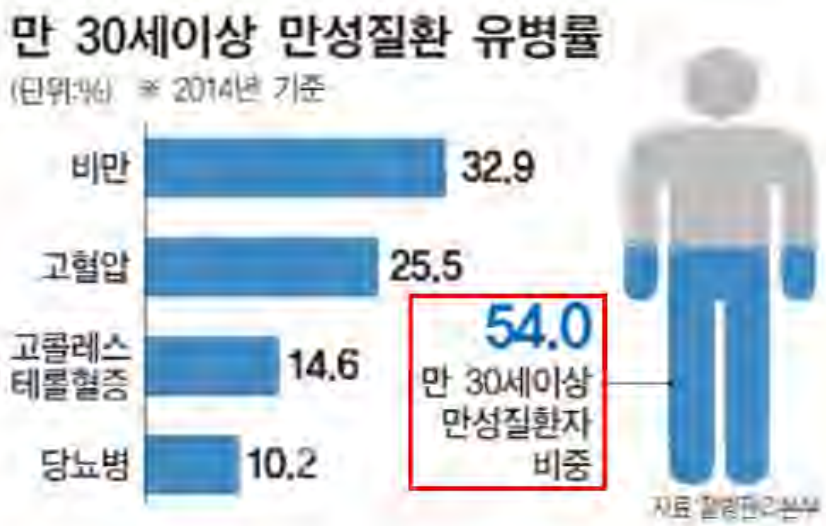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3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OECD 주요 회원국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2015, %)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데이터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3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주요 세부 목표

1. 대국민 다성질환의 식해로 이어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 노력, 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최소화
2.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출생의 극복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

주요 지표

1. 성인흡연 감연율
2. 장애인 건강권 확보노력(건강검진 수검율, 우울증 치료율 등)
3. 아동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
4. 환경성 질환자 수
5. 인구 천명당 의사 수
6. 합계 출산율

주요 이행 계획

1.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중앙·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이전망 구축)
2. 응암플러스사업 서비스, 아동비만예방사업 등 비만 유병률 관리 강화
3.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4. '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5. 화학물질 선(후) 사용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Ⅱ 환경적 관점

K-SDGs 4 : 교육증진

< 교육 양극화 >

계층간 소득격차 ▶▶▶ 교육 불평등 ▶▶▶ **사회 양극화**

Ⅱ 환경적 관점

K-SDGs 4 : 교육증진

주요 세부 목표

1. 성별, 장애 여부, 이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주요 지표

1. 고등교육 이수율
2. 평생학습 참여율
3. 성별, 장애 인정, 나눈화 지역별 취학률 및 학업중단율
4.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5. 학교 간 국가 학력 수준

주요 이행계획

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부 틈없는 안전망 구축
2.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 지원, 지역단위 평생학습 진흥 등 평생학습 참여 확대
3. 교사역량 강화 및 콘텐츠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이행 확산
4. 교원 수급 확대(OECD 평균 수준)

Ⅱ 환경적 관점

K-SDGs 5 : 성평등 보장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적 기회로 본 양성평등

1위 부룬디
2위 노르웨이
3위 필리핀
4위 미국
5위 바하마
⋮
124위 한국

정치분야에서의 양성평등

1위 아이슬란드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니카라과
5위 스웨덴
⋮
93위 한국

남녀 각료 비율

남녀 국회의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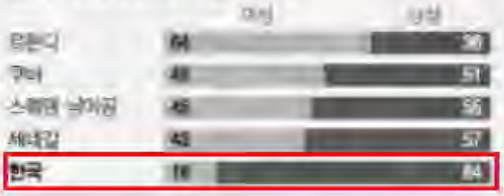

Ⅱ 환경적 관점

K-SDGs 5 : 성평등 보장

주요 세부 목표

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철폐한다.

주요 지표

1. 취학경노업 인증면적 비율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건수
3.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주요 이행계획

1. 국성성별영향평가 확대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대
2. 여성폭력방지 분야 기본법 제정 등 여성폭력방지 제도화 기반 마련
3.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이행

Ⅱ
경제 분야
(2, 8, 9,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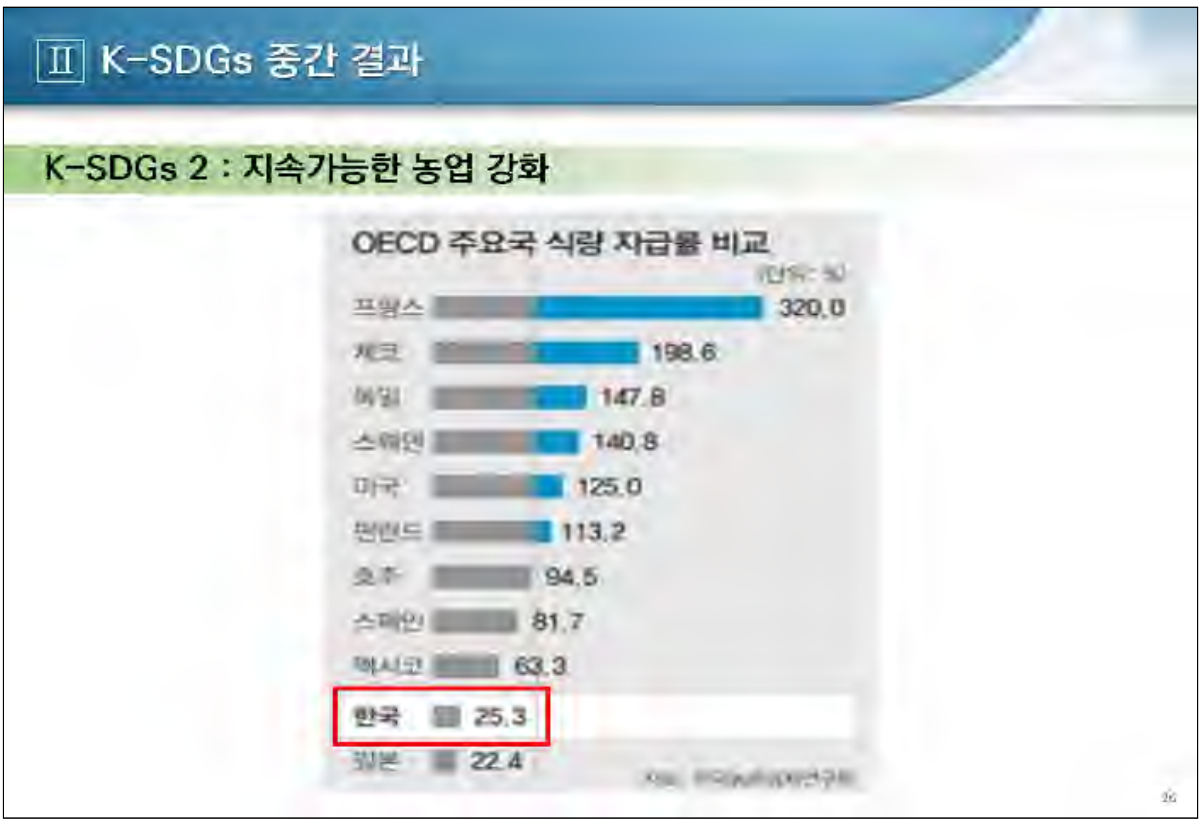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2 :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OECD 주요국 식량 자급률 비교
320.0
198.6
147.8
140.8
125.0
113.2
94.5
81.7
63.3
한국 25.3
22.4

Ⅱ K-SDGs 중간 결과

K-SDGs 2 :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주요 세부 목표

1.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종자, 작물, 가축 등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주요 지표

1.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2. 선제농가 농업 소득
3. 식량농업 및 농림에 유전자원

주요 이행 목표

1. 농가 소득의 다각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2. 고령농의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진,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
3. 종업유전자원 다양성 제도 및 인프라 보존(기후변화 취약종 보전대책 추진 등)

Ⅱ 환경적 관점

K-SDGs 8, 9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Ⅱ 환경적 관점

K-SDGs 8, 9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주요세부목표

1.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강화하고 내재된 고용 기술역량을 향상시켜 (가) 혁신 기술상용화 주신이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지표

1. 고용성장지수
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전년 실업률
3.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4. 무차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비율

주요이행계획

1. 일자리 창출 친화적인 정부정책 조정
   고용영향평가 내실, 확대, 새창업 청년 사업사업 등을 위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20년까지 20.5천명 수준)
3. 청년고용 의무제 의무비율 상향 등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강화
4.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Ⅱ 환경적 관점

K-SDGs 11 :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Ⅱ 환경적 관점

K-SDGs 11 :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주요 세부 목표

1.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하며,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주요 지표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가구 비율
2.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장률(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3. 도시인구 대비 공원녹지면적
4. 장애인 지하철 공공기여금 비율
5. 광역도시철 대기인원도

주요 이행 계획

1. 상석 임대주택 총 6만호 공급, 반값주택 시범제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2. 2019년까지 시내버스 42% 이상 보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 인구감소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Ⅱ 환경적 관점

K-SDGs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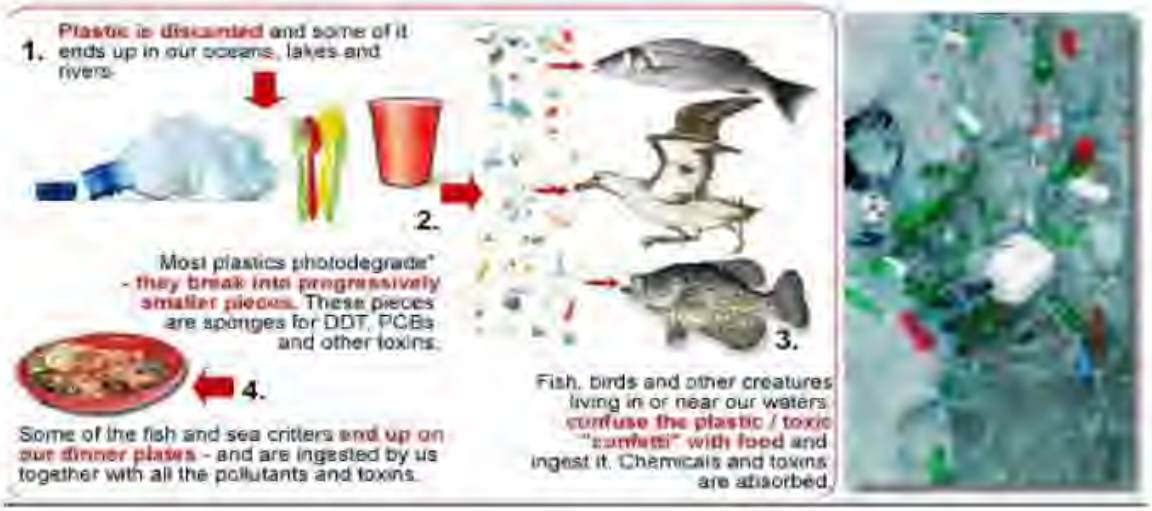

Ⅱ 환경적 관점

K-SDGs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8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대한민국의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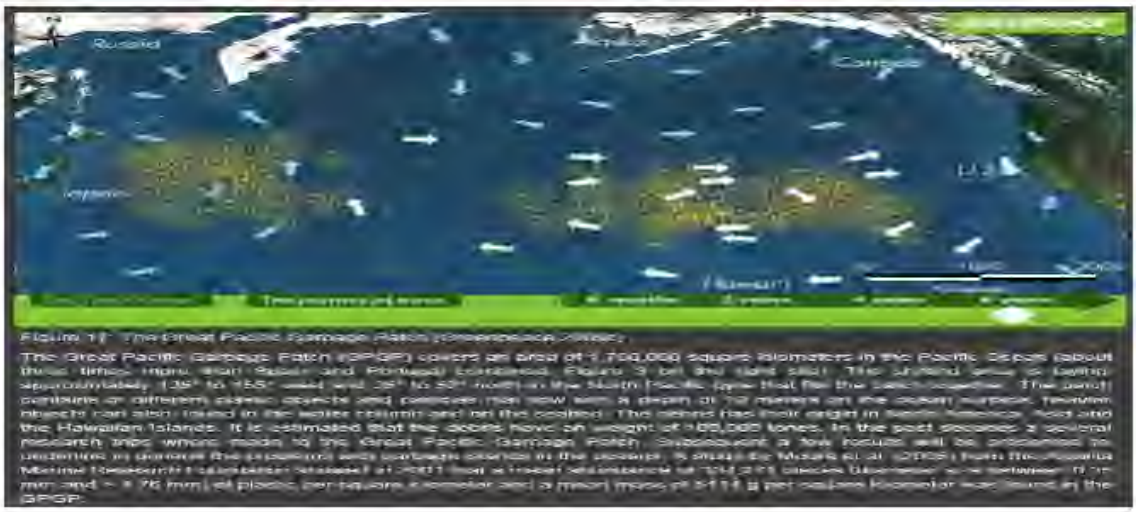

Ⅱ 환경적 관점

K-SDGs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주요 세부 목표

1. 모든 자원 및 소금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주요 지표

1. 물질 발자국
2. 식품 손실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4.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5.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주요 이행 계획

1. 관리사각지대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처리 대책
2.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제품 등 설계기선으로 재활용 추진
3. 플라스틱 재활용 제도, 새생원료 공공구매 확대
4. 플라스틱 등 재활용기술 R&D 추진

Ⅱ
환경 분야
(6, 7, 13, 14, 15)

Ⅱ 환경적 관점
K-SDGs 6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1인당 물 사용량 국가 간 비교
미국 378L
일본 311L
한국 282L
덴마크 188L
독일 150L
프랑스 150L

Ⅱ 환경적 관점

K-SDGs 6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주요 세부 목표

1.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안전한 식수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며,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

주요 지표

1. 상하수도 보급율
2. 누수율
3. 가축장수처리시설 비율
4. 국민 1인당 물사용량
5. 생태하천 복원 구간

주요 이행 계획

1.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2. "손한이음"과 수요자중심의 물 재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물 재이용 확성화
3.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를 통한 누수율 저감 추진

Ⅱ 환경적 관점

K-SDGs 7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Ⅱ 환경적 관점

K-SDGs 7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주요 세부 목표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된 접근을 보장

주요 지표

1.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 1차에너지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
3. 전체 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

주요 이행 계획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 인증기기 보급 확대
2.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3.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까지 20% 확대 추진

Ⅱ 환경적 관점

K-SDGs 13 :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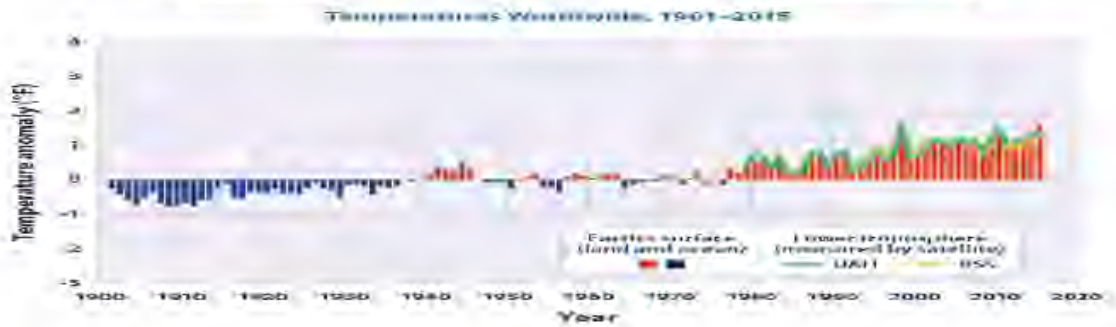

Ⅱ 환경적 관점

K-SDGs 13 : 기후변화 대응

주요 세부 목표

1.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전지구의 온도상승을 2도씨 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주요 지표

1. 기후변화 적응능력 내재지표 개선율
2.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주요 이행 계획

1. 전력에 대한 보급 확대 등에 대한 공급시스템의 효율화 및 고효율 발전기기 보급 확대
2.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3.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까지 20% 확대 추진

* [illegible]

Ⅱ 환경적 관점

K-SDGs 14, 15 : 생태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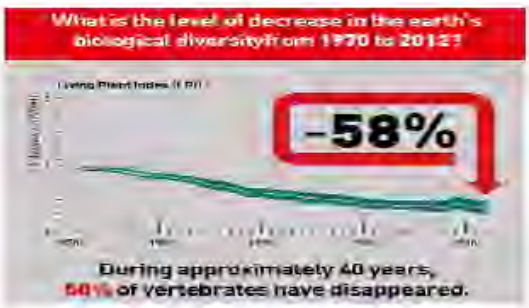

Ⅱ 환경적 관점

K-SDGs 14, 15 : 생태계 보전

43

Ⅱ 환경적 관점

K-SDGs 14, 15 : 생태계 보전

주요 세부 목표

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
2. 육상생태계 다양하게 위한 보전, 복원을 활성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최소화

주요 지표

1. 육상 및 해양으로부터의 쓰레기 감소비율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갯벌복원면적
3.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비율
4. 육지면적 대비 사림면적 비율
5. 수요 발생위기종 복원율

주요 이행 계획

1. 해양환경 및 생태측정을 위한 해양환경평가 지수 개발
2. 국가 주도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3. 국가보호지역을 '21년까지 전국토의 17%이상 확대
4.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을 확대 보전
5. 비둘기, 수달,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20년까지 최소손실 개체수 달성
6. 국내외 생물자원 종합조사를 통한 국내 생물주권 확립

Ⅱ
평화 & 파트너십 분야
(16, 17)

Ⅱ 환경적 관점
K-SDGs 16 : 인권, 정의, 평화
연도별 난민 신청자 추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Ⅱ 환경적 관점

K-SDGs 16 : 인권, 정의, 평화

주요 세부 목표

1. 아동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고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

주요 지표

1. 아동 폭력 사례수, 사이버폭력 건수
2. 국가 청렴지수
3. 내국민 정보공개 성가수 및 응답률

Ⅱ 환경적 관점

K-SDGs 17 : 지구촌 협력 강화

Ⅱ 환경적 관점

K-SDGs 17 : 지구촌 협력 강화

주요 세부 목표

1.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과 원조를 확대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확대

주요 지표

1. GNI 대비 ODA 비율
2. SDGs 이행 국가계획 사업을 위한 역량배양사업 사업규모
3. 개도국 환경경제 협약 건수
4.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5. SDGs 이행 파트너십 예산 지원액

Ⅲ

K-SDGs 향후 보완 단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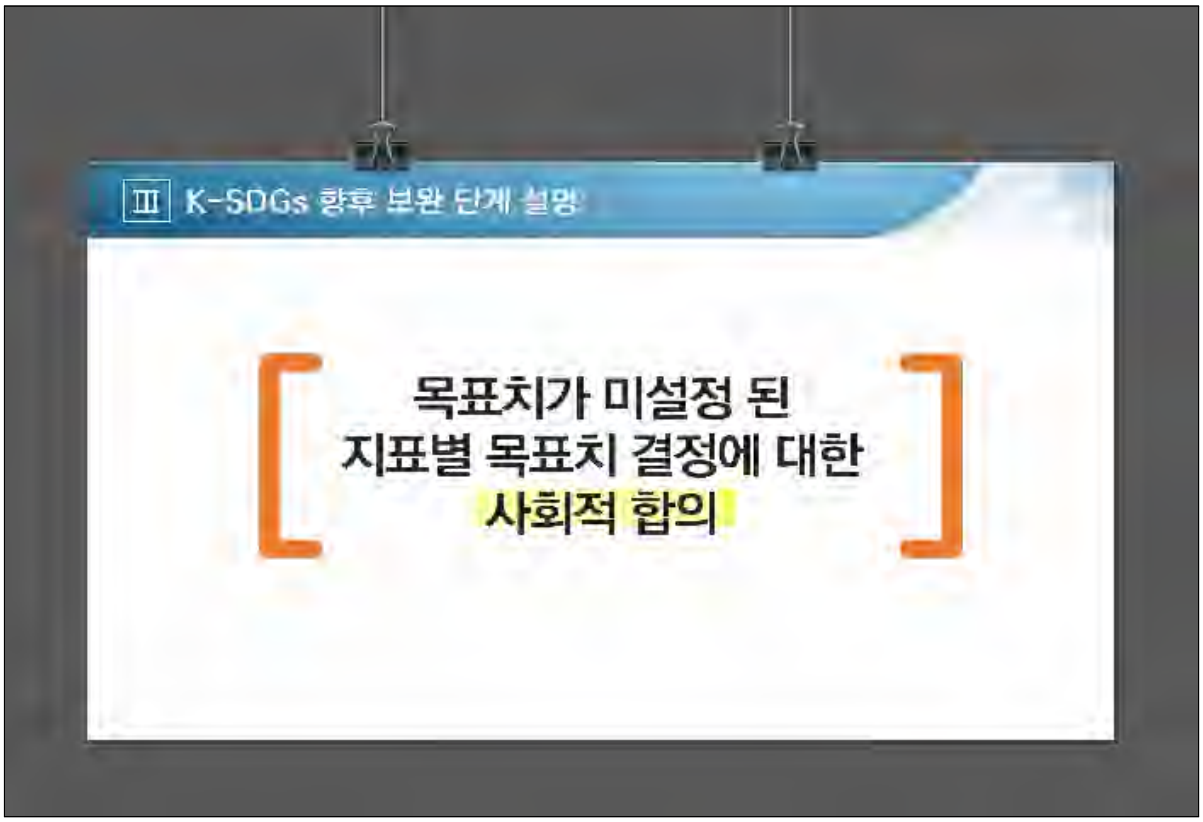
Ⅲ K-SDGs 향후 보완 단계 설명
목표치가 미설정 된
지표별 목표치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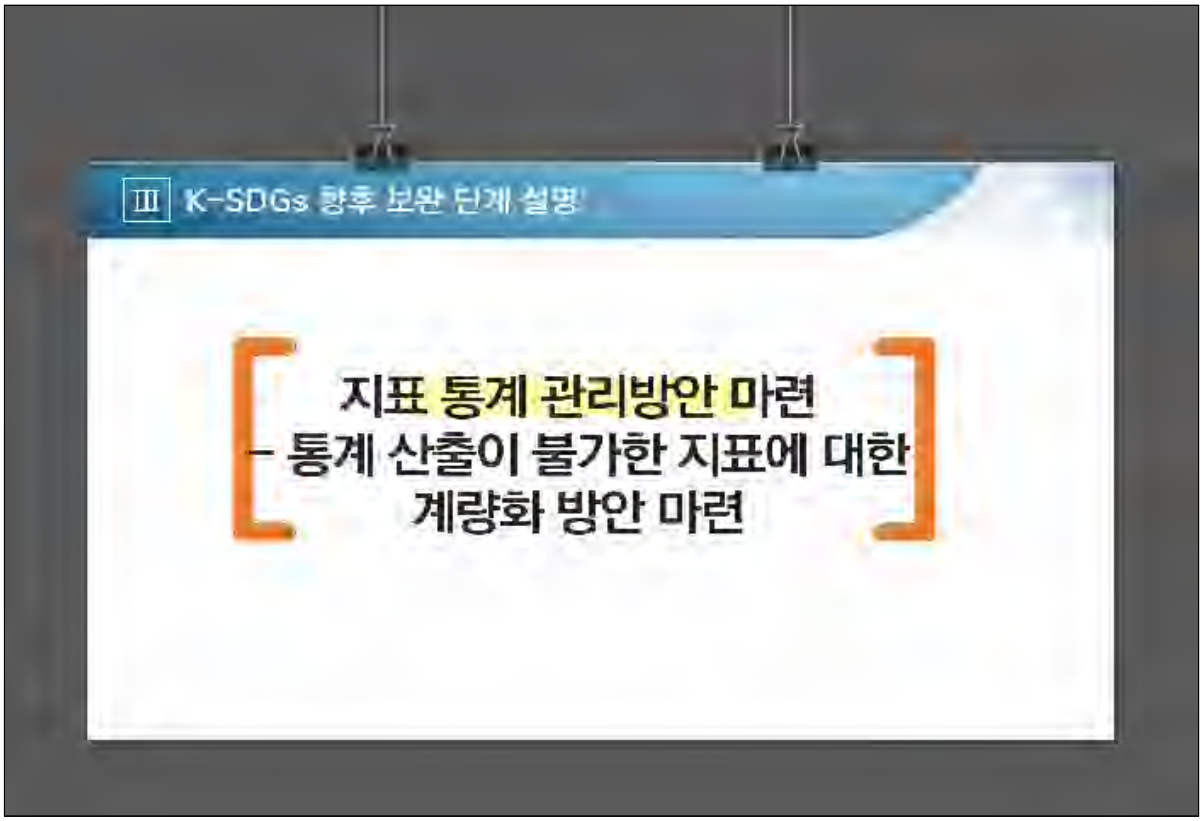
Ⅲ K-SDGs 향후 보완 단계 설명
지표 통계 관리방안 마련
- 통계 산출이 불가한 지표에 대한
계량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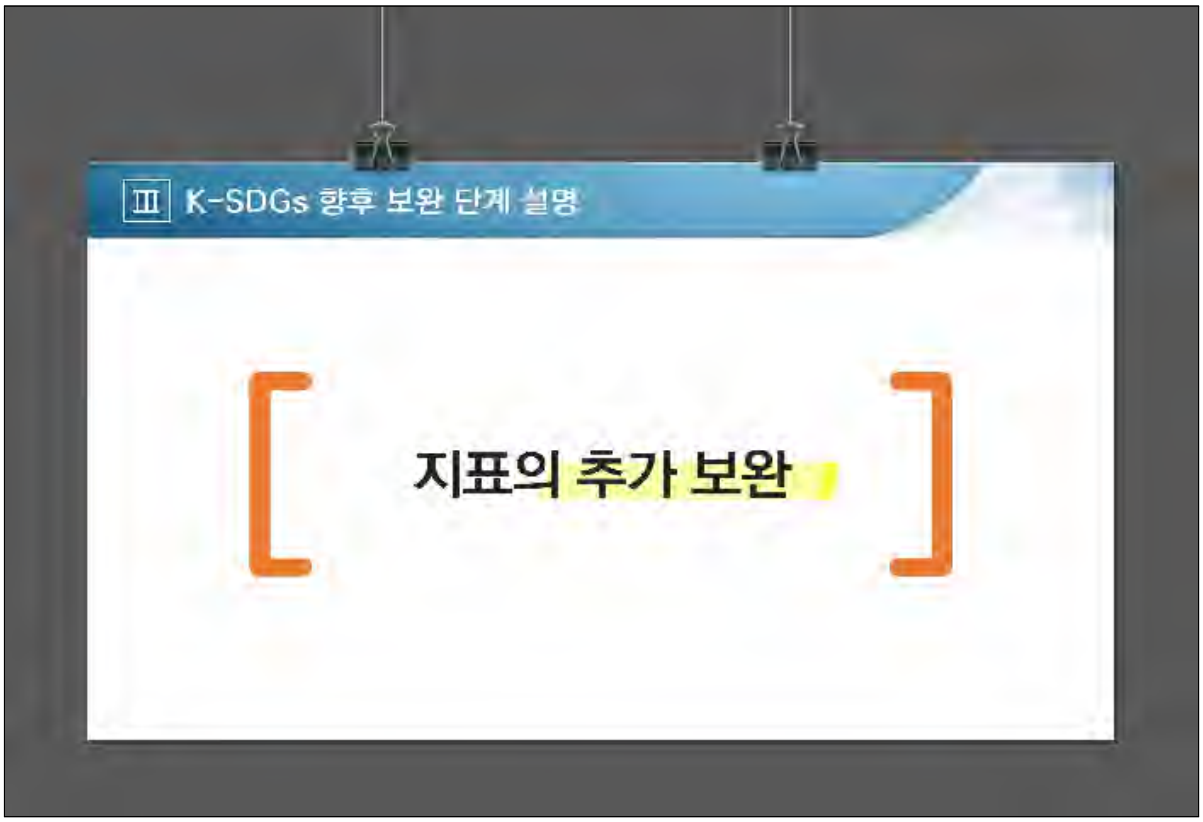
Ⅲ K-SDGs 향후 보완 단계 설명
지표의 추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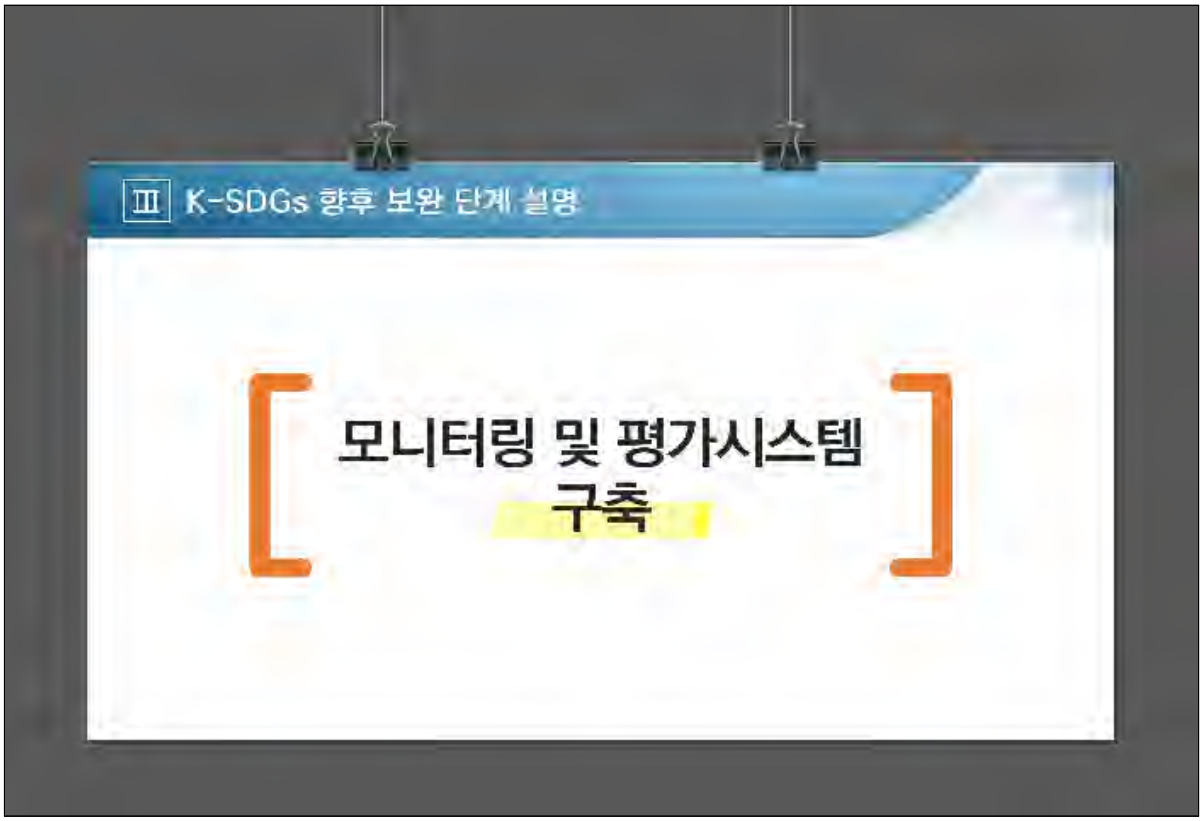
Ⅲ K-SDGs 향후 보완 단계 설명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Ⅳ K-SDGs 향후 추진 계획
K-MCoS
입장보고서 제출 및
K-SDGs
이행계획 보완
('18.1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18.11)
국무회의 보고
('18.12)

마무리 말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후손들은 손 쓸 기회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 세미나 1 -

K-SDGs 이행 계획 설명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K-SDGs 이행 계획 설명| MEMO

|K-SDGs 이행 계획 설명| MEMO

- 첨부자료 1 -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안)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K-SDGs 17개 세부목표 및 지표 □

※ 파란색 : 단독부처의 노력 및 정책수립 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워 목표치 미제시,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목표치 제시 및 정성평가 필요
주황색 : 통계산출 방법 부재, 계량화가 어려운 지표로 산출방법 개발 필요

□ K-SDGs 1번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번 호	세부목표 4	지표 10 (신규 6)	소관부처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o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o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복지부 기재부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o (신규)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o (신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o 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국민연금](성별, 연령별, 근로형태별) o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가입유형별, 성별)	복지부 고용부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o (신규)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지출항목별) o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o (신규) 긴급복지 지원 건수 o (신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복지부 기재부

□ K-SDGs 2번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번 호	세부목표 5	지표 7 (신규 4)	소관부처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o (신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o (신규) 전체 농가 농외소득 지표 o (신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농림부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o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o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및 밭토양 산도(pH)	농림부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o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자원의 점수	농림부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o (신규)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	농림부

□ K-SDGs 3번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번 호	세부목표 9 (신규 3)	지표 19 (신규 10)	소관부처
3-1	**(신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o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인구) o (신규) 당뇨병 조절률 o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o (신규) 장애인 건강권 확보 노력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 - 장애인 비만유병률 - 장애인 우울증 치료율 - 재가장애인 서비스 수혜율	복지부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o 인구10만명당 자살률 o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섭취량 o (신규)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복지부 과기부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o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국토부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o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o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복지부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o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MMR)	복지부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o 신생아사망률 o (신규)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복지부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o (신규) 발암성 물질 배출률 o (신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
3-8	**(신규)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o (신규) 치매안심센터 개소 o (신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개발	복지부
3-9	**(신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o (신규) 인구 1,000당 의사 수 o (신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복지부

□ K-SDGs 4번 (교육증진)

번 호	세부목표 10	지표 27 (신규 6)	소관부처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o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o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교육부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o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o (신규)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o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o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교육부 복지부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o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교육과정 참여율 o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 o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교육부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o 평생학습 참여율 o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성별, 연령별)	교육부 고용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o 모든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o 취학률(성별, 다문화, 장애인) o 학업중단율(성별, 다문화, 장애인)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번 호	세부목표 10	지표 27 (신규 6)	소관부처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o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o 청소년·성인 문해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성별, 연령별)	교육부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o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교육정책 이행 여부 o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여부 o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	교육부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o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o 학교건물 안전 수준 o Wee 클래스 설치 비율	교육부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o 학생 일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교육부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o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o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o 유치원교사 일인당 유아수 o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교육부

□ K-SDGs 5번 (성평등 보장)

번 호	세부목표 7	지표 11 (신규 2)	소관부처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o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강화 및 관리할 수 있는 법률기반 마련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여가부 법무부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o 지난 1년간 가정폭력신고[건] o 지난 1년간 성폭력 신고[건]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o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가부 고용부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o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o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o 장관급 여성비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여가부 행안부 고용부
5-5	모두가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o 성 및 재생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o (신규) ICT 산업 여성종사율 o (신규) 공학계 여학생 비율	여가부 과기부 교육부
5-7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o 성평등 강화 및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 및 재원할당시스템 마련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여가부 법무부

□ K-SDGs 6번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번 호	세부목표 7 (신규 3)	지표 13 (신규 11)	소관부처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o (신규) 전국 상수도 보급률 o (신규) 농어촌 공공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6-2	(신규)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신규) 농어촌 공공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6-3	(신규)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o (신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o (신규) 수질등급달성 o (신규)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확대 o (신규)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환경부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o (신규) 누수율 o (신규) 물공급 안전율 o (신규) 국민 1인당 물사용량	환경부
6-5	(신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o (신규) 목표수질 달성률	환경부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o 생태하천 복원 구간	환경부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o 주민과 물이용자, 민간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수	환경부

□ K-SDGs 7번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번 호	세부목표 4 (신규 1)	지표 6 (신규 4)	소관부처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o (신규) 전체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 (장애여부 구분 등)	산업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o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o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산업부 환경부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o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 (Toe/백만원) o (신규)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지표 (Toe/㎡·년)	산업부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o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	환경부 산업부

□ K-SDGs 8번(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번 호	세부목표 7	지표 11 (신규 2)	소관부처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o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	기재부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o 고용성장지수	고용부 여가부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o 물질 발자국 o 국내 자원소비량	환경부 산업부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o 여성고용률 o 남녀별 임금격차	고용부 여가부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o 청년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o (신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배율	고용부 기재부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o (신규)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부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o 전체 GDP 대비 관광분야 GDP 비율 o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문화부

□ K-SDGs 9번(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번 호	세부목표 5 (신규 1)	지표 7 (신규 3)	소관부처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도로 보급률 o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o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국토부 과기부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o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9-3	(신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o (신규)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o GDP 대비 연구개발비	과기부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o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부 환경부

□ K-SDGs 10번 (불평등 해소)

번 호	세부목표 5	지표 11 (신규 7)	소관부처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o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o **(신규)**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격차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복지부 기재부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o **(신규)** 소득 5분위 배율 o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이주배경 여부) 빈곤율 o (신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o (신규)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o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율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이주배경 여부)) o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복지부 고용부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o GDP 대비 노동소득 o (신규) GDP 대비 가계소득	고용부 기재부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o (신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법무부

□ K-SDGs 11번(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번 호	세부목표 8	지표 23 (신규 12)	소관부처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o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o (신규) 주거급여 대상가구 및 소요되는 재정 비율 o (신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가구 비율 o 슬럼, 비공식주거지, 부적절한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비율 o (신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o (신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 비율	국토부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o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o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o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도로대비 자전거 도로연장, 공공자전거 이용률 등)	국토부 행안부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o (신규)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o **(신규)** 도시계획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	국토부 행안부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o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o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문화재청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o 인구 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o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 o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분	행안부 국토부

번 호	세부목표 8	지표 23 (신규 12)	소관부처
		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o 연평균 도심 미세먼지 o 전체 폐기물 중 적절히 처리되는 도시 고형폐기물 비율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o 1인당 도시공원 면적 o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o 보도면적 비율 o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국토부 행안부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o (신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 K-SDGs 12번(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번 호	세부목표 11 (신규 3)	지표 19 (신규 11)	소관부처
12-1	(신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o (신규)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10년) 및 지자체 이행계획 수립 건수	기재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o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발자국(MF) o 국내 자원 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 o (신규)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환경부 산업부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o 식품 손실 지표(Food Loss Index) o (신규) 식품 폐기물 지표(Food Waste Index)	환경부 농림부 식약처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o (신규) 관리대상(유해성 정보 확보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의 수 o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o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및 순환이용률 o (신규)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및 순환이용률	환경부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o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산업부 중기부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o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o (신규)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번 호	세부목표 11 (신규 3)	지표 19 (신규 11)	소관부처
12-8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o (신규)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o (신규) 대국민 환경교육 만족도 및 환경의식 수준	환경부
12-9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o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o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과기부 환경부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o (신규)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 건수(관광산업 온실가스 지표 등)	문화부 환경부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o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산업부

□ K-SDGs 13번 (기후변화 대응)

번 호	세부목표 4 (신규 1)	지표 6 (신규 6)	소관부처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o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행안부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o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o (신규)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건수 o (신규) 친환경차 등록대수	환경부 산업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o (신규)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미나 개최건수	행안부 환경부 교육부 산업부
13-4	(신규) 전지구 2℃ 이하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o (신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부 환경부

□ K-SDGs 14번(해양생태계 보전)

번 호	세부목표 8	지표 14 (신규 8)	소관부처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o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o (신규)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투기 감소 비율	해수부 환경부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o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o (신규) 갯벌복원면적(㎢)	해수부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o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수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o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어획량 o TAC 대상 어종수 o (신규) 감척어선 수(건)	해수부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o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해수부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o (신규) 어가 소득(백만원) o (신규)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해수부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o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해수부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해수부

□ K-SDGs 15번(육상생태계 보전)

번 호	세부목표 8 (신규 1)	지표 10 (신규 2)	소관부처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o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o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o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산림청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o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o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ist Index) o (신규)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환경부 산림청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o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보장을 위한 수단	환경부 농림부 산업부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o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환경부 외교부 기재부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o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 건수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외교부
15-8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o (신규) 단절, 훼손된 백두대간 등 생태축에 대한 생태연결성 복원 비율	산림청 환경부

□ K-SDGs 16번 (인권·정의·평화)

번 호	세부목표 13 (신규 1)	지표 14 (신규 14)	소관부처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o 폭력 사건 신고건수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조직범죄)	경찰청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o 아동폭력 사례 수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o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법무부 경찰청 권익위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o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 비율	법무부 경찰청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o 국민권익위의 국가청렴지수	권익위 국조실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o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결과	전부처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o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전부처
16-8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o 개도국의 국제기구 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수와 지원 액수	외교부
16-9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o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유무	지속위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o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수와 응답률 o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행안부 지속위
16-11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o 사이버폭력 건수	법무부 행안부
16-12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o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도 o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평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16-13	(신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전부처

□ K-SDGs 17번(지구촌 협력 강화)

번 호	세부목표 7	지표 12	소관부처
17-1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한다.	o GNI 대비 ODA 비율(전체, 최빈국 대상)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2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 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o 해외직접투자 중 최빈국 투자비율	외교부 기재부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o 국가간 과학기술·ICT 협력협정과 프로그램 수 o 친환경 기술이전과 확산을 위한 개도국 지원규모	외교부 기재부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o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배양 사업 지원규모	외교부 환경부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o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o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외교부 환경부 국조실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o 개도국의 SDGs이행 모니터링 지원건수 o 개도국과의 환경·경제 분야 협약건수	외교부 환경부 농진청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o SDGs이행 파트너십 관련 예산 지원액 o 파트너십 참여 기관수 o 공공-시민사회 협의체 정례회의 건수	외교부 환경부 국조실

- 첨부자료 2 -

K-SDGs
이행계획(안)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추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19.1, 의료급여 '22.1)

○ 기초생활보장 **보장수준 강화**

-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18.8)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3→44%) 및 기준 임대료 인상(5.0~9.4%) ('19.1)
- 교육급여 지원액 최저 교육비 수준으로 100% 현실화('19.1)

□ 기초연금 상향 지급

○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완화 기여**

- **'21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급('21)

  * 국정과제(42-2, 43-1)

○ 다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으로 **기초연금 조기인상 추진 필요**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원(~'20)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7.18

○ '22년 이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지급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18.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국정과제 42-5)

○ 최근 장애인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장애인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추진 필요**

* 소득하위 20%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9.1%('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 **'19.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조기인상(25만원→30만원)**

○ '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인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노후소득보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급여 수준 적정화 등 기초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확대 방안 마련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 분담 등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성공 패키지), 실업부조(도입 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 검토
- 근로연령층의 취업지원과 취업유지,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및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급여 수준 적정화하고, 장애인 연금 강화를 통해 장애인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중위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13.8 ('15년)	13.4%	13.0%	12.5%	중위소득 50% 빈곤선을 적용한 집단별 인구빈곤율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성, 연령, 장애여부, 이주민 별 구분 통계 마련 필요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공공부조 혁신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단계적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 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가계직접 본인부담율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성, 연령, 장애여부, 이주민 별 구분 통계 마련 필요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주거급여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 1인 가구 기준, ('17) 71만원 → ('18) 72만원 → ('20) 77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8.10월)하여 **지원대상 확대**

* '17년 총 81만 가구 → '18.10월 이후 54만 가구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상향**)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 수준을 반영하여 수급자가 지원받는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 ('17) 11.2만 → ('18) 12.2만원 → ('19) 12.5만원(예산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강화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맞춤형 개별 지원

-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주거·교육급여 대상 확대

○ 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50%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교육 급여 지원을 확대
  *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전국단위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잠재 위기가구 DB 구축, 보건복지콜센터 홍보 강화 등

○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에 학생정보 노출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을 저소득 수급자격자 및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원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

○ ’17년까지 연평균 11만호, 총52.7만호의 임대주택 지속 공급
  * (’13) 8만호, (’14) 10.2만호, (’15) 12만호, (’16) 11.5만호, (’17) 11만호

- 행복주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건설임대를 공급(준공, 연 7만호), 도심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매입·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연 4만호)

○ 임대주택리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추진
  * 리츠 : ’14~’17년간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6.0만호 추가공급추진(사업승인기준)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임차료를 고려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82만원)이하 가구

□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에너지 보조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 확대

* '15년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 바우처 지원

-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에너지와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

○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으로 국가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빈곤 완화

- 저소득층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 실시

※ 긴급지원 성격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 공적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5.0%	4.8%	4.6%	주거실태조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조사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안전복지

○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 **안전 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 교통안전

○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스마트철도 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 안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 안전위험요소 제거

○ **승강기 · 건설 · 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 지진 안전

○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 · 보강 활성단층조사실시, 지진 대비 교육 · 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마련**

○ 지진 조기 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 화재 안전

○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 · 대응체계마련**

○ 소방특별조사 인력 · 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스마트 기상정보

○ 전문 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개발,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 통합적 재난관리

○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소방

○ 119구급 서비스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소방복합 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 해경

○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 재난 예・경보

○ 대국민 재난 정보전달체계 전면 개선, **'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긴급복지 지원 건수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					

2-1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밭작물 자급률 제고

○ 쌀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콩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수매확대·국산 콩 소비 확대 추진(~'19)

○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용도별 품종개발, 정부보급종 공급확대로 품질을 향상하고, 대량 수요처 확보 및 국산밀 의무자조금 도입 등 추진

○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지속 육성하고 밭 기계화 촉진 등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 맥류 공동경영체 육성(누계) : ('16) 2개소 → ('17) 6 → ('22) 16

□ 우량농지 보전 및 간척지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

○ 농업진흥지역 중심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은행이 보유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량 확대 추진

○ 품목별 수급여건 등에 대응한 간척지별 세부 활용 계획 마련·추진

□ 균형잡힌 영양 섭취 및 식습관 개선 유도

○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 식습관 교육('17: 219개교/ 124천명 → '18: 218/130),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17: 10개대학 → '18: 21) 등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자급률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법에 따라 차기('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자급률 목표치 설정

□ 식량자급률 제고 지속 추진

ㅇ 생산, 소비기반 확충 등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여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구축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95.8%	지속 확대			("우리 식구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식구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소득수준 하위가구 수)/(조사대상 소득수준 하위가구 수)×100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농가 소득원 다각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 **(융복합산업)** 농촌 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경영체 지원을 체계화 하고, 지역 특화 품목 연계을 통한 지역단위 발전체계 구축·확산

- 성장단계별 경영체 지원 체계화*, 향토사업 등을 통해 개별 산업주체 육성

  * (창업) 스타트업스쿨·창업교육 → (도약) 보육매니저·현장코칭 → (성숙) 제품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품목 후보군을 선정, 후보군 내에서 관련 산업주체 간 연계를 지원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구단위 통합지원 추진('20)

○ **(관광) 농촌 현장·주민 주도**의 **농촌관광 정책** 추진

- 현장활동가,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현장 농촌관광협의체가 **지역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청년농·귀촌인 등을 농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 멘토링시스템 도입(연간 200개소) 등 운영주체의 역량 제고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 안정장치 강화

○ 재해에 취약한 농작물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7: 53개 → '22: 67)하고 보장재해 및 병충해 확대 등 보장 강화

○ 무재해 및 방재시설 설치 농가 보험료 할인 확대 등 농가부담 완화

○ 재해보험 미적용 항목(농약대·대파대·시설부자재 등)에 대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22)

□ 농산물 가격안정장치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사전적 수급 안정 도모

-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22년까지 26개)하고, 자율적 생산·유통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의무자조금 단체의 역할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적정 수준의 수급조절 물량 확보

  * '22년까지 배추·무·양파·마늘·고추 생산량의 15%

□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

ㅇ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밭작물 농기계 보급 및 조사료 자급률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2년까지 590개소로 지원 확대('17: 443개소)
- 밭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8.9%), 수확(23.9%) 작업 관련 농기계를 '21년까지 20종 추가 개발
-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17: 21천ha → '22: 30) 등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ㅇ 기존 소득보전 중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변동직불제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22)

ㅇ 환경보전프로그램을 도입('18년 시범연구 후 확대)하여 경관·생태보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에 대해 보상체계 구축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영농 수익성이 낮은 **영세, 고령농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청년농 등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및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진

ㅇ 영세농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로 겸업·근로 소득 향상 지원

ㅇ 영농 수익성이 낮은 고령농 등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맞춤형 농지임대 사업,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로 인력 구조 개선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농가 농외소득(천원)	16,269	17,098	17,617	18,516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외소득 * 최근 5개년 연평균 상승률(1%) 반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1	40	43	4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면적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저투입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업 유도

○ 쌀·녹차 등 전략품목과 가공·체험·수출단지 등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신규 지구 조성·확충 추진('17 ~ '22: 100개소)

○ 친환경농업 연구센터('19: 10개소)를 중심으로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

○ 선도농가·농진청과 연계, 청년 창농인에게 친환경농업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후계인력 양성

□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공공급식·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충 지원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활성화 및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확대('18: 4→'22: 9)로 유통의 규모화·조직화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확충

* (현행) 유기가공식품 → ('19) 유기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추가

□ 친환경농업 환경·생태보전 기능의 확산

○ 친환경인증제도의 안전관리 기준 확충 및 환경 보전 기능의 강화

* 안전성 중심의 친환경농업 개념을 토양·생태계 건강의 유지·증진 기능까지 확대

○ 그린카드 제도 연계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 소비에 인센티브 부여하고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 추진

□ 마을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도입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19)

* 3개 실제 마을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프로그램 구체화(‘18년)

- 농업인 스스로 다양한 생태·환경·경관 보전 활동을 이행하도록 유도

* 초기에는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 활동 중심으로 수행

○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22년, 잠정)과 연계

○ 농업환경지표 개발 등 농업환경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8: 3종→ ’22: 8)

□ 농업환경 조사·평가 및 적정 양분투입으로 토양환경 보전

○ 전국 단위의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지속 추진

- 지속적인 농업환경자원(농경지, 농업용수, 농자재) 실태조사 및 변화상 평가 실시, 정보 구축 및 활용

*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99~현재) : 농경지 비옥도, 중금속, 비료사용실태 등 조사

○ 토양검정을 통한 영농현장 적정 비료사용 및 최적 토양관리 실시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확대를 통한 농가 적정시비 지도

* (재배 전) 토양검정·처방(밑거름), (생육 중) 토양검정·현장진단·처방(웃거름)

□ 농경지 토양개량을 통한 작물의 생산력 유지·향상

○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

-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토양이므로 작물생육에 적합한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으로 지속적인 개량 추진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은 157ppm, 밭토양의 산성도는 pH 6.5로 개량

○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지역별 적정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살포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효과 평가

□ 유기물 공급을 통한 농경지 토양의 비옥도 증진

○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혼용에 따른 적정 비료사용량 설정을 통한 유기자재 추천 확대

* (~‘19) 벼, 배추 등 3작물 → (’20~‘21) 고추, 마늘 등 15작물

○ 양질의 부숙 유기물의 공급을 유도하고, 미숙 유기물의 공급을 통한 영농현장 피해사례를 줄임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질비료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

□ 농경지 양분유출 실태조사 및 저감기술 개발

○ 국내 논, 밭 농업환경을 고려한 양분유출 평가기술 개발
- 양분유출 조사 사이트 설치 및 운영 방법 설계
- 기후, 토양, 지형, 농업활동 등을 고려한 양분유출 모델 개발

○ 국내 농업환경을 고려한 농경지 양분유출 저감기술 적용 및 효과분석

□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농경지 양분유출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 농경지 양분유출에 민감한 기후지표 개발

○ CMIP5 기후변화시나리오 앙상블을 적용한 농경지 양분유출 평가기술 개발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

○ 기존 성과 등을 반영한 5차·6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이행

○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 집단화된 농경지에 친환경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교육·마케팅 등 지원('17~'29년 : 170개소 조성 예정)

○ 친환경 물류센터(경기, 전남) 활성화,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도별 1개소)을 활용하여 대량 수요처에 안정적 물량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유도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산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행지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관리 체계 구축

- 단계별 확산을 통해 환경이 문제되는 지역의 환경 수준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평균 수준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농업환경지표 개발·적용('27: 13종)

□ 토양검정 데이터 기반 토양개량·보전, 비료공급 정책 기술지원

○ 토양개량제 및 양질의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 영농형태별 적정 pH 및 유기물 함량 관리를 통한 비옥도 증진

□ 토양검정을 통한 영농현장 농가의 적정시비 및 토양관리 체계 강화

○ 토양검정과 양분상태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비료사용량 추천

○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기준 처방 확대를 통한 토양환경 보전

□ 농경지 양분유출 실태조사 고도화

○ 9개 도별 대표 농경지 사이트 운영에 따른 양분유출 실태조사

○ 기후, 토양, 지형, 농업활동 등을 고려한 양분유출 추정모델의 지속적 보완

□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농경지 양분유출 취약성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

○ 중·장기 기후정보 및 계절예측을 이용한 농경지 양분유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AR6 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농경지 양분유출 취약성 평가 및 적응기술의 효과 분석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4.9	8	9	10	전체 농지대비 친환경인증농지면적 비율
농경지토양 유기물함량(%)	논	2.3	2.3	2.3	2.4	흙토람 토양검정 DB 지목별 평균함량
	밭	2.4	2.4	2.4	2.5	
밭토양 산도(pH)		6.3	6.3	6.3	6.4	

2-4 종자, 작물, 가축 및 관련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안전보존

○ 국내자원 자원주권화, 국외자원 활용중심 도입, 중복보존 등

- 농업식물유전자원 국가등록 : ('17) 252천 자원 → ('22) 268천 이상

○ 초저온동결보존(영양체, 단명종자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안전보존

- 동결보존 추진 : ('17) 마늘 등 6작물 1,481자원 → ('22) 10작물 2,000

□ 농업유전자원 특성평가·정보구축 및 활용촉진

○ 현장(종자산업, 육종기관 등) 요구 이용형질 평가 : 현안형질 등

- 유용형질 대량 특성평가를 통한 육종모본(우수집단) 발굴

  * 특성평가(건, ∑(자원수×조사형질)) : ('17) 23만 건 → ('22) 70

○ 자원정보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활용도 제고

- 표준화(특성, 조사시기, 방법 등) 및 DB 구축 : 노루오줌, 머루 등 5작물

- 홈페이지 기능개선 : 국외분양시스템, 가독성 향상, 검색속도 등

□ 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 및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품종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강화

○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내실화 및 국가자원화 확대

○ 종자산업, 지자체 농촌진흥기관 협력 유전자원·정보 활용강화

□ 희귀식물의 85% 이상 현지 내·외 보전

○ 희귀식물 85%(486종) 이상에 대하여 현지 내·외 보전

- '17년 현재 : 현지내 444종(77.7%), 현지외 463종(81.3%)

  * 산림청 지정 희귀종은 571종이나 18년 중 목록 재정비 예정

○ 산림식물 종자를 시드볼트에 안정적으로 저장

- ('17) 45,445점 → ('22) 6만점 → ('25) 9만점 → ('30) 12만점

□ 기후변화 취약종에 대한 보전대책 추진

○ 대규모 고사가 진행되는 구상나무 등 7개 고산침엽수 보전대책 추진

- ‘18년까지 전국적 현황, ’19년부터 보전대책 추진

  * 1,000m 이상지역 13만ha 중 침엽수종 분포지역 10만ha 조사

  * 대상 : 구상, 분비, 가문비, 주목, 눈향, 눈잣, 눈측백

- ‘22년까지 현지내 안전지대 6개소, 대체서식지 2개소

○ 2019년부터 기후변화 취약 고산식물 생육상황 단계적 조사

- 왜솜다리, 만병초, 한계령풀, 등대시호, 병풍쌈 등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안전보존

○ 국내 미보유자원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 자원도입국내외 도입 및 국가등록 관리·보존

○ 격리재배 시설을 활용한 수입금지식물 국가자원화 대량 실시

* 자원보존용으로 도입한 수입금지식물 격리재배 검역후 활용 가능(검역본부 고시 제2017-51호)

□ IT, BT 등 신기술도입 특성평가 강화 및 유망자원 발굴

○ 재해저항성·기능성성분 분석 등 IT·BT 기술 융합 특성평가 강화

○ 자원의 핵심집단 선발을 위한 기술융합형 대량 특성평가

□ 국내외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보유자원 관리강화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내자원 자원주권 주장근거 마련 및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 희귀식물 자생지 확대를 통한 멸종위기 등급 완화 추진

○ IUCN 멸종위기 등급 기준에 따르면 중점관리 대상은 385종

- 위급(CR) 144종, 위기(EN) 122종, 취약(VU) 119종

○ 2030년까지 100종 이상에 대해 멸종위기 등급을 완화

- 생육환경 개선, 자생지 복원 및 재도입 등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 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288,537	304,000	313,000	325,000	농업유전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원 점수(누적)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주요 식량의 공공비축 추진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매년 쌀, 콩 등 공공비축 추진

* 매년 쌀 소비량의 17~18%를 시장가격으로 매입 운영하되, 저장기관 경과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회전비축

□ 정부양곡 관리 효율화

○ 정부양곡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구축(~'22)

* ('19) 지능형 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2) 전체 도입

□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할인공급 지속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 정부관리양곡(쌀) 할인 공급 (연간 8만톤 수준)

□ 국제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 국제곡물가 변동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및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내실화 추진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활용, 해외 확보 곡물의 안정적 반입 등 식량위기 대비 대응 체계 마련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쌀 수급 안정

ㅇ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균형으로 쌀 가격 안정을 도모

- 쌀가루 전용 품종·기술 개발 등 쌀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쌀 수요기반 확충

□ 적정 수준의 정부관리양곡 재고 유지

ㅇ 군·관수용, 복지용, 학교급식용 등 공공용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재고 지속 유지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 (만톤)	186	80	80	80	주기적(매월, 연중) 정부관리양곡 재고 조사(지자체)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암·심뇌혈관질환 관리 >

□ 조기검진을 통한 암 예방

○ 폐암검진 시범사업('17~'18)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실시기준 마련으로 폐암 검진 확대 실시('19)

○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암검진 질 관리 위원회" 운영과 국가암검진 질 지침 개발, 질지표 산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질관리 강화

□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 직종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암생존자 지원관련 전문인력* 양성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국립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 12개 지역암센터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확충하여 지역사회 기반 암생존자 통합지지 체계 구축

- 시범사업 실시('17년, 6개소)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확충('20년, 12개소)

○ 암생존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지속

□ 심뇌혈관 환자 지속관리 체계 구축

○ 퇴원 후 환자·보호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체계 마련

- 환자와 보호자 및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급성기 치료 후 재활, 자가 관리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 심뇌혈관질환자 관리 기관(진료·재활의료기관,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 제공
-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상담창구(hot-line) 구축 및 서비스 연계

* (예시) 환자나 보호자가 대표전화,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경우 거주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결하여 상담·회신

□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컨트롤타워 및 기술지원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 설정 및 지정·운영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모형 등 연구('18년)

○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여 중앙-권역-지역(일차)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되는 안전망 구축

- 각 센터별 역할과 기능,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19년) 및 지역(일차)센터 도입('20년~)

○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재활의 표준화, 권역센터와 지역(일차)센터에서 급성심근경생증과 뇌졸중 조기재활 기능 강화

-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조기재활 시행 현황 조사('19년~)
- 급성심근경생증과 노졸중의 조기재활 표준 지침 개발('19년~)
-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에 조기 재활 표준지침 적용·시행('20년~)

< 만성질환 관리 >

□ 일차의료기관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 사업 시행

○ **(주요내용)**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의 **장점***을 **통합·연계**한 **모델 구현** 및 **제도화** 추진**

○ **(추진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업개시('18.하),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19), 본 사업 시행('19.하)

< 흡연율 감소 >

□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 담배규제정책 시행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확대**, 실내 금연 확대,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금연대책 마련(~'19)**
- 담배성분 검사·공개 및 첨가물 규제, 광고·판촉·후원행위 금지 등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주요 조항 이행 추진(~'22)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홍보 시행

- **금연상담·치료지원 연계** 및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TV·뉴미디어를 활용한 금연캠페인 실시

< 비만 유병률 관리 >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ㅇ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강화를 통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함양
- 대상자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18년 시스템 도입)
- 다문화 가구 대상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설 과목 확대(1개→6개)

ㅇ 과체중·비만(영양불균형 보유) 영유아 대상 포함 관리
- 과체중·비만 대상자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신설 운영('19년)
- 비만 대상자 선정 지침내용 추가 및 지자체 시범운영 실시('20년)

□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ㅇ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대상 영양·식생활 및 신체활동 교육 등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교육매체 개발·보급, 수행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운영 기술 지원
- 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를 통한 사업 확대기반 구축

ㅇ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확대

□ 지역아동센터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ㅇ 지역아동센터 기반 비만예방사업 운영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19년 시범운영 실시, '22년 전국 확대기반 마련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 및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및 응급대응 체계의 지역 간 격차 완화

□ 암 조기발견을 통한 암 생존율 상승

ㅇ 암발생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와 암생존자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지속적 확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사업 보완 및 확대

□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규제정책 지속 추진

○ FCTC의 포괄적인 이행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담배 없는 미래세대(Tobacco Free Generation)달성을 위한 준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중기전략(안) : 2025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담배사용률 30% 감소 목표

□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 대상자 확대

○ 과체중·비만 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제공 서비스 도입

○ 보충식품 제공 없이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 서비스 관리만 제공되는 2차 대상자 관리 체계 마련 및 도입

□ 아동비만예방사업 강화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 초등돌봄교실 내 비만예방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및 건강보편성 실현

○ 지역아동센터형 비만예방프로그램 모델 전국 확산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당해연도 주민등록 인구×100,000명
당뇨병 조절률	32.9	35.0	35.5	36.0	당뇨병 조절률(유병자 기준) :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 만30세 이상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남성 흡연율	40.7	35.7	33.2	29	만19세 이상 남자흡연율(%)(국민건강영양조사)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13.3	13.3 (유지)	13.3 (유지)	13.3 (유지)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kg/㎡이상인 만6-18세 이상 대상자 수 [%]/만6-18세 이상 대상자 수 [%]
장애인 건강권 확보노력	정성지표				평가 시 정성평가 예정

* '17년 실적치는 올해 말 산출 예정으로, 현재 실적은 '16년 기준으로 작성

** 목표 산출 세부 범위(대상 질환 범위)에 대한 통계개발원 검토 중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자살률 감소>

□ 근거기반 접근

○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를 실시

- 경찰청 변사사건 중 자살사례에 대하여 「조사실시-분석-보고서작성-지역배포」의 순서로 2년간 진행 예정*

  *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실시**
  (서울 : 자살사망자 2위, 충남·충북·강원 : 자살사망률 1,2,3위)

- 조사 후, **자살예방 사업**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활용**

○ 자살통계 자료 확보를 통해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 구축 추진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기준으로 관련기관의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신속한 자살통계 시스템 확보

□ 자살고위험군 발굴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및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 직종 혹은 기관별 게이트키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국방부(군인), 경찰청 등에서 교육 전담 강사 양성*

  * '18.6월 기준 강사 1,354명 활동중, 게이트키퍼 45만명 양성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 확대**

- ('17년) 40세·66세 1차문답 후 필요시 검진 → ('18년~) 40·50·60·70세 전체

□ 적극적 개입·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없이 지속 관리·지원

○ **민-관 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사회적 대응

-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회통합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등 자살예방 과제 발굴 및 협조체계 구축

□ 사후관리 강화

○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17년 42개소→’18년 52개소)를 통해 자살재시도를 방지

* 서비스 비수혜자 사망률 14.6% vs 수혜자 사망률 5.9%(‘15)

○ **자살유가족 지원** 등 강화

- 자살유가족 등 정보공유에 관한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

< 알코올 소비량 감소>

□ 음주조장환경 개선

○ 공공장소 음주제한 제도화

- 공공성이 높고, 건강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제한 제도화(~‘20)

○ 주류광고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시행

-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매체 주류광고 규제 개선(~‘20)
- 교통시설·수단, 영화관 등 주류광고 규제 확대(~‘20)
- 주류광고에 과음경고문구 도입(~‘20)
- 지역단위 ‘주류광고감시단’ 설치·운영을 통해 주류마케팅, 청소년 판매행위 등 모니터링(~‘21)

□ 음주폐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 미디어 속 음주장면 저감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지속 확산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송계 자정작용 촉구(~‘19)

○ 음주폐해예방 홍보캠페인 확대 실시

- 공익광고(공중파) 시행·확대(~‘21)
- 절주를 위한 대표메시지 및 절주 가이드라인 개발·홍보(~‘20)
- 주류용기 표준잔 표기제 도입 및 시행(~‘20)

○ 음주폐해예방 교육 강화

- 표준화된 교육자료 개발 및 절주 전문인력(강사) 양성 확대(~‘20)
-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 중심의 대국민 절주교육 확대(~‘20)
- 주류 제조·유통·판매자 교육(~‘22)

□ 음주문제 예방

○ 알코올 중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중독관리센터 법적 근거 마련(~'19)
- 중독관리센터 신설·확대(~'21) * '18년 50개소→ '22년 55개소

○ 알코올 중독 회복자 활동 활성화

-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회복자 상담가 지역사회 활동 지원(~'20)

○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사범 치료명령제 시행 강화

- 절주교육 및 상담의무시간제 확대 시행(~'21)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전사회적 생명존중문화 조성

○ 공익광고 및 SNS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전사회적 가치로 확대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예방 분위기 조성

□ 주류판매제도 개선

○ 주류판매 등 현재 법률상에 명시된 법률 정리 및 개정하여 철저하게 집행하고, 면세주류의 범위를 축소하여 낮은 가격의 주류공급을 중단

○ 청소년 대상 인터넷 판매, 통신판매, 가정배달에 대한 규제 개정위한 관리대상 물질 확대

□ 주류가격 조정 추진

○ 주류가격의 단계적 인상 및 주류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주류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음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 예방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31명 ('16년)	0.87명	0.7명	0.48명	10만명당 자살자 수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ℓ) *	8.7	8.2	7.7	7.2	출고량×도수(%)×1000/15세이상 인구수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정성지표				

* (출처) OECD, 2017

* 최근 고도주 소비에서 저도주 소비 패턴으로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소비량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고, 연간 0.1ℓ씩 감소 달성을 목표로 함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60 → 50km/h)하고('18), 주택가, 보호구역 등은 30km/h 이하로 관리

○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 저감 유도 설계기준**을 마련·적용('19.~)하는 등 보행환경 지속 개선

□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위반단속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 지원

○ 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 관리 강화를 위한 **면허 제도 개선**(면허갱신주기 단축,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 운전자의 안전지식을 향상을 위해 **운전자 면허**(학과시험) **합격기준 상향 조정**하고, **교통법규위반자**(음주운전 강력 대응) **처벌 강화**

○ **화물 차령제도** 도입,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 안전운송 운임제** 단계적 도입 및 **근로기준법 개정**(버스 적정시간 근로) 등 추진

□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 확충**

○ 화물·버스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 적극 지원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확대, 빅데이터 활용 도로 **위험도 평가**('19~) 및 시설 개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 추진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우선 교통문화 확산'** 유도하고, **국조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지자체 합동평가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 유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교통안전 문화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의식 확산

○ 지역 및 직장 등 커뮤니티 단위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유도 노력 및 책임성 강화문화 정착

○ 커뮤니티 단위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활성화 및 교통안전성 향상

□ 교통사고 심층조사 및 분석기능 강화

○ 교통사고 심층 원인조사·분석 센터 구축을 통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맞춤형 대책 피드백 강화

○ 사고원인조사와 차량의 구조적 개선을 연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자동차 주행환경 조성 강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망자수)	0.08 (4,196명)	0.06 (3,065명)	0.05 (2,429명)	0.03 (1,370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 전체인구)*1000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결핵 발생률 감소>

□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및 결핵발생률이 높은 노인·외국인 집중 관리

○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속 및 고위험군 검진방안 마련

□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 결핵환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인력 확충

○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

□ 연구개발 및 진단

○ 획기적인 결핵발생률의 감소를 위하여 민간 결핵백신 개발지원 및 공공 결핵백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추진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결핵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강화

<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감소 >

□ 말라리아 환자관리 강화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위험집단 환자관리, 보건소·지역사회 중심의 말라리아 관리사업 실시

○ 말라리아 역학조사 및 감시, 환자완치조사 강화

□ 매개체 감시강화

○ 매개모기 감시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기밀도 평가 및 관리 등을 통한 효과평가 강화

□ 교육·홍보 실시

○ 해외여행객 대상 일반 국민행동수칙, 모기특성·방문지역별 예방법, 예방약 처방에 대한 의료인 정보제공 등 교육·홍보 강화

□ 민·관·군 협력강화

○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환자관리 및 환자감소를 위한 군부대와 협력체계 강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적극적 결핵정책 추진과 사회적지지 강화

○ 결핵의 조기발견, 예방정책 확대, 환자관리 고도화, 범부처 협력체계,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결핵발생률 지속적으로 감축

□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속 추진

○ 말라리아 환자 조기진단·치료,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예방·홍보 실시로 위험지역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말라리아 환자감소 및 퇴치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70	40	30	18	당해 연도 결핵 신환자수/주민등록인구 ×100,000명(출처:WHO)
위험지역 연간 인구 1,000명당 국내 토착화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건수	0.17	0.06	0.04	0.02	국내 토착화 삼일열 말라리아 발병건수 /당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인구×1000명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 검토

○ 미숙아(이른둥이) 체중별 지원 구간 신설 및 한도 조절

* 1Kg미만 지원구간 신설 및 지원한도 조정

○ 선천성이상아 지원기준(의학적 기준) 검토

* 진단일(출생 후28일 이내) 및 수술일(출생 후6개월내 수술)을 검토

□ 신생아 스크린 검사 운영위원회 구성 검토

○ 장애 및 사망률 예방을 위한 신생아 난청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자에 대한 유소견자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신생아를 위한 여러 의학계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신생아 건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자문역할 수행

□ 난청 유소견자 및 확진자 관리방안 마련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중 유소견자와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예방접종과 같이 문자안내서비스 제공, 영유아검진 시 알림 서비스, 검사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 난청 확진자(난청아) 재활치료 관리 및 연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재활 등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 여러 장애 및 질병을 동반하는 미숙아(이른둥이)에 대해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 치료 체계 구축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신생아 사망률	1.6%	1.5	1.5	1.4	신생아 사망자수/당해연도 출생아 수×1,000 * (신생아) 출생 후 28일이내 영유아(모자보건법 제2조 2항)

* '16년 기준 자료(28일미만 신생아기 사망이 전체 영아사망의 57.2%차지)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발암우려물질 등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관리

○ 사업장이 **환경 중으로 배출하는 발암물질*** 등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수립** 및 **지역사회에 공개 시행**('19.11~)

* 국내 발암물질(64종) 배출량 : ('01) 5,917톤 → ('09) 5,865톤 → ('15) 7,795톤

- **배출저감 시범사업**(5개소)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선정 등 세부 관리기준 마련**('19. 상)
- 지자체별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배**출저감 목표 설정 및 배출저감 이행 모니터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발암물질 등으로부터 안심사회 구현

○ 발암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저감대상 확대, 각종 기술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지속저감 가능한 발암물질 관리체계 정착**

-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및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저감 수립 대상을 검토·확대**
- **주요 업종별 저감 잠재량** 및 **기술수요 등** 검토·분석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 **R&D 개발지원 및 확산, 배출저감 전문가 양성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발암성물질*(그룹1,2A,2B)배출률	0.017	0.016	0.015	0.014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배출률(%, 배출량/취급량)

* 발암성물질 : 국제암연구기관(IARC) 발암물질 등급에 따른 그룹 1, 2A, 2B 64종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국민연금재정계산과연계하여 사회적 합의 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25만원**, **'21년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대상 확대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전국 252개 치매 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 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 **아동수당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의뢰회송본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 (의료격차 해소) **'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 '19년에 공중보건 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 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초학력 보장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실내) 기초학력 결손 조기 예방을 위해 교실내 보조인력 추가 투입, 학습부진아 맞춤형 학습보조 도구 개발

  ※ 교실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학력 선도(시범)학교 확대 : ('18) 42개교 → ('19) 62개교 → ('20) 80개교

- (학교내) 학교내 두드림팀을 구성하여 복합적 요인에 의한 학습부진학생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두드림학교 확대*

  * ('18) 2,720개교 → ('19) 3,000개교 → ('20) 4,000개교

- (학교밖)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9)

○ **기초학력 진단·보정 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학습부진학생 체계적 지원**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학습부진 원인·수준에 따른 학습부진학생 효과적 지원 강화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교원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보급('19) / 시스템 활용 선도 교원 교육 및 시스템 개선('19~)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기초학력 보장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속적인 참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세계 교육 동향을 반영한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 분석 및 질 제고**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보다 직접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의 환류를 위해 단위 학교까지의 결과 공유와 홍보 강화

○ **초등 1~3학년 3R's(읽기, 쓰기, 셈하기) 완전 보장**을 통한 학습 결손을 조기 차단하여 공교육만으로 모든 아이가 잠재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국가·시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체제 정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PISA 관련	읽기	86.4	86.5	86.5	86.5	읽기 영역 '2수준' 이상 학생 비율
	수학	84.6	84.7	84.7	84.7	수학 영역 '2수준' 이상 학생 비율
	과학	85.6	85.7	85.7	85.7	과학 영역 '2수준' 이상 학생 비율
TIMSS 관련	초4 수학	99.7	99.8	99.8	99.8	수학 영역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초4 과학	99.7	99.8	99.8	99.8	과학 영역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중2 수학	98.7	98.8	98.8	98.8	수학 영역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중2 과학	97.3	97.4	97.4	97.4	과학 영역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 PISA는 3년 주기, TIMSS는 4년 주기 시행

* ('17) : '16년 12월 발표된 PISA 2015, TIMSS 2015 결과

** ('22) : PISA 2021('22년 12월 발표예정), TIMSS 2019('20년 12월 발표예정) 결과의 목표 추정치

*** ('25) : PISA 2024('25년 12월 발표예정), TIMSS 2023('24년 12월 발표예정) 결과의 목표 추정치

**** ('30) : PISA 2027·TIMSS 2027 결과('28년 12월 발표예정)의 목표 추정치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실현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 유치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 학부모 부담완화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확보)** 소외계층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성이 담보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

□ 교실혁명을 통해 유아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교육패러다임 전환)** 유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지도방법 개선 추진

○ **(유아의 권리보장)** 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

○ **(유아중심 교육문화 선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으로 교육문화 혁신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유아교육 확산 노력 지속

○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하여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유아교육 확산 노력

- 교원역량강화 연수 및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 확산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 이용률	58%	65%	70%	75%	·유치원 취원아수 / 대상 전체 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24%	40%	42%	44%	·국공립유치원 취원아수 / 전체 취원아수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대학생 학비 및 주거부담 완화

◦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국공립 '18, 사립 ~'22)하고, **대입전형료 인하 유도**를 위한 대입전형료 책정 기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중산층 이하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단가**를 **인상**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자 확대***

*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 ('17년 52만명 → '18년 60만명)

◦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18. 1학기, 2.25 → 2.20%)하고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증액**(연 200만원→300만원)

◦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기숙사 설립추진 및 완공된 기숙사의 입주자 추가 모집

※ 연도별 기숙사 확충(천명) : ('18) 26 → ('19) 32 → ('20) 38 → ('21) 44 → ('22) 50

□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온라인 성인학습 생태계 구축

◦ 신산업·주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직업교육** 등 분야별 **우수하고 다양한 K-MOOC 강좌 개발 확대**

※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17) 300강좌 → ('18) 500강좌 이상

◦ 대학, 전문대학으로 한정되었던 강좌 개발 주체를 기업 및 출연연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의 우수 강좌 확보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OECD 수준**(GDP 대비 1.1%)으로 지속 **확대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25~64세)	48%	48%	48%	48%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 / 연령별 인구 수 (출처 : OECD교육지표)

* 우리나라의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38%) 대비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현 수준 유지

※ 비학위과정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표가 없음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 지역별 여건 및 학교 상황을 고려한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추진

- 기존 직업계고의 학급 수 확대,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18년 18.5%)을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확대

□ 평생학습 참여 확대

○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 지원

- 향후 5년간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 제공**

※ 문해교육 누적수혜(명) : ('18) 34만 → ('19) 41만 → ('20) 48만 → ('21) 56만 → ('22) 64만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학습비 부담 경감

※ ('18) 24억 원(5천명 내외) → ('19년 이후) 국고 투자 확대 및 지자체 매칭 등을 통해 지원 인원 및 금액 단계적 확대('22년까지 누적 45,000명 목표)

○ 후학습 활성화 및 지역 단위 평생학습 진흥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유연화된 학사제도 도입**을 유도하여 **학습부담 경감** 및 **후학습 친화적 환경 조성**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대학 : ('18) 21개교 → ('19) 26개교 내외 → ('20년 이후) 40개교 내외

- 지역단위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속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도입

※ 평생학습도시(시·군·구) 신규 지정 : ('18) 160개 → ('22) 175개 내외

□ 직업훈련 지원대상자 확대

○ 사업기간 1년 미만의 영세한 ①자영업자 및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대상에 포함('18년)

* 지원대상: ① (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미만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② (특고) 사업기간 1년 미만 & 월평균 250만원 이하

○ 45세 미만 대기업 노동자 중 **저소득 노동자**를 내일배움카드제 발급대상으로 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추진**

* (현행) 우선지원기업 재직자 + 비정규직노동자 +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재직자 → (추가) 대규모기업 저임금 노동자('19년)

□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촉진**

○ 훈련사업·과정 다양, 참여절차 복잡 등으로 훈련 참여가 곤란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훈련참여 촉진**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사업장 직무분석·훈련계획 수립, 전직예정자·비정규직 노동자 경력개발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훈련사업 홍보, 참여기업 발굴 등 추가 사업 실시

○ 업무공백 부담 등으로 외부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 훈련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현장훈련**(OJT) **도입 지원**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평생학습 내실화**

○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확산**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교육과정 발굴·육성**
- **'(가칭)학점당학위제**(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위 모델 **도입 검토**

* 마이크로디그리 : 기존의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하여 정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

○ **평생교육시설 질 제고**

-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 및 **평가인증 제도**의 단계적 도입 검토

□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정원을 유지하여 중등 직업교육 기회 제공 확대

□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자영업자·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직업훈련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참여 활성화 노력 계속

□ 대중소기업별 훈련격차 완화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훈련기피**를 해소하고, 사업장 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 현장훈련 지속 지원**

○ 중소기업의 훈련정보 부족, 훈련실시에 따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및 홍보 강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평생학습 참여율(%)	35.8	36.8	37.4	38.4	평생학습참여율 = [(형식교육 참여자 + 비형식교육 참여자 - 동시 참여자) / 만25세~만64세 한국의 성인]*100 (출처 :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직업훈련 참여율	16.1%	16.5%	17.0%	18.0%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사업(구직자,재직자) 참여인원 / 경제활동인구수

* '17년 직업훈련 참여자수(447만명) / 경제활동인구(2,775만명) = 16.1%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

○ **특수학교(급)** 수 및 **특수교사** 정원을 **점차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내실화

○ 다문화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내 **한국어학급**을 **활성화**하여,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에게 수업 참여 등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 탈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진학·졸업에 대비하여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취약계층 학습자에 대한 교육 불평등 해소

○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지원 강화**

○ 취약계층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학령기 이주민**이 **공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 해소**

○ **탈북학생**의 **실질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로 **통일 미래인재 양성**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취학률*	여성	-	-	-	-	
	이주민	-	-	-	-	
	장애인	-	-	-	-	
학업 중단율	이주민	1.32	1.00 ~1.50	1.00 ~1.50	1.00 ~1.50	(학업중단 학생 수 / 유형별 학생 수)*100 * 학생 수는 전년도 재학생 기준 ** 측정 대상 학업중단 사유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
	탈북민	2.00	1.50 ~2.50	1.50 ~2.50	1.40 ~2.40	

* 전문가 검토를 거쳐 측정산식 및 목표치 추후 확정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문해교육 기회 확대

○ (문해교육 지원 확대) 향후 5년간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문해교육 기회 제공

※ 문해교육 누적 수혜자 확대 : ('18) 34만명 → ('19) 41만명 → ('20) 48만명 → ('21) 56만명 → ('22) 64만명

- 문해교육 대상자가 밀집된 농산어촌 지역에 프로그램 개설 확대
- 문해교과서 배포·문해교육방송 방영을 통해 개인학습자 문해교육 지원

○ (생활문해 지원 강화) 실생활 중심의 기초능력 개발을 위해 언어문해와 연계하여 생활문해 영역 지원 강화

※ ('18) 정보문해교육 시행 → ('19) 건강문해교육 시행 → ('20) 관광문해교육 시행(예정)

- 타기관과 협력하여 생활문해교과서 보급 및 추가 개발
- 생활문해능력 수준 측정을 위한 모듈 도구 개발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문해교육 범위 및 대상 지속 확대

○ 다양한 유형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지역별·분야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농산어촌 문해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 지속 확대

○ 문해교육의 범위 및 대상 확대

- 생활문해교육 분야 확대를 위해 교과서 개발 및 교·강사 교육 지속 추진
- 타 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탈북 등 신문해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지표]

구분		실적* ('13)	목표** ('23)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성인문해율 (PIAAC 관련)	언어능력	2.2	2.0	언어능력 '수준 1' 이하 비율
	수리력	4.2	4.0	수리력 '수준 1' 이하 비율

※ PIAAC은 10년 주기로 발표함

* ('17) : '13년 발표된 PIAAC 2013 결과

** ('23) : PIAAC 2023 ('23년 발표예정)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이해 확산**

○ **국내·외 교육현장**에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

- (교사역량강화) 초·중등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 교사 연구회 활동 지속 지원으로 **전문가 양성 내실화**

※ ('18년 선발현황) 중앙 선도교사 67명 및 시·도교육청 선도교사 616명
: 시·도별 전달연수 지원(특강 지원 및 각 시·도는 중앙선도교사를 강사로 활용)

- (수업 지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

※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한 **초·중·고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17년 2학기~)

- (체험활동) 아태교육원 내 설치된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활용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형** 국제기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예비교사 지원) **고등교육 기관**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확산을 위한 **강좌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세계시민교육 특강 및 수강생 활동 지원

※ '18년 8개 대학(공주대, 서울교대, 서울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진주교대, 한동대)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운영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교사역량강화) 초·중등 교원 대상 **관리자 및 교사 직무 연수**, **실천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 (18년) 관리자 60명 및 교사 250명 연수, 연구회 컨설팅 워크숍 4회 실시 (4,6,8,10월)

- (수업 지원) 교육과정 연계 **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사 연구회가 개발한 우수 수업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 제고

※ 지속가능발전 선도 프로그램 및 수업 모델 수 : ('18년) 60개 → ('19년) 39개 예정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지속

ㅇ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ㅇ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운영 지원

- 국가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또는 관련 교과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요소 지속 반영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국가교육정책 이행 및 교육과정 내 관련 요소 포함	완료	이행	이행	이행	·중앙부처 차원의 계획 및 예산확보를 통한 정책이행 여부 파악 ·교육과정 개정 시,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 여부 파악
교수역량강화 노력	1,374명 *	4,000명	5,500명	8,000명	·연도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중앙/시·도) 및 교사연수 인원 현황 누적 합산

* '16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연수 운영 : ('16년) 728명, ('17년) 646명

4-8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교직원의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 학교 안전사고와 재난 등으로 학생·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강화

○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건물 내진보강 실시

- 최근 발생한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 위험지역은 '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완성 목표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건물 내진보강 실시

- 최근 발생한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위험지역은 '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완성 목표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내진보강 해소율	-	25%	40%	100%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동수/내진보강 대상 건물동수
초·중등학교 Wee클래스 설치 비율	57.5%	73.7%	90%	100%	(Wee클래스 설치 학교수/공·사립 초·중등학교수)*100

4-9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및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 대학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 **4개 사업****으로 재구조화

*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 **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

◦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

-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 **강점분야** 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

□ 고등교육 재정 확대 노력

◦ **일반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더불어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확대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고등교육 재정 확대 노력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OECD 수준(GDP 대비 1.1%)으로 지속 **확대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1.0	1.01	OECD 평균	OECD 평균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공교육비+민간재원 공교육비)/GDP ※ 정부재원 비중=(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정부재원 중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정부재원 중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GDP (OECD 교육지표)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양질의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교원 수급 확대 노력

◦ 초·중등 교과교사는 '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전문상담 등) 교사는 각 영역별 특수성, 법정정원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단계적인 법정 정원 확보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교원 수급 확대 노력

◦ 초·중등 교과교사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하로 유지하고,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법정 정원을 확보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수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 비율)	66.9%	86.9%	92.9%	100%	(당해연도 공립유치원 교사정원) / (당해연도 공립유치원 학급 수+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수) × 100
초·중등학교 전문상담사 및 상담교사 배치 비율	61.7%	77%	93%	100%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공·사립 초·중등학교수}*100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5.95명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으로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수 감소 추진			공립 특수교육대상학생총수/특수교사 배정정원수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 목표' 수립 및 활용 대상을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하여 정부 정책의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19~)

○ 성평등 목표에 근거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전문가 심층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 도출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대국민 공모, 전문가, 여성 직능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과제 발굴로 체감도 높고 시의성 있는 과제 선정 및 연구 추진('19~)

* 과제 발굴 공모, 지역 활동가 등 전문가 수요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 등(수시)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운영 개선

○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수준 향상 및 성과 측정을 위한「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19) 및 합동평가 실시(~'20)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속 실시

○ 법령·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평등 실현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확대

○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집중 실시로 정책의 성평등한 개선 유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18년 신규, 60%)	65%	70%	75%	(수용 건수/개선의견 수)×100

* 중앙부처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여가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한 비율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분야**의 **기본법 마련**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 수립

○ 여성폭력방지 **예방교육 실시**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여성폭력 처벌강화(법무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일상**을 **위협**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마련**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 또는 지침** 마련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등의 **지원서비스 제공**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및 간호인력 등 확충(~'22)

* ('19년) 276명 증원 예정 : 가정폭력상담소(증103명), 성폭력상담소 현장동행·상담인력(증104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력(증30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증38명)

○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시설 확대('19~)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규 지원(5개소, '19년)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 설치(1개소, '19년)
- 가정폭력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25개소*, '19년)

  * 통합상담소 10개소, 일반 상담소 15개소

□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서비스 내실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 지원금 지원('19~)

* '19년부터 1인당 5백만원씩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지속 확대(~'22)

* 무료법률지원 건수 : ('18년) 2,713건 → ('19년) 4,218건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환경 조성** 및 **의식 확산**

○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지속 확대**하여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복귀 도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구성원 간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강화**

○ 가족구조 변화, 가족특성별 맞춤형 상담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임신·출산·자녀양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전문가 배치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 남성중심의 가족제도 및 문화 개선 추진

5-4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개선을 위한 실천 로드맵 마련

○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수립('17.11)하여 공직, 공공기관, 교직, 군·경찰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추진

- 특히,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22년까지 각각 10%, 20%까지 확대 추진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연도별 목표(2018~2022년)>

(단위: %)

부문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단	6.8	7.2	8.2	9.6	10.0
		본부 과장급(4급 이상)	15.7	17.0	18.4	19.8	21.0
	지방	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13.9	15.9	16.8	18.6	20.0
공공기관		임원	13.4	15	16.7	18.4	20.0
		관리자	22.9	24.1	25.4	26.6	28.0
교원		교수	16.5	17.0	17.5	18.1	19
		교장교감	41	41.2	42.5	43.8	45.0
군인		간부	6.2	6.7	7.3	8.1	8.8
경찰		일반경찰	11.7	12.6	13.4	14.2	15.0
		해양경찰	12.0	12.6	13.2	13.8	14.4

□ 성평등 정책결정을 위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유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여성 참여율 40% 지속 유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실무위를 거쳐 의결 가능

** 여성참여율(%): ('13년) 27.7(1,902명) → ('15년) 34.5(2,633명) → ('18.6월) 40.7(3,393명)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지원

ㅇ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등의 통계 생산과 관리를 통해 사회적 관심 환기

ㅇ 여성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 이행

ㅇ 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3~'27년)」수립

ㅇ「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현행 10개 분야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를 보아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리가 필요한 신규 관리 대상 분야 발굴 등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100%	100%	100%	100%	부문별 해당연도 목표달성도* / 10

* '18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부문(10개)별 목표 : 정부위원회 (40.0%), 고위공무원단(6.8%), 본부 과장급(4급 이상)(15.7%), 자치단체 과장급(13.9%), 공공기관 임원(13.4%), 공공기관 관리자(22.9%), 국립대 교수(16.5%), 교장·교감 비율(41%), 군 장교(6.2%), 일반경찰(11.7%), 해양경찰(12%)

5-7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 성인지예산제도 재구조화 추진으로 대상사업 분류 체계성 확립과 합리성 강화('19~)

- 부처별 성평등 목표 기준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편(직·간접목적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확보와 이해도 제고

* '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개정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및 신규 발굴을 통해 성인지예산 부처 편중현상 해소 등 성인지예산 재원 배분 강화('19~)

○ 성인지예산제도 정책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선

○ 국가 성인지예산 선정기준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 및 특성을 고려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편 등 운영체계 개선 추진(~'20)

* '20년도 지방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개정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결산 지속 실시

○ 정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성평등 제고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18년 신규, 67.3%)	73%	78%	83%	(성과목표 달성수 / 성과목표수) × 100

* 실적 : 성인지결산서 상의 각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집계한 종합실적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 「수도법」 개정('19년)으로 유역단위 용수공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유역단위 기반 통합공급체계 구축으로 시군별 분절된 수자원관리 및 용수공급의 문제점 극복

○ 단위 유역별 제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감안한 유역단위 용수공급계획 수립('19년~)

* 우선순위: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 ③ 대체 취수원 개발 → ④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수질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 '17년 기준 47.4% 도입, '19년 16개소(계속 13, 신규 3) 584억원 지원계획

○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 등 국민이 자신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면지역('16년 기준 72.8%)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 ('19년 계획) 245개소, 3,068억원

○ 가뭄, 폭염 등에 취약한 도서(섬)지역에도 육지처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시설 설치 확대

* ('19년 계획) '18년(19개 도서) 대비 1,261억원 증액한 1,499억원 지원 (110개 도서)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 획정된 유역단위별 단계적 용수공급계획* 수립

* 20년 단위의 계획으로 5년마다 변경 검토

○ 유역별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한 지자체 단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안전하고 깨긋한 수돗물 공급 추진

○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급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전국 상수도 보급률	96.4 (`16)	97.0	지속 확대		(전국 지방·광역 급수인구 / 총인구)*10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72.8 (`16)	77.8	지속 확대		(면지역 지방·광역 급수인구 / 면지역 총인구)*100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지속 추진하여 '25년까지 보급률 80% 달성(면지역)

* '17년 68.2% → '22년 75%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지속 추진

○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하천,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속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농어촌공공하수도보급률	68.2	75.0	80.0	85.0	(군단위이하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수/군지역 전체 인구수)*100

6-3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물 재이용 활성화

○ 「물 재이용법」 개정(안) 마련('18.12) 및 전면 개정('19~)

-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환이용' 중심으로 재이용 제도 추진
- 물 재이용 의무제도를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물 재이용 관련 법정계획간 연계 강화('19~)

- 차기 관련 법정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공급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관련 부서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 연계강화

  * 물재이용계획('21～'30), 수도정비계획변경계획('15～'25), 국가하수도계획('15～'35)

○ 물부족 지역에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한 수요처 적극 발굴

-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자원이 필요한 공장, 산단 등에 하수처리수 공급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 (추진중인 사업) 진행중인 농·공업용수 재이용사업 차질없이 진행

□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 유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18)

○ 4단계 오염총량제 추진('21~)

□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반 연구 및 체계 마련

○ 훼손하천 복원 시 하천의 규모·특징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형 하천 분류유형 및 참조하천* 구축**(~'19년)

  * 인위적인 교란이 없거나 최소인 하천으로 자연상태가 양호하고 물리·화학·생물학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

○ 종적·횡적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20년)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조항 신설('18.1.18 시행)

○ 하폭이 넓은 **대하천 모니터링 기법 연구** 및 적용방안 검토(~'22년)

□ **하천 내 수질오염물질 관리 지속**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외국 폐수 관리항목을 감시물질로 모니터링하되 검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수질오염물질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물 재이용 활성화

○ 물부족 지역에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한 수요처 지속적 적극 발굴

-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자원이 필요한 공장, 산단 등에 하수처리수 공급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 (추진중인 사업) 진행중인 농·공업용수 재이용사업 차질없이 진행

○ 하수처리수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자원으로 사용하고, 상수·하수에 이은 '제3의 물(The Third Water)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하수재이용사업 적극 추진

□ **유역 통합 물관리 추진**

○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유역 통합 물관리

□ **수생태계 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상하천을 선정·조사하고 연속성 확보 조치 마련('23년~)

○ **참조하천과 '수생태계 훼손진단 매뉴얼('17.6월)'을 적용**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쁨'~'매우나쁨' 등급인 하천**에 대해 **복원방안 마련**('23년~)

□ 주요 하천에 다양한 화학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30)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수질 좋음(II) 등급(BOD, T-P) 달성 비율	80.9% 80.0%	85% 85%	85% 85%	85% 85%	(등급 달성 중권역 수 / 115)*100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8.0	8.4	9.0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55종	70종	85종	100종	제도권내에서 관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수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누수율 저감 추진

○ 노후된 상수관망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시설 단계적 정비 추진

- 지방상수도 시설 중 다수가 20년 이상 경과(관망 31%, 정수장 59%)되어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이 시급한 군지역을 '20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1년부터 시지역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

□ 상수도 미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안심지하수 서비스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2,000건/년) 실시

○ 수질기준 초과 관정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개선, 노후관정 개량 및 마을공용관정 설치 등 지원

□ 하수처리수 수자원 이용

○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수자원 활용 측면에서 정책성과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물 재이용 개선방안 도출(`18.7)

※ 물재이용법 개정 추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18.7월)

○ 공업용수 수요량이 많은 산단을 중심으로 재이용수 공급사업 확대 추진

※ 구미 국가산단(9만톤), 파주 LCD산단(4.1만톤) 등 6개 산단, 17.6만톤/일 규모의 공급사업 추진 중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를 통한 누수저감 추진

○ 누수관리 등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누수를 저감할 계획

□ 노후 상수도 관련 인프라 개량 및 지속 추진

ㅇ 노후 지방 상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를 '28년까지 지원하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을 지속적으로 개량할 계획

□ 상수도 미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안심지하수 서비스

ㅇ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및 관정개선 사업 지속 추진

□ 물 재이용 활성화

ㅇ 물부족 지역에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한 수요처 지속적 적극 발굴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누수율(%)	10.6 (`16)	10.0	9.7	9.2	누수량/총급수량×100
물공급안전율(%)	67.6	96.0	97.0	98.0	(가뭄안전율 + 누수안전율 + 취약 취수원 안전관리율 + 하수처리수 수자원이용 달성률) / 4
국민 1인당 물사용량(L)	287 (`16)	284	지속적인 저감		전국 총 급수량 / 총 급수인구

6-5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4대강 수질 개선

○ '21년부터 ´30년까지 적용될 한강 2단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4단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19)

○ 4대강 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20)

- 목표수질('30) 달성을 위해 총량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수립

○ 4대강 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21~30)

- 시·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군별 오염원 관리 계획을 수립

□ 제도정비를 통한 시행 효과 제고

○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다양화('19)

- 현행 저감시설 위주에서 도로청소, 경작지 오염저감 등 관리기법까지 저감방안 확대

○ 오염총량관리 제재·유인 강화('20)

- 시행계획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고, 우수 이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오염총량관리 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선('19)

- 수계별 오염원 조사 체계 개편(국가위임사무→국가·시도 공동사무) 및 오염총량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개발부하량 실시간 관리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오염총량관리 항목 확대

○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TOC 항목 도입

- 주요 지역(산단지역 등) 시범 도입 후 전국 확대 검토

○ 지류 지천 오염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현행 본류 중심의 오염총량관리제도(BOD, T-P 항목 한정)에서 지류 지천의 다양한 오염물질(T-N, SS 등)에 대한 총량관리로 확대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목표수질 달성율	-	10%	50%	100%	(목표수질 달성 지점 수 / 목표수질 설정 지점 수)*100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하천의 생태계 보전·복원

○ 오염 및 생태계 훼손 하천 복원 추진

○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단계적 개방 추진(~'20)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하천의 생태계 복원 지속 추진

○ 오염 및 생태계 훼손 하천의 지속 복원

○ 하구 수생태계 보전·복원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생태하천 복원율	70.8%	지속 확대			(복원 구간 누계/복원 목표 구간)×100 * '21년 이후 목표는 중기계획 수립 후 설정 가능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자문범위 확대를 통한 4대강 수계자문위원회 내실화

ㅇ 현행 4대강 수계관리 자문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하여 자문

ㅇ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19.6~)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 등의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검토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주민과 물이용자,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 건강한 물순환 유지, 위생관리 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각급 행정기구의 비율	1	1	1	1	4대강 수계별 주민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행정위원회 구성 수(4대강 수계관리위원 수)
물과 위생 관리 관련 협의체 구성과 민간 참여 비율	1(100%	1(100%)	1(100%)	1(100%)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민간 참여비율(민간위원수/전체위원수*100%)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온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발전사업의 확대

○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보급사업 확대 및 태양광 설치 시 요금 절감혜택 확대(상계거래 개선) 등 도시형 자가용 설비 확대정책 강화

○ 한국형 FIT 제도 도입('18.6)에 따른 안정적 수익보장과 절차간소화로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참여 유도

-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REC 가중치 추가 등) 제공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설비로 공급(생산)한 전력량 인증서

○ 농업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염해간척지, 농지 등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확대 추진

-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신규 도입

□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확대

○ 수용성과 환경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 중앙정부 승인 및 인허가 의제처리를 통한 계획적 보급

○ 민간·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관리

□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보급여건 개선

○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각종 규제개선 추진 및 관리 ('18.1 규제개선토론회 15개 과제)

- (**입지규제**) 염해피해 간척농지 및 농업진흥구역 농지 대상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 허용, 국유림 수상태양광 설치규제 등
- (**여건개선**) 태양광 설치 도로 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국·공유재산 임대기준(임대료, 임대기간) 개선 등

○ 이외에도 지자체·민간·공공기관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신규 개선과제 추가 발굴 및 관리

□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 회수 다각화

○ 친환경에너지타운* 마스터플랜 수립(~18년), 대상 후보지(729개소)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최종 대상지역 선정·조성(60개소, ~21년)

*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음식물·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바이오 가스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에너지(난방, 전력)를 공급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50MW)을 활용한 Bio-gas 및 전력 생산

- 슬러지 자원화 건조연료로 사용 중인 LNG를 전량 바이오가스 등으로 대체

※ ('12~'16.7) LNG 100% → ('16.9~'18.12) LNG 70% + 음폐수 바이오가스 30% → ('19.5~) 음폐수 바이오가스 30% + 매립가스 70%

- 그 외 잔여 매립가스는 경제성, 기술성 등 검토 후 신규사업 추진

○ 바이오가스화 시설 통합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 개선방안 마련

-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실태 조사·평가 결과('18.3~4) 개별처리시설(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보다 통합처리시설의 효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통합관리 체계로 변경 추진

○ 고형연료제품(SRF)의 품질향상,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품질등급제 도입 등) 및 SRF 제조가능 원료·사용시설* 다양화('19년~)

* (`18년) 제조가능 원료에 '꺼피찌거기' 추가, 사용시설에 공공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추가

□ 매립지 상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국유재산인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종료 된 매립시설**(11,700㎡)을 활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 약 132kW/hr 전력생산, 18가구 사용량(1가구당 전력소비량 7.3kW기준)

○ 향후 동 **소요예산 확보*** 및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매립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너지 효과** 제고

* '19년 시범사업 소요예산 요구액(290백만원) 정부안 내 미반영

** **민간 매립업체 35개소**(1,989천㎡, 약 60만평) 및 **화력발전소 4개 업체**(3,886천㎡, 110만평) 태양광발전에 참여의향('17.12)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폐기물 에너지 기술 확산 및 시장 확대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및 개도국 대상 해외사업 진출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소각·발전시설 운영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및 기술 확산

- 외부사업감축량(KOC)을 국내 할당배출권(KAU)으로 스왑(Swap) 거래하여 할당배출권 확보
- 매립가스 발전 등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보유기술을 국내·외로 확산

○ 고형연료제품(SRF)의 품질향상 및 주민수용성 제고, 생활계 폐비닐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보완

□ **사용종료된 민간 매립시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참여 및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REC)**기준**" **상향** 협의·추진('18년 ~)

- 현행 매립시설(관리형) "**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기준**"이 **상향**(부지 →**시설물**)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

  * REC 가중치 : **부지(0.7 ~ 1.2)** ⇨ **시설물(1.0 ~ 1.5)**

  ※ 폐기물매립시설 중 **차단형**은 "**시설물**(REC)"을 적용 중이나, 매립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형은** "**부지(REC)**"를 적용

□ **3020의 정책비전을 달성하는 국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 국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중심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민간으로 확산

□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 태양광 재활용센터의 건립·운영하여 지역별 폐모듈 발생량을 추정, 최적 수거거점 선정 및 감시체계 운영 등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지표]

구분	실적* ('17p)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7.6	10.5	13.5	20	(재생에너지발전량(GWh)/총 발전량(GWh))*100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5.0	7.4	9.7	13.6	(재생에너지(백만toe)/1차 에너지(백만toe))*100

* '17년 실적은 잠정치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

○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가에 기반하여 전기소비자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

○ 수요관리형·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원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Ⅰ. 자발적인 절전 유도형, Ⅱ. 수요관리투자 유도형)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 확대하고, 전기소비자별 상이한 전력사용 패턴 등을 고려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적용

○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 최소화

□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 집단에너지(지역 냉·난방) 보급 확대

- 폐열·여열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난방 보급 확대

* ('14) 244만 가구에 공급 → ('20) 345만 가구에 공급

- 수도권 서부지역 미활용열에너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

* ('15) 경제적 타당성 검증 → ('16) 배관망 건설공사 → ('16) 열공급

○ 고효율인증, 효율등급 등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국가에너지 절감

* 대상기기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등 27개(등급), led램프, 펌프 등 45개(고효율)

□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재, 외피, 시스템 통합운용의 상용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촉진

○ 에너지다소비 산업군의 공통 산업기기 효율향상과 효율운영 분석 기반 에너지절감 솔루션 등 EMS 모듈화 기술개발

○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 ICT 기반 ESS, EMS, TEN(열에너지네트워크)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인프라의 확충을 저감

○ 국가 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개발
  * UPS, 전압보상, 신재생 에너지저장, 계통 안정화 등

□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BEMS* 원격광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제공

-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사용 패턴정보를 축적하고 다양한 조건(계절별, 시간별 등)에 따른 통계분석을 통해 건물특성에 따른 에너지수요 솔루션 제공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차량별 특성·인프라 구축현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최소 '22년까지는 구매보조금을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 핵심 부품 발전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 조정하되, 비재정수단 병행** 추진

* (전기차) '22년까지 보조금 유지, 연차별 보조금 단가 인하
(수소차)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보조금 유지하되 단계별 단가 인하

** 친환경차 협력금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 수소버스 양산체계 구축('20년 이후 예상) 이전 先 시범사업*, 後 본격 보급사업 추진

* 충전인프라 현황, 수소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5개 도시 선정('19, 총 20대)

○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충전 요금 할인 및 수소충전 가격 기준 관리

□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기) 충전기 이용패턴, 기술발전, 친환경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집중 충전소, 친환경 충전소 등) 구축

- 충전기 공동 사용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경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수소차 충전소)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 설치(휴게소 160, 도심 거점 150)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전담 민간 SPC 설립

- 수소를 대량 일괄 구매 및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 수소가격 안정화 추진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역할 강화

○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비재정수단 도입 추진(친환경차 협력금제 등)

- 민·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제적 흐름, 제도 효과 등을 고려한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수립(‘18.12)
- 전기·수소차 **충전소 구축**에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친환경차 보급 지속 확대**

○ 재정수단* 및 비재정수단 병행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가속화

* 최소 ’22년가지 구매보조금을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핵심부품 발전 속도, 보급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중단시점 지속 검토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도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에 ’22년 수송부분 미세먼지 배출량 32% 삭감 예정

□ **원활한 친환경차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전국 운행 지원을 위한 **공공급속충전시설**과 공동주택·사업장 내 **공용 완속충전기**를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추어 지속 구축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친환경차 보급대수 (누적)	97,632	2,000,000	4,400,000	8,800,000	차량 1대를 기본 1대로 산정하되, 연평균 주행거리 및 미세먼지 발생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택시 1대 당 일반 승용차 10대, 버스·화물차의 경우 1대당 일반 승용차 20대로 계산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17년에실태조사를실시하고 **'18년공유경제종합계획수립**, 신유형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법・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정부대안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발전 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 (생태계 구축)

○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유휴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분야**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 (전통시장)
○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 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 (소상공인)
○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 **'18년부터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30% 지원**

○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특화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160만명으로확대('17년105만명

□ (골목상권)

○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정부정책의 일자리 친화적 조정

○ 고용영향평가 확대·강화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시 중요지표로 활용 ('19년~)

  * '17년 249개 (부처 자체선정) '18년 714개 (전체 일자리사업, 100억이상 SOC·공공조달, 일자리사업 유형 R&D)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를** 신설하여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법령은 심층분석 후 개선권고 실시** ('20년~)

  * ①소관부처의 개정안 고용영향평가, 고용부에 제출 → ②고용부 검토 후 중요법령 선정 → ③중요법령 상세검토 → ④필요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연도별 추진 계획 >

'19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750여개
'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800여개, 법령 평가 신설
'21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850여개, 법령 평가 운영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 **범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적 품질관리체계** 구축('19년~)

-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추진 ('19년~)

  * ① 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② 유사・중복・저성과 일자리사업 통・폐합,
    ③ 일자리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예)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 연도별 추진 계획 >

'19년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20년	'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21년~	'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 **20년까지 총 205천명* 수준 전환**

* 잠정전환규모 175천명 + 추가 전환 여지 30천명

구분	대상기관	추진 일정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및 실태조사 →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10월)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2단계 실태조사('17.12~'18.2월), '18.5.31 가이드라인 발표
3단계	민간위탁기관	'18년 하반기 실태조사 후 정책방향 결정

○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등 불합리한 차별 개선, 단계적인 처우개선 병행

< 연도별 추진 계획 >

'19년	168천명('17.7월~19년 누적) 정규직 전환
'20년~	175천명('17.7월~'20년 누적) 정규직 전환

* 잠정전환규모 175천명 기준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 (노사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간담회 등 확대

○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고용유지, 생활안정, 재취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19년~)

*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영암군, 목포시 ('18.5.4~'19.5.3)

< 연도별 추진 계획 >

'19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8개지역 지원
'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8개지역 지원
'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8개지역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 지원

○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을 중점 대상으로, 상담-훈련-취업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 확대

○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정보제공, 전문창업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운영

□ 여성인재 양성사업과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와 청년여성(창업희망자)을 멘토-멘티로 매칭하는 프로젝트 멘토링 추진

○ 여성인재아카데미에서 '지역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와 연계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의 국정 운영 인프라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정상화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

○ 중앙 단위의 평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지역 단위 고용 정책 추진으로 현장의 변화 유도

□ 여성 창업 저변 확대

○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저변 확대 방안 지속 모색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양질의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강화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고용률	66.5	추후 수립 예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발표 기준 (15~64세 고용률)

8-3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가 자원효율지표·관리 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 원료의 투입, 생산공정, 폐기 이후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가/산업 등 자원효율 분석 지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원 전 과정의 흐름을 연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순환성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원효율 관리 지표 및 보조지표 등 개발**(~'20)

□ **국가 및 업종별 자원생산성 관리 및 향상 지원**

○ 국가 및 주요 업종별 자원생산성 관리 향상 지원

- 국가 및 주요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관리 목표** 수립(~'22)

○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향상 지원 체계** 도입

- 실질적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법(REMS) 보급 및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업 육성(REMCO) (~'22)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산업계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목표관리 지원제도 도입**

○ 관련 통계 및 사업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산업발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실질적 관리를 위한 추진제도 마련

□ **자원 흐름전과정 관리 및 상위적 개념의 관리로의 범위 확대**

○ 생산단계만의 관리에서 전과정 연계 관리로의 확대

- 생산단계의 자원생산성(산업부)과 순환단계의 자원순환성(환경부)을 연계하는 관리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23~)

○ 자원이용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극대화한다는 상위적·포괄적 차원의 접근 및 관리로 확대(`25~)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극복해야할 온실가스, 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자원관리 방안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발자국(MF)	측정방법 등 연구 및 개발 필요				아직 없음
국내 자원 소비량(DMC)	663 백만톤	-	-	684 백만톤	국내 자원소비량(DMC)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여성 고용률 증가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

○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 고용률 증가

-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상한: 200→250만원) 등을 통해 자율 사용 유인,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5→10일)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사용시기 유연화 등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 AA 부진사업장에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의무 부과

- 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여 자율적 임금차별 요인 해소 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매뉴얼*을 제작·보급('18년, 여성정책연구원 수행)하고, 근로감독관 교육을 통해 동 기준의 정착 도모

  *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의 개념, 법 규정, 판단기준, 국내외 판례 및 사례 등

□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 성평등 기업문화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기업 내 성평등 문화 정착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보급

○ `18년 6월 배포된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보급을 활성화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 취업준비생 등 관련 대상에 정보 제공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여성 고용률 증가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 집중을 통해 여성고용률 증가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 결혼·출산·양육이 개인(특히 여성)의 희생·부담이 되지 않도록 2040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양성평등한 노동·양육 환경 마련 주력

□ 성평등 기업문화 지속·확산

○ 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 기업문화 정착 지원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여성고용률	56.9%	60.0%	60.0%	63.9%	○여성고용률(15-64세, %) * '30년 목표 : '17년 OECD 국가 평균 63.9%
성별임금격차 (남성대비 여성 시간당 급여)	65.9%	70.0%	80.0%	85.5%	○여성시간당 급여액/남성시간당 급여액×100 * '30년 목표 : '15년 OECD 국가 평균 85.5%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5%) 추진, 민간부문의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의무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원·인건비 등 적정하게 조정 검토

□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정규직 추가고용 지원

- 청년 정규직 추가채용시 임금의 일정부분을 연 2천만원 한도로 지원(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중견, 중소기업이 필요시 지원대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 미취업 청년층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구직촉진지원금을 지급 (50만원×6개월)하여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19년)

*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등 지원요건 별도 설정)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면접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 직무능력중심 채용

*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키·체중 등 신체 조건, 학력 등

- 민간 부문에 대해 '기업채용관행 실태조사' 실시하고, 가이드북 마련·컨설팅·인사담당자 교육·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 확산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청년 맞춤형으로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통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유도

* (문제점) '갈만한 일자리 부족, 구직과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

↳ 청년실업률(%): ('12) 7.5 → ('13) 8.0 → ('14) 9.0 → ('15) 9.2 → ('16) 9.8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청년 추가고용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배율	-	2.3 ('21년)	2.3	2.3	증가배율=(당해연도 피보험자수-전년도 피보험자수)/(전년도 피보험자수)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증진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체불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방안 마련 등 처벌 강화

○ 재직자 체당금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 체당금 제도 개편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추진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 추진**

○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감독** 시 법령상 의무, 기술적 사항과 함께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50,000개소)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소요비용 지원**

○ 황사·미세먼지·폭염, 지각방사선(라돈)등에 노출되는 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비정규직 로드맵 등 그간 확립된 정책의 실효성 지속 제고

□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 안전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 도모**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사고사망만인율	0.52	0.27	0.24	0.22	(업무상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산재보험 사망 승인 기준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 산업재해발생비율은 **이주신분별 산출이 불가능**하며, **국민안전이 정부핵심 국정목표로 선정**(VIP 신년사, 1.10)되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 **동 지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변경 필요**

8-7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이행계획 1)

○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관광기본법 제3조)

-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조성, 재원 확보 및 배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립

○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분석 및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사항 정립

○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수행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이행계획 2)

○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10년 주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관광진흥법 제49조)

○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동향 및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과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정립

○ 관광권역의 설정 및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 **개발** (부처별 이행계획 3)

○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작성방법을 권고하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GDP 대비 관광산업의 규모산출을 위해 작성 중인 관광위성계정(TSA) 개발 추진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GDP 비율 지표 산정 및 기초자료 확보 추진

○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수의 비율 산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 적용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ㅇ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열린관광지 확대 등 관광여가 사회 실현
-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육성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GDP 비율(%) ※ TSA 지표 개발 필요	-	3	3.5	5	전체 GDP에서 여행객(방문객)들을 위한 상품(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통한 관광분야의 직접GDP(Tourism direct GDP)가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jobs)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수의 비율(%) ※ TSA지표 개발 필요	-	65	67	69	(산식) 전체 관광산업의 일자리수를 파악하고, 이중 지속가능한 관관산업의 일자리수와 일시적인 일자리수의 비율차이 (출처) TSA의 표-7에 해당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사람을 위한 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

○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 고속도로 5,075km 개통('20년), 간선도로 혼잡구간 41% 감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 위험도로 및 사고잦은 곳 개선 및 하이패스IC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 (위험도로) '17년 65개소, 향후 5년간('18~'22) 위험도로 200개소 개선

(사고잦은 곳) '22년까지 매년 60여 개소 발굴하여 꾸준히 개선

□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추진**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하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 향상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도로서비스 개선, 친환경 도로 조성

○ 자율주행, AI, 고령화, 메가시티, 초국경, 통일, 에너지 문제 등 미래 메가트랜드를 토대로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미래도로 구축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도로 보급률	2.13	2.28	2.36	2.50	인구당 연장 = (도로연장 km/인구 천명)*100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민간금융 소외영역 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 창업기업, 기술개발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및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점 지원

□ 금융소외기업 보증지원 지속추진

○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확대 중

○ 매출실적이 없어도 기술성과 사업성에 기반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중소기업의 조달비용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방식 지원 확대

○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의 조달비용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견인을 위한 투자결합 방식의 직접금융 지원 확대

□ 다양한 자금지원 형태를 마련하여 지원

○ 간접금융(보증) 외 보증연계투자를 통한 직접금융 지원 확대 예정

9-3 기술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중소기업 R&D 혁신을 위한 성과창출 중심의 지원강화

○ 중소기업 R&D 사업을 '성장촉진 R&D'와 '기업혁신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운영

- **(성장촉진)** 중소기업의 R&D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생태계 활성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 R&D 촉진

○ 성과창출이 유망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기업에 중점 투자

- **(신성장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제품의 서비스화 분야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
- **(글로벌시장 수출확대)**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시장 진출촉진을 위해 수출역량별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

○ 과제공모 방식,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사업화 성과창출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

- **(과제유형)**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발굴한 신성장 분야 등에 대한 품목지정 과제 확대
-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및 평가지표에 개발제품에 대한 수출 가능성 반영 및 비중 강화
- **(평가위원)** 비전문가의 평가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통하는 과제선별을 위해 산업계 위원 비율 상향

□ 미래 유망 신기술 추가 발굴·확산

○ 국내 연구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기술이나 해외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 등 新유망 기술 발굴

- 발굴 과제는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

○ 석유 의존도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등의 재활용 기술 개발

- C1 가스를 활용하여 화학제품(플라스틱, 섬유, 염료 등) 원료 및 수송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촉매(바이오, 화학) 및 공정기술 개발

* C1가스 : 셰일가스, 천연가스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C) 수가 1개인 메탄(CH4) 및 일산화탄소(CO) 가스를 의미 (CO_2 제외)

□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R&D 추진

○ 기술 분야별로 관련 시장을 '성숙 시장', '초기 시장', '미래 시장'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전략 차별화

* 성숙 시장은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을 측면 지원, 초기 시장은 파일럿, 테스트베드 등 실증, 미래 시장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중심

○ 「범정부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14.7)」을 실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계 부담 경감 기술 집중 개발·지원

< '15년 기준 6대 핵심기술 분야 정부 R&D 투자 >

분야	핵심기술(총 4,313억원)
화석연료 대체	태양전지(389억원), 연료전지(348억원), 바이오연료(413억원)
에너지 저소비/효율화	이차전지(566억원), 전력IT(312억원)
이산화탄소 처리	CCS(402억원)

*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 대비 37% 감축)와 관련하여 6대 핵심기술 분야는 약 30백만톤(BAU 대비 3.5%) 감축에 직·간접적으로 연계

□ 에너지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 (에너지 IoT+빅데이터 플랫폼) 센싱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집약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 운영전략 및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가정, 건물, 공장 등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화된 에너지관리서비스산업 창출 기반 마련

○ (고효율 에너지 변환·저장) 기존 기술의 한계와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친환경적,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

- 연료전지 시장과 연계한 시장창출, 고에너지밀도 전지 활용처 개척

○ (미래형 에너지발전)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발전의 한계 극복을 위한 mW~MW급 소형 발전시장

- MW급 열전발전, 웨어러블 압전시스템, 초임계 CO_2발전 등 시장 확대

○ (무선전력 송수신) 배터리 크기 최소화 및 전선제거를 통한 전기차 및 가전기기 편의성 증대

- 무선전력전송 표준 및 인프라 조기 구축, 사막 등 오지 신시장 진입

□ 융·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추진

○ 정보통신기술·바이오기술 등 異種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악취, 녹조, 초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해결

- 센서기반의 환경피해예방 첨단 환경감시기술, 환경피해 오염 저감소재 개발, 로봇을 활용한 환경재난 대응기술 등

○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력 증진과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ICT 기반 생태계 및 환경·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기술, 화학사고 등 환경재난 대응기술 개발 등

○ 다부처 R&D 및 Bridg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강화

* 미래부 등 타 부처에서 개발한 우수 기초·원천 연구성과중 환경분야에 실용화할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후속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과 연구성과 제고

□ 농업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

○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 개발

- ICT융합 스마트원예시설 산업화 모델 개발, 스마트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기술 개발

○ 작물생육 정밀관리 기술개발
- ICT 기반 작목별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등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 시설농업 ICT 융복합 운영활성화 모델 개발, 스마트팜 측정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중소기업 R&D지원의 전략성 확보를 통해 지원규모 확대

○ 중소기업 R&D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차별화된 중소기업 전용 R&D지원의 전략성 확보

○ 벤처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도전적 R&D 지원예산 지속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선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51.6	52.1	52.4	52.9	1) 측정산식 - ∑(과제매출액, 수입대체액, 기술이전액, 생산비절감액이 발생한 과제)/응답 과제수 2) 측정대상 - R&D과제를 성공판정 받은 최근 5개년 종료과제 * '17년 성과조사대상 : '12년~'16년 종료과제 3) 측정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내 온라인 성과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 후 현장조사를 통해 성과검증 4)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사업화성공률의 변동폭을 감안하여 5년 후의 증가율은 1% 상향 * '17년 → '22년(5년 후) : 1% 상향한 52.1 * '22년 → '25년(3년 후) : 0.5% 상향한 52.4 * '25년 → '30년(5년 후) : 1% 상향한 52.9 - 또한 경제변동 및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1% 상향 *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의 연평균은 '15년 -5.8%, '16년 1.0%, '17년 -0.9%로 3개년 평균은 -1.9%의 수치를 나타냄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 강화

○ R&D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 **연구관리법령·전문기관 통합**, **과제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

○ **미래시장 선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적 현안분야를 중심으로 **High Risk-High Return형 연구 프로그램 확대(한국형 DARPA)**

○ 적시적소 R&D투자를 위해 **R&D 예타제도 및 투자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적 현안분야**에 신속·전략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 도입

□ 산, 학, 연, 지역 등 혁신주체 역량 제고

○ **세계적 선도연구자 육성**(6,000명)을 위한 **그랜트 연구비**를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확립하며, **'중장기 이공계 인재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 **'PBS 근본개편** → 우수인력 확보 → 우수성과 창출 → 연구역량 평가'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단계별 **공공(연) R&D혁신방안*** 마련

* (1단계)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 (2단계) 공공연구기관 전체로 확대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R&D의 **비효율 제거** 등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R&D** 강화

□ 혁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동력**(13개) **맞춤형 육성** 및 병원·MD 등 활용한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대응** 강화

○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확대(1조원 이상)하고 **안전,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형 프로젝트** 추진

○ **R&D로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 **근로계약** 체결 확산 등 **청년연구자의 권익 강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R&D 뿐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산업 등 **혁신전반을 고려**한 참여정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발전적 모델***(NIS 2.0) 제시

* 기존 NIS에 4차 산업혁명, 삶의 질 요구 증대, 국민참여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반영

○ **1단계**로 「**국가R&D 혁신방안**」을 수립(혁신본부 총괄)하고, 추후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국방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마련**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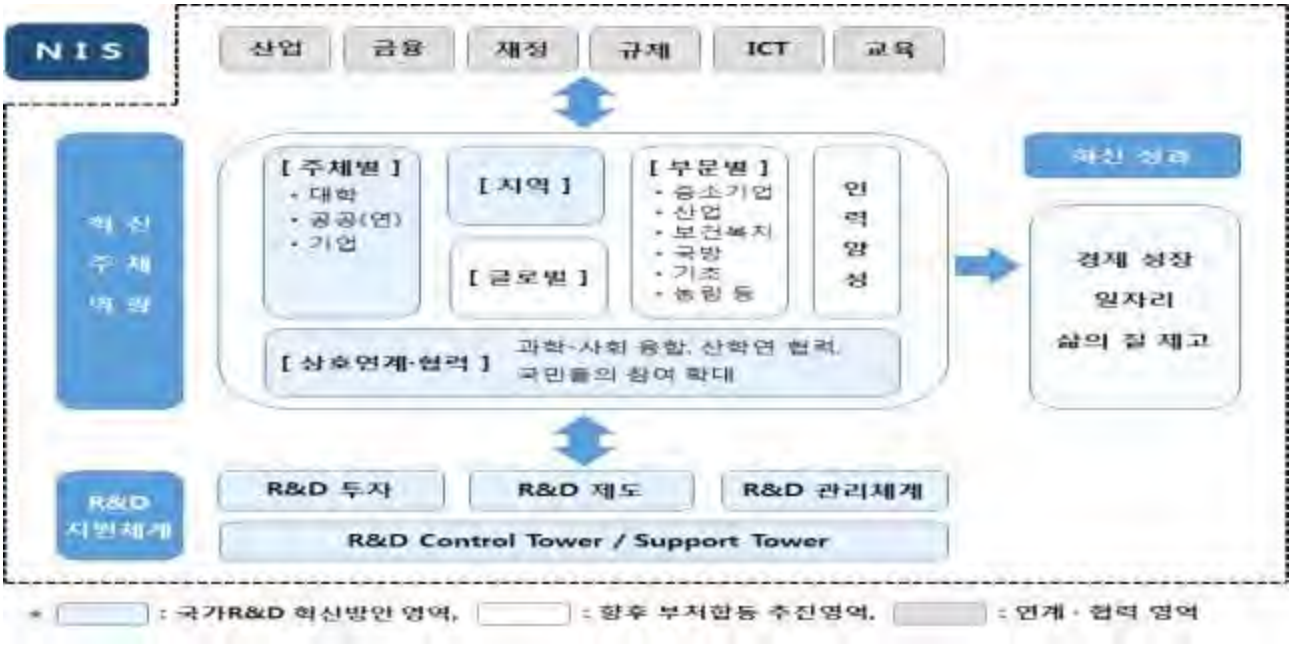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GDP 대비 연구개발비	4.24	4.26	4.27	4.29	(국가(정부·공공+민간) 총 연구개발비 / GDP)*100

* '17년도 실적치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실적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에 집계된 실적치 작성

** '25 및 '30의 목표치는 예상되는 전망치를 작성

9-5 환경친화적인 산업활동과 기술혁식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 산업 육성

- 기후변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촉진, 실증·시범사업 참여, 테스트 베드 구축·공동 활용 등으로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산업 육성

충북센터(LG)	충남센터(한화)	광주센터(현대차)	제주센터(다음)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 미래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기획, 공공부문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연계 등을 위해 분야별 '수요기업협의체*' 구성·운영

* 미래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 200여개 대·중소기업 및 에기연·에기평 등 기술간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참여

□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기존 개발기술을 연계·활용하되, 핵심 취약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개발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SW 연계개발 추진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진출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국제협력 추진

○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창의·융합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원천소재 개발 및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구축

○ 개발한 기술·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 및 인증 지원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후적응기술 보유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가(기후변화·경영·기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행

-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 협의체 운영 및 적응산업 인벤토리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민간 기후적응 컨설팅 시장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향, 구성항목, 교육, 인증, 인센티브 등 기후변화 컨설팅업 제도화
- 유형별 및 권역별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신규 관광자원 발굴

○ 기상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날씨경영 인증제도 운영,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활성화,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 R&D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과제 집중 투자, 기상청 보유 기상 시술 민간이전 활용도 제고 등
- 글로벌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 국내 환경기업 육성지원

- 환경산업체 경영지원, 해외시장 진출, 생산설비투자 등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유망 환경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초기 및 사업 성장단계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수립, 자금지원
-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0~15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전문인력 채용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아시아, 중남미 등 수출 유망국*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수주지원을 위해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아시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은 연평균 7%내외 급성장

- 전문 환경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중소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역량진단부터 최종계약 성사까지 수출 전 과정 지원(Green Export 100*)

  * '18년까지 100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 환경산업 분야 해외 유명 바이어 초청행사 개최(GGHK*)로 국내 환경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

* Green-Global-Hub-Korea(그린글로벌허브코리아)

- 해외 유망 환경 인프라 민관협력(PPP*) 투자개발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Private-Public-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감축·적응 등)을 개발하여 국내 환경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및 지구환경금융(GEF) 등 여타 국제환경기금 사업개발에 기여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추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19.1, 의료급여 '22.1)

○ 기초생활보장 **보장수준 강화**

-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18.8)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3→44%) 및 기준 임대료 인상(5.0~9.4%) ('19.1)
- 교육급여 지원액 최저 교육비 수준으로 100% 현실화('19.1)

□ 기초연금 상향 지급

○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완화 기여**

- **'21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급('21)

* 국정과제(42-2, 43-1)

○ 다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으로 **기초연금 조기인상 추진 필요**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원(~'20)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7.18

○ '22년 이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지급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18.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국정과제 42-5)

○ 최근 장애인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장애인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추진 필요**

* 소득하위 20%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9.1%('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 **'19.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조기인상(25만원→30만원)**

○ '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인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노후소득보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급여 수준 적정화 등 기초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확대 방안 마련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 분담 등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성공 패키지), 실업부조(도입 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 검토
- 근로연령층의 취업지원과 취업유지,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및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급여 수준 적정화하고, 장애인 연금 강화를 통해 장애인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	-	-	1인당 가구소득 증가율
소득격차비율	36.8% ('15년)	35%	33%	31%	빈곤선 대비 빈곤격차(빈곤선-가구소득)의 비율에 대한 평균값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혹은 여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추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19.1, 의료급여 '22.1)

○ 기초생활보장 **보장수준 강화**

-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18.8)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3→44%) 및 기준 임대료 인상(5.0~9.4%) ('19.1)
- 교육급여 지원액 최저 교육비 수준으로 100% 현실화('19.1)

□ 기초연금 상향 지급

○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완화 기여**

- **'21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급('21)

* 국정과제(42-2, 43-1)

○ 다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으로 **기초연금 조기인상 추진 필요**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원(~'20)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7.18

○ '22년 이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지급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18.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국정과제 42-5)

○ 최근 장애인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장애인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추진 필요**

* 소득하위 20%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9.1%('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 **'19.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조기인상(25만원→30만원)**

○ '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인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노후소득보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급여 수준 적정화 등 기초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확대 방안 마련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 분담 등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성공 패키지), 실업부조(도입 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 검토
- 근로연령층의 취업지원과 취업유지,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및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급여 수준 적정화하고, 장애인 연금 강화를 통해 장애인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소득 5분위 배율	5.1 ('15년)	5.1	5.1	5.1	최하위 1~2분위(10분위 중) 소득 대비 9~10분위 소득의 비율
노인빈곤율	46.5 ('16년)	-	-	31%	중위소득 50% 빈곤선을 적용한 집단별 인구빈곤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인식개선 지표 설정, 교육내용 체계화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로드맵)** 마련 ('19년~23년)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양질의 교육컨텐츠 발굴을 위해 **표준강의안** 마련,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일반인 대상 **공모전, 국민제안** 등 실시('18~'20)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20~)

□ **전문강사 양성체계** 마련

○ '18년 **전문강사인증제를 시범실시**하고, '20년 이후 **자격제(license)전환** ('18~'20)

○ **전문강사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 전문강사 요건, 핵심 교육과정 마련, 자격제 도입 및 운영방안 등 마련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장애인식교육 실적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교육이행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서' 제작 보급, 대상기관 교육 효과성 검증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21~)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장애인차별인식정도	3.29	3.4	3.5	3.6	장애인차별인식정도 조사문항 평균점수 (장애인차별금지 이행 모니터링)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직종 확대

○ 건설기계 1인 사업주(기존 1개 → 27개)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로 산재보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19년 시행)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지속 확대 추진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결혼이민자 폭력피해 사전·사후 대응체계 강화

○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 국어) 중심으로 폭력피해 사전·사후 대응체계 구축

-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시 폭력의심 사례로 감지되는 경우 해피콜 등 사후 관리하는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 확대(`19~)
-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 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연계 강화

* 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신고접수기관과의 핫라인 등 신고연계체계 확대

○ 불법 국제결혼중개 적발 등 현지 인권보호 감시체계 및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 교육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 추가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상담, 법률, 체류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19~)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한국어 교육, 통·번역, 멘토링, 사례관리 등 초기 정착지원 서비스 내실화

○ 결혼이민자 장기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서비스 탐색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운영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9년 155개소→ `22년 231개소
- 창업, 봉사, 자녀양육 등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 정책수립 및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기회 확대

○ 결혼이민자 직업역량 및 취업연계 강화
- 기관 간(다문화가족지원센터-새일센터-고용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강화
- 결혼이주여성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다문화 새일역량') 보급 확대
  * 출신국과 다른 한국의 직장문화, 직업 윤리 등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글로벌 역량 강화

○ 가정 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확대

○ 리더십 개발 및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9년 155개소→ `22년 231개소

○ 이중언어 인재 풀 확충하여 봉사·취업·체험 각 분야의 활용처에 연계
*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 목표 : (`22년) 3,000명(24개국)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을 돕는 '찾아가는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상적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전문적 언어발달 상태 평가 및 교육* 지속 추진
  * 대상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병행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 다문화 공존을 위한 쌍방향 교류·참여활동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 진로, 취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진입장벽 등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속 개선

11-1 적정한 가격의 주택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총 68만호('19~'22)** 공급

* '18~'22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85만호 공급 예정

- 영구임대 등 **건설형과 매입·임차형 공공임대** 4년간 **52만호 공급**, 소규모정비·집주인 임대 등을 포함하**는 공공지원주택 16만호 공급**

□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연계 제공**

○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하고 지자체·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 **LH와 NGO가 협력**하여 비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및 NGO 등과 협업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사업에의 접근성 강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슬럼, 비공식주거, 적절하지 못한 주거에 사는 인구 비율					<삭제> 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통계외 별도의 통계 산출 곤란
공적임대주택 공급	-	85만호	지속확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공적임대주택 준공(부지확보) 실적 합계

11-2	모두에게 적정한 요금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ㅇ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동성 및 편의성 향상

- KTX 수서-삼성, GTX 등 고속·대용량 철도 네트워크 확대로 지역간 및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수단 공급 확대 및 속도 경쟁력 강화
- 고속 철도 네트워크의 구축이 적합하지 않은 축에 광역급행버스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수단 공급 확대
- 철도 및 BRT 등 대중교통수단 확대가 어려운 지역에 2층버스,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공급 확대
-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간 및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개선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불편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
- 프리미엄 고속버스, 우등형 시외버스 도입, 시외버스 통합 예·발매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간 버스 서비스 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ㅇ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를 지속 도입하여 '22년까지 시내버스 42% 이상 보급

* '17년 22.4% → '22년 42% 이상

ㅇ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운행하는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 장애등급제 폐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운행 대수* 및 이용 대상의 전면 개편을 추진(~'19.7)

* 시·군별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 환경변화에 따른 자전거도로 통행질서 정비·홍보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법령정비와 안전한 통행질서 마련

- 자전거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17.12.29. 공포), 시행규칙(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 및 정책 홍보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안내, 벌칙 등 홍보

○ **자전거 운전자 행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 음주 자전거 운전 처벌,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

<자전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내 용	시 행	비 고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통행	(공포) '17.3.21. (시행) '18.3.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금지	(공포) '18.3.27. (시행) '18.3.27.	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공포) '18.3.27. (시행) '18.9.28.	도로교통법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

○ 특정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이 원인 → **집중적 개선**이 필요

※ 2016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특교 20억, 지방비 30억, 10개소)

2017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특교 30억, 지방비 45억, 15개소)

2018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재난안전특교 30억, 지방비 39.3억, 17개소)

○ 기존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16~17년, 25개소)의 효과분석을 통해 사고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

- 사고다발지역* 해당 지자체에 사고위험 개선사업 추진 요청

* 사고다발지역분석을 통해 3년간('14~'16년)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100여개소 선정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내실화 및 이용시설 확충 정비**

- 재원부족 등으로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확충·정비는 기존 설치된 시설의

사고위험 절감을 중심으로 추진

- 한강, 낙동강 등 12개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점점검 내실화(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국토종주자전거길 투어단 운영·점검)

□ **자전거 안전교육 지원·확산**

○ 자전거 사고통계를 분석할 때 **자전거 교통사고 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

- **(고령자)**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어린이)** '안전모 쓰고 자전거 타기 교육'을 통한 안전수칙 교육·홍보

○ 자동차 운전자 과실사고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62%로 **자전거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필요

- 지자체·시민단체에 교육교재 지원을 통한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 자전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국민의 행태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회부문이 참여하는 홍보·캠페인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

ㅇ 지역별·운행형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적합한 노선버스 운영 및 재정지원 방식을 재정비하여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

- 운전 종사자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휴게·휴식시간 확보
- 합리적 재정지원을 통해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송업체의 자발적 운영효율화 유도 및 운송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전기버스, CNG버스 등 친환경버스 도입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및 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공공이 주도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에 충전소 구축 확대
- 친환경 버스 구입 및 운영 지원금 확대로 운송업체 구입 유도

□ 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ㅇ 휠체어 이용자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확대 및 본격 운행으로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

□ 자전거교통 위상 확립과 통합적 정책 추진

○ 자전거교통을 친환경 도시교통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생활형·레저형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 정립

- 도시계획 및 교통체계의 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대중교통과 연계된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체계 반영

□ 지속적인 대중 교통과의 연계방안 개선(신설, 정비)

○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교통 수단 분담율 기여

-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보행과 자전거로 자전거 부대시설,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역사 유적지 및 터미널과 같은 교통 결절점 자전거 접근성 개선

□ 환경문제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건강비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운동 활성화와 교통에 의한 환경 및 건강문제(이산화탄소, 대기오염물질, 소음 건강개선)에 기여

○ 국내 및 국제 자전거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전거 수단분담률(%) (통근·통학 인구수 기준)	1.43	1.46	1.49	1.52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른 자료 (5년 주기 설문조사) ※ '00～'15년 0.06% 증가 : 5년 단위 평균 0.02% 증가
전국 평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	0.41	0.45	0.50	0.55	전국 평균 1인당 자전거 도로 연장 ('자전거도로 현황' '17년부터 국가승인통계) ※ '14년 0.39m, '15년 0.40m, '16년 0.41m : 매년 0.01m 증가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1.3	35%*	지속확대		(버스,지하철 수송실적/총 수송실적)*100
저상버스 보급률	22.4	42	45	50	(저상버스 운행대수 / 시내버스 운행대수)*100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 **광역도시계획**은 인근 지자체간 협력 강화수단으로 재정비(~'20)하고, **도시유형별**로 **차별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허용(~'22)

□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 등 난개발 방지**

○ 비도시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 억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19)

* 계획 의무수립지역과 지정 최소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수립 확대 유도

○ 도시관리·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 이행 철저(~'19)

□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 구현**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예산수립비율 등 '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지표 개선**(~'20)

○ 보행자의 높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행친화적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19)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입체도시개발구역 제도 신설 등 압축적 관리 실현

○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기반시설과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 처리

□ 포용적 사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내용 확대

○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근절, 계층간 공간분리 방지 및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방안을 포괄하는 도시계획수립 유도

○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배려, 문화적 다양성 존중 내용 포함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시가화구역 내 이용 토지면적 비율(%)	41.8	44.3	46.8	49.3	시가화구역 내 이용 토지면적 비율(%) = {1 - (a/b)} * 100 a: 시가화구역내 전, 답, 임야 면적(㎡) b: 시가화구역 면적(㎡)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1.74	1.79	1.82	1.87	도시계획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a/b) * 100 a: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예산 b: 지자체 총 세출 예산

11-5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국민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협업 강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활성화로 범부처 안전정책 조정협의 강화
- 지역안전지수 공개 및 생활안전지도 확대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유도

  *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범죄 등 7개 분야에 대해 안전등급(1~5급) 부여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체계 개선

-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반시설(교량, 터널 등),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쇼핑몰 등), 운송수단(여객선, 지하철 등)

- 일상에서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별 표본을 대상으로 기존 점검체계를 심층분석, 개선방안 도출 후 확산

□ 재해 예방 투자 확대

○ 침수, 붕괴 등 재해취약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수시·정기점검 실시 등으로 위험요인 신속 해소
- 신속한 투자로 적기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추진근거-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등, 지원형태-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사업시행-지방자치단체

□ 안전복지

○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 **안전 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 교통안전

○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스마트철도 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 안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 안전위험요소 제거

○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 지진 안전

○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조사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마련**

○ 지진 조기 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 화재 안전

○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마련**

○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스마트 기상정보

○ 전문 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개발,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 통합적 재난관리

○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소방

○ 119구급 서비스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소방복합 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 해경

○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 재난 예·경보

○ 대국민 재난 정보전달체계 전면 개선, **'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통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

○ 성과관리대상 사업장*에 국가에서 자원순환 목표부여('19.9), 사업장별 이행계획 수립('19.12) 및 이행(`20~)

* 18개 업종, 3,297개소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18.6월 공고)

○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이행 업체 대상 이행명령 및 업체명 공개 등 후속조치('21)

<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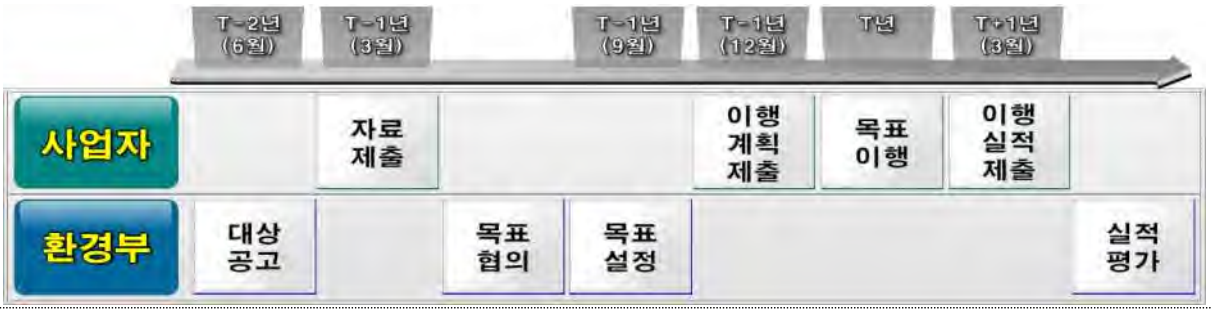

□ 유통·소비단계의 생활 폐기물 발생 감량

○ 1회용컵·비닐봉투 등 맞춤형 감축대책 추진

- 자발적 사용감축을 위한 다회용컵 인센티브 확대(자발적 협약 강화),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집중단속 강화(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 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 등 주요 비닐봉투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 대책 추진(사용제한 업종확대, 자발적 협약, 장바구니 보급사업 등)

○ 과대포장 제한 규정의 집중정비 추진

- **전자제품·택배** 등 과대포장 규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포장 규제 도입 추진**

  * 연구용역 및 가이드라인 마련(`18년) → 현장평가 및 법제화(`19년~)

- **과다한 이중포장**(마트 등의 행사상품 추가포장)의 자발적 감축,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한 **이중포장 규제방안 검토**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보급**을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악취 등 **도시미관 문제 개선**

- RFID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국비지원('19년 850대), 재활용 동네마당 내 음식물 RFID기기 포함 등 **시설 설치 지원**

□ **폐기물직매립 제로화 기반강화**

○ 폐기물 소각·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전환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대해 부담금 부과('18~)

-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에 따른 매립 감소율** 등 성과평가 및 **부담금 산정·감면기준** 등 **조정**(~'22)

○ 지자체의 공공선별장*,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선별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

* 공공선별장 국고지원 `18년 12개소(67억원) → `19년 22개소(124억원)

** 재활용동네마당 개수 : `17년 누적 460개 → `18년 163개소 → `19년 172개소

-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시범사업 추진**(`18년 1개소, 45억원)

* 전처리시설을 통하여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약 50% 재활용 가능 예상

□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최소 '22년까지는 구매보조금을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 핵심 부품 발전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 조정하되, 비재정수단 병행** 추진

* (전기차) '22년까지 보조금 유지, 연차별 보조금 단가 인하
(수소차)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보조금 유지하되 단계별 단가 인하

** 친환경차 협력금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 '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 및 정책수단 논의를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18)

□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10기) 폐기일정 단축(당초 '25년→'22년) 및 석탄화

력 비중 축소·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 확대

- 수도권 外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19), 사업장 배출총량제 도입

○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대중화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확대('17년 수도권→'20년 충청·동남·광양만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확대('22년까지 221만대 저공해화 완료) 및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22년까지 200만대 보급)

○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도료 중 VOCs 함유기준 강화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

□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의무) 신설('19)

※ 어린이집 PM2.5 기준 : 권고기준('18.1～, 70㎍/㎥), 유지기준('19.7 시행예정, 35㎍/㎥)

○ 어린이 통학차량 중 매연이 심한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차(LPG차 등)으로 전환(～'22)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감량

○ 최적 감량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원단위 폐기물 20%저감(～`27), 업종별 가이드라인·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지속

- 신규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와 연계**하여 폐기물발생 감량 기술·설비 등을 설치 단계부터 도입 유도

○ 폐기물처분부담금 효과분석을 통한 부과방식·요율 등 제도 고도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처리 다양화

○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안정 운영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처리방식 다각화로 환경영향 최소화

- 도시농업과 연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지 퇴비화, 감량기 활용을 통한 자체감량 등 수집·운반을 최소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저감

□ 1회용품·과대포장 관리 단계적 확대

○ **1회용컵 뚜껑·빨대** 등 현행 **1회용품 규제 비대상** 품목에 대한 **사용억제·무상 제공 금지 추진**

- **품목별 환경영향 분석, 소비자 인식조사, 관련업계 논의**를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단계적으로 포함

○ **제품출시 전 포장검사 의무화**를 통해 과대포장 제품 원천차단 및 획기적인 포장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

□ 친환경차 보급 지속 확대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도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친환경차 보급대수 (누적)	97,632	2,000,000	4,400,000	8,800,000	차량 1대를 기본 1대로 산정하되, 연평균 주행거리 및 미세먼지 발생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택시 1대 당 일반 승용차 10대, 버스·화물차의 경우 1대당 일반 승용차 20대로 계산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광역도시별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국내배출감소)	-	30%	지속감축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95.5	86.0	80.3	70.8	연간 생활·사업장폐기물발생량(톤)/ 연간 GDP(10억원)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도시공원 확충을 통한 최약계층 등의 접근성 강화

○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 국고사업 연계, 공원 내 시설규제 완화 등 추진

□ 도시공원 적기 조성을 통한 미집행 최소화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

□ 도시공원의 질적 서비스 강화 토대 마련

○ 기존 양적 측면의 공원녹지 지표에 접근가능성, 공원서비스 등 질적 측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도시공원 서비스 고도화

○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서 도시공원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용편의성, 질적 성능, 주민친화도를 높이는데 주력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1인당 도시공원면적(㎡) (도시지역)	9.6	10.4	10.8	11.6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도시지역인구)*100

*목표 수치는 '09~'17(9년간) 총 증가면적 평균치 적용.(총 증가면적 1.5㎡, 평균면적 0.16㎡/연)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제고

○ (도시재해취약성 분석)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도시재해취약성 분석 조기 추진

* '17년 161개 지자체 중 138개(86%) 완료 ⇒ '20년 완료 목표(지자체 협조 요청)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비율 제고

* '17년 161개 지자체 중 11개(8%) 완료 ⇒ '22년 64개(40%) 완료 목표(지자체 협조 요청)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역량 제고 및 모니터링 추진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절차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체계화 추진

○ 지속적인 도시위험 관리를 위한 도시재해취약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시 직전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중 1등급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제도 정착 및 활성화 추진

○ 도시재해 예방대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방재 우선지역 선정 및 재해취약 특성에 맞는 방재대책 방향수립 추진

-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재해1등급 지역 중 도시방재대책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기반시설 관련 장기계획 수립 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검토 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 도시방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추진

○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검증 및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도시 방재 사례지식 DB화 및 시나리오 생성기술 개발** 추진

○ **도시방재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시 방재대책 수립 및 적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지역별 재해취약 특성과 재해위험 관련 상황변화 이해 증진을 위한 **도시방재 교육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지자체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율 제고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한 지자체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율 제고**

* '25년 161개 지자체 중 113개(70%) 완료 목표 ⇒ '30년 161개(100%) 완료 목표(지자체 협조 요청)

□ 대형재난지역에 대한 가치보전형 방재전략 수립체계 구축

○ 대형재난 재발 우려지역 **재해취약성 특성 및 요인분석** 추진

○ 대형재난 재발 우려지역에 대한 **가치보전형 도시방재 가용자원 조사 제도화** 추진

○ 대형재난 재발 우려지역 영향권을 고려한 **협업형 다중방어전략 수립** 추진

○ 재해취약 양상변화 모니터링 및 추적에 근거한 **대형재난지역 지속적 관리체계 연계·제도화**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8	40	70	100	(a/b) * 100 a : 재해예방형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수 b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수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18~`27)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투입**하는 방식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이행**

-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자원순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18.9 수립)

·**(생산)** 자원생산성 제고,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

·**(소비)**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친환경 소비 촉진, 자원순환 문화 조성

·**(관리)**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지역별 처리 최적화,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재생)** 미래 폐자원 및 물질 재활용 촉진,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자원순환시행계획)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 및 관할 지역에 맞는 **세부정책 및 실천계획** 제시('19~, 수립예정)

□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촉진

○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

- 기업가 정신 관련 연구·조사 및 교재 개발·전문가 양성 등 기업가 정신 확산 기반 확충 (~'22)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자원순환기본계획 이행 및 평가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중장기 여건 및 전망으로부터 차기 자원순환 정책방향 및 세부전략 수립·이행

□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 선진국의 우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콘텐츠 확충 (~'30)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국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1	17	17	18	자원순환기본계획(국가) 또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지자체) 수립 건수

12-2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사업장별 재생원료 사용 실적 관리**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한 감량목표를 부여**('19.9)하고 **해당실적을 관리**('21)하여 **제품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투입량 저감**

○ 순환자원 등 **재생원료의 생산 및 사용량**을 폐기물 **순환이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천연자원 사용을 억제**,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성 향상 도모**

□ **국가 자원효율지표·관리 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 원료의 투입, 생산공정, 폐기 이후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가/산업 등 자원효율 분석 지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원 전 과정의 흐름을 연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순환성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원효율 관리 지표 및 보조지표 등 개발**(~'20)

□ **국가 및 업종별 자원생산성 관리 및 향상 지원**

○ 국가 및 주요 업종별 자원생산성 관리 향상 지원

- 국가 및 주요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관리 목표** 수립(~'22)

○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향상 지원 체계** 도입

- 실질적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법(REMS) 보급 및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업 육성(REMCO) (~'22)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산업계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목표관리 지원제도 도입**

○ 관련 통계 및 사업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산업발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실질적 관리를 위한 추진제도 마련

□ **자원 흐름전과정 관리 및 상위적 개념의 관리로의 범위 확대**

○ 생산단계만의 관리에서 전과정 연계 관리로의 확대

- 생산단계의 자원생산성(산업부)과 순환단계의 자원순환성(환경부)을 연계하는 관리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23~)

○ 자원이용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극대화한다는 상위적·포괄적 차원의 접근 및 관리로 확대(`25~)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극복해야할 온실가스, 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자원관리 방안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발자국(MF)	측정방법 등 연구 및 개발 필요				아직 없음
국내 자원 소비량(DMC)	663 백만톤	-	-	684 백만톤	국내 자원소비량(DMC)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2.27 백만원/톤	-	-	3.03 백만원/톤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0.44 톤/백만원	-	-	0.33 톤/백만원	국내 자원강도(DMC/GDP)

12-3 소매업 및 소비자 단계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시켜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가 큰 **RFID기반 종량제 보급 확대**

○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RFID기기 설치 의무화** 등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침 개정**('18.12)

○ RFID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국비지원('19년 850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 음식물 RFID기기 포함 등 **시설 설치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홍보 확대**

○ 종량제 시행성과,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 대책 등 전국 **지자체 대상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선정·포상** 추진

○ 민·관 협력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우수사례·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민 주도 발생량 원천감축 유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최적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정책 포럼** 개최(연 4회)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낭비없는 음식문화 지속 홍보·교육**으로 **국민 인식 개선**

○ 식품자원 낭비 최소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관련 내용 교과과정 반영, 매체 홍보 및 민·관·학 협력 교육활동 지속 추진

□ RFID 종량제 안정적 운영 및 고효율 감량기기 개발 등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감량 기반 확대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식품 손실 지표					
식품 폐기물 지표	0.37	0.36	0.35	0.34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에 폐기하는 식품의 양(단위: kg/인·일)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관리 사각지대의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17.8월 발효)과 관련하여,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기준 마련('19년)

- 휘발성· 잔류성 등의 수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매립·소각 처분 등을 제한하고 수은 회수 등을 도모

□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 교통공단내 관리센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말장치 300대 장착·시범운영('18.10~12), '19년부터 제도 본격 시행

* ('18년) 300대, ('19년) 4,600대, ('20년) 4,200대, ('21년) 6,300대

□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 추진('19.1~)

○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 신규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 시 등록하고, 미만 시 신고

○ 인체 위해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물질과 연간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1년까지 등록

□ 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 유발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위해성 관리

□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점차적 지정·확대*('17년 97종→112종('22))

* 건강·환경유해성이 낮더라도 화재·폭발위험성 또는 물과 반응하여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사고대비물질 지정·확대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폐기물별 유해성 평가·연구 등을 통해 유해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체계 구축

- 안전처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방안 검토

□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으로 유해폐기물 사고 사전 예방**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전관리, 위험물질 운송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한 이상운행 감지 및 사고예방, 사고시 신속 전파로 대응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생활 속 **발암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 강화**

○ **유해성정보 생산·지원 등 산업계 지원**을 통해 **'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은 '24년까지 등록,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7년까지 등록,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30년까지 등록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를 통해 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의 **지정** 등 **물질 안전관리 추진**

□ **화학사고 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위해관리 강화**

○ 외부 유·누출 시 **유해·위험물질로 변하는 물질** 등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인 '**위해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확대**

* EX. (기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변경) 유해·위험성이 큰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톤)	0.098	-	-	-	지정폐기물 배출량/총 인구수 * 지정폐기물은 주로 사업장폐기물로써 인구 1인당 지표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 * 발생저감보다 안전처리 관련 지표로 개선 검토 필요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 수	517 (960)	750 (1,710)	300 (2,010)	500 (2,5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정보 확보물질 수 * 신규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등록→등록·신고)으로 22년 이후의 등록 수 하향 예상
사고대비 화학물질의 수	97	112	120	140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물질 수(누적, 종)

12-5 폐기물 발생의 예방과 감축,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포장재·제품 등 설계개선으로 재활용 촉진

○ (순환이용성 평가) 제품의 재활용저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 재활용률 제고

- 5개 플라스틱 제품군 내 127개 제품을 대상(`18.6월 선정)으로 평가 및 개선권고('18.12)를 거쳐 이행결과 모니터링 등 추진('19~)
- 전자제품('19) 및 자동차 부품('20)으로 평가대상 제품군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제품 설계상 순환이용성 개선 유도

○ **EPR 포장재** 전체에 대해 **재질·구조 평가를 의무화***(자원재활용법 개정, '18~)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분담금 차등화

* 기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사업장 자율로 운영되어 실효성 부족

- **재질·구조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포장재**와, **2·3등급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차등화**('19~)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감축

○ 현행 1회용품 규제 비대상 품목인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시장 조사, 소비자 인식조사, 관련업계 논의**를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포함 추진

○ 1회용컵 사용 감량,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상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온라인 쇼핑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유통**(운송) **포장재 감량**을 위해 유통 포장재 사용현황 파악,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파손방지를 위한 완충재(뽁뽁이 등)의 친환경 제품(재생종이 완충재 등) 대체 등

□ 생산자의 재활용책임(EPR) 대상확대 및 의무강화

○ (**포장재·제품**) '18~'22년 장기 재활용목표율(평균 65.6%)은 기존 목표율('13~'17년, 평균 61.6%)보다 4.0% 높게 설정

* '18년 품목별 재활용의무 이행상황을 확인·검토하여 목표율 인상이 필요한 품목은 재활용 목표를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18.하)

○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목표량 설정('18.하), 단계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전 품목 대상검토, `19~)

<2019~2023년 전기전자제품 장기재활용목표량(안)>

구분	해당연도					적용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1안	8.42	8.51	8.60	8.70	**8.81**	출고량에 **EU목표율** 적용
2안	6.35	6.75	7.16	7.58	**8.00**	출고량에 과거 **제품별 재활용비율** 기반 목표율 적용
3안	6.76	7.35	7.87	8.32	**8.70**	수명분포를 활용한 **예측발생량**에 **EU목표율** 적용

○ (**영농비닐**) 생산업계, 재활용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상) 및 제도설계('18년)를 통해 EPR 도입 추진('20년 EPR도입 목표)

* 영농폐비닐의 수거·처리 역할을 정부에서 생산업계로 전환하고, 생산자들의 분담금을 통해 재활용업체 경영난 해소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의 단계적 관리대상 확대**

○ 품목별 환경영향 분석, 소비자 인식조사, 업계 논의를 거쳐 1회용 컵 뚜껑 등 1회용품 규제 비대상 품목의 단계적 규제편입 추진

○ 운송 포장재에 대한 법적 제한기준 마련을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적용성 평가 및 법적 제한기준 마련

□ **포장재·제품 등 설계개선 및 재사용 기반 등 확산**

○ 순환이용성 평가,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한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설계변경 등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 재사용 및 공유경제 기반 확산 등 제품의 수명연장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축 확대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59.6	68.9	74.5	83.8	연간 생활폐기물 재활용량(톤)/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톤) * 100%

12-6 지속가능경영 활동 노력과 성과 및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을 확대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홍보

○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발간물, 홍보자료 등을 비치·홍보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12-7 녹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활성화 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지자체 녹색구매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정·반영

○ 2022년까지 목표치(62%)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 매년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설정하여 달성율에 따라 평가 시행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교육 강화 및 대상품목 확대

○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교육일정 수립, 전국 순회교육 및 수시 방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 구매율이 낮은 품목(토목·건설재) 중심으로 전문교육 실시 강화

- 토목·건설자재 구매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역 녹색제품 소개 및 녹색제품 품질 신뢰 제고

○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품목 발굴 및 인증기준 마련

□ 온라인 녹색제품 구매채널 확대

○ 녹색제품 e-마켓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녹색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 제고

* 공공기관의 중앙조달(조달청) 외 녹색제품 구매 편리를 높이고자 제품검색·전자상거래·실적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지자체 녹색구매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ㅇ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발굴(3개), 네트워크 구축 및 모델 확산

- 공공녹색구매를 지자체 고위급 네트워크 의제화 추진
- 녹색구매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성과측정 및 확산을 중점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구매이행 유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35.2	62	65	70	(녹색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100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59	65	68	73	생활용품 녹색제품 인증기준 건수(누계)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19~)

○ 환경교육 정상화방안 마련으로 환경교육 추진체계 재정립

- 환경교육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18년) 및 포럼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교육 정상화방안" 마련·추진('18~)

○ (광역)환경교육센터 조기구축* 및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 '17년 7개소 → '18년 12개소 → '19년 16개소

** '17년 2억(1개소) → '18년 6억(4개소) → '19년 7.5억(5개소)

□ 학교 환경교육 정상화 추진

○ 환경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사업 확대('17년 9개교 → '18년 16개교 → '19년 23개교)

○ 환경교육 과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장, 시·도장학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 정기적 개최

○ 환경동아리,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및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지원사업 지속 추진

○ 유아환경교육관을 통한 유아환경교육 지원 강화

-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 등 3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공모·선정 등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우수환경도서 선정·발표 및 우수환경독후감 공모·시상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확대 및 양성인력 관리 강화

○ 환경교육홍보단 강사(350명)를 활용한 시민, 군인, 주부, 학생 등 맞춤형 환경교육 지속 추진(지방환경관서)

○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 개최(매년)

- 환경교육박람회, 환경문화예술 행사 및 정보공유·소통의장 마련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가 환경교육 체계 확립 및 주체별 역할 정립

○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민간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국가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가환경교육센터 정상화,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 내실화, 국가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 국가 환경교육체계 및 기관간 역할을 매5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교육종합계획 및 환경교육진흥법에 반영

○ (국가)환경교육센터-(광역)환경교육센터-(지역)환경교육센터 간 역할 정립 및 기능 배분으로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

-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 법·제도운영 및 예산 등 총괄
- 교육자료 개발, 인력양성, 제도운영 및 교육 등은 환경교육센터 전담

□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이 국어, 과학과목과 같은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 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 필수교과목 채택이 어려울 경우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연 00시간 이상)

○ 환경과목 외에 타 교과과정(사회, 도덕 등)에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 강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환경교육진흥법 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공공부문 의무교육 규정 신설

○ 생애 전주기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현장중심형 컨텐츠 개발·운영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	10%	15%	30%	(당해연도예산액/전년도예산액)×100
환경교육 전·후 환경의식 및 태도 변화도(%)	30.7%	31%	35%	40%	(교육후-교육전 점수)/교육전 점수×100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대체 플라스틱 개발을 통해 환경으로의 유출을 방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재생원료 공공구매 활성화

○ **녹색제품 인증 품목**에 **재활용제품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이용률 명시**,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구매비율 49% → 70%)

- 환경표지 인증기준(총 165개) 내 폐재(34개), 포장재(61개) 및 재활용 용이성(56개) 항목이 포함된 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개정 추진

□ EPR 대상확대 및 의무강화

○ **현행 43종**인 EPR 대상 품목을 **EPR 非대상 폐비닐, 바닥재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하여, **'20년까지 57개, '22년까지 63개**로 확대

- 현재 **EPR 非대상 폐비닐류**(5종)을 **EPR로 우선 확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하)
- **'20년**에는 기존 **자발적 협약* 품목 중 바닥재 등 9종**을 EPR로 전환, 그 외의 자발적협약 품목(PE관 등) 6종은 **'22년까지 전환** 추진

  * **바닥재 등 15개 제품**은 EP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 목표를 이행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비용분담은 낮은 수준**

- 아울러, **자발적 협약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여 EPR로 조속 전환 유도(자원재활용법 개정, '18~)

□ 플라스틱 등 재활용기술 R&D 추진

○ **민·관 합동**으로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등에 대한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화 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19~'21년, 국고 330억원)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재생원료 공공구매 활성화

○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부 포상, 기술개발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인센티브 발굴**

□ EPR 확대·의무강화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고

○ 현행 출고량 중 일부(재활용 의무율)에 대한 분담금 부과방식 대신 생산량 전체에 대한 분담금 부과 등 EPR 제도개선 추진

□ 플라스틱 등 물질재활용 중심의 기술개발 확대

○ 폐기물 발생에서 수요예측, 자원화까지 Zero-Waste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재활용 R&D 추진

*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로드맵 마련('19)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사용량에 대해서는 통계 없음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사용량에 대해서는 통계 없음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지방자치단체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처별 이행계획 1)

○ 국가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관광진흥법 제49조 2항)

○ 권역별 관광여건과 관광동향 및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지 연계와 관광사업의 추진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정립

○ 관광 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립

□ **국민여행실태조사 개선** (부처별 이행계획 2)

○ 관광위성계정(TSA) 작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정확성 제고 차원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유사통계 조사방법 준용

○ 반기 단위 작성에서 매월 작성으로 변화, 예산 확보를 통한 매월 표집조사 방법 실시

○ 관광객들의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소비액 측정을 통한 관광분야 직접 GDP 산출이 가능한 통계조사 추진

□ **공공 및 민간 자료를 활용한 관광지출액 파악** (부처별 이행계획 3)

○ 외래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액 및 지출형태 파악을 위한 국내에 통용되는 신용(직불)카드 5종(VISA, Master, American Express, JCB, 은련)의 VAN 자료 접근 및 활용 추진

○ 국민의 관광지출 및 이동동선 파악을 위한 국내 신용카드 VAN 자료를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 및 활용 추진

○ 식별자료 노출 방지 및 익명화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방안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진행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열린관광지 확대 등 관광여가 사회 실현
-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육성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적립급 집행률)%)	-	80	83	85	적립급 사용액/총 정립액*100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109.5	114.6	119.2	120.0	2015=100, 관광/여행분야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 값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
(예비)관광벤처사업 창업율(%)	93.9	94.2	94.8	95.2	창업업체수/지원완료기업수*100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후변화 영향평가 고도화

○ 기후변화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과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적응정책의 효율화 및 강화 기반 마련**(~'20)

* (예)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범람 발생 예상지역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통합모형**(MOTIVE :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개발** (~'20)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내실화

○ 기후변화 적응보고제* 등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평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후적응평가 및 이행·점검 등을 구체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추진 ('19)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계획을 수립·보고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수립** ('20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기반 마련위주의 적응대책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의 실질적 저감을 위한 **대응중심 적응대책으로의 전환 추진***

*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목록 체계화**(위계정립, 우선순위 도출 등) 및 부문별 적응정책·**대응사업 발굴 및 강화** 등 ('19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가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 국가·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이행·점검·지원 및 환류체계 강화

○ 보건·수자원·농어업·생태계·에너지 등 부문별 적응사업 확대

○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 모델사업* 발굴 및 추진

* 융합·발전형 모델 예시 : 수도권의 도시침수지역, 강원권의 산림지역, 충청권의 농림지역, 전라권의 해안지역, 경상권의 산업지역, 제주권의 도서지역 등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기후변화 적응능력 지표 개선율* (%)	16.2 ('18)	34	47	68	* 하기설명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응)능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국가 통계자료 6개 (① 1인당 도시녹지 면적, ② 1인당 GRDP,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규모, ④ 사방사업(산지보전, 계류보전, 사방댐, 해안방재림 조성) 실적, ⑤ 재난재해관리기금 조성규모 ⑥ 하수도 관로 개·보수)의 평균 개선율('18년 16.2%, '12년 대비)

※ (참고) 지표를 구성하는 통계자료 발표 시점은 성과를 측정하는 시점과 2년의 시차를 보임(='18년 실적은 '16년 통계자료로 산정). 기준년도(원시 통계자료 생산시작 시점)인 '12년 대비 '16년까지의 평균 개선율(16.2%)을 고려하여 이후 목표치를 설정

※ 국가 SDGs 이행평가시('20)까지 지표를 구성하는 통계자료 선정의 적합성, 추가 활용가능 통계자료 발굴 등 지표의 적절성을 재검토 할 예정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후변화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감축 의무기관이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위한 행정, 재정지원 추진

○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 기후변화 감축 지자체 추진전략 수립

○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하여 예상 감축율 제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지원

○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분석 제공(매년)

□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 · 이행 지원

○ 산업계 및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관리 도구(CCRAT) 고도화 및 배포 등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ool

○ 민간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해 CSR(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 환경경영과 연계한 컨설팅 활성화 추진

□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 이행 지원

○ 지자체 취약성 평가(VESTAP) 고도화 및 배포 등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적응대책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확산

○ 권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응사업 지원, 취약성을 고려한 적응 표준모델 개발 등 지자체 적응역량 지속 제고

-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적응사업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각 지역에 전파·확대

- 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 취약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응 기초역량 제고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지자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2030 국가 감축로드맵 수정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마련

□ 감축수단별 주요 추진내용

○ LED 조명보급

- 공공건물(관공서, 공공사무소, 대학, 초중고)의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램프, HID 등을 LED 조명으로 '16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인 46.6%를 기준으로 '30년까지 100%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 LED·재생에너지 가로등 보급

- 전체 가로등 사용전력의 70%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 나머지 30%는 재생에너지 가로등(태양광·풍력 일체형)으로 교체하여 '30년까지 100% 보급

○ 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설비 보급 확대

- '30년까지 태양열 28KTOE, 지열 398KTOE 보급

○ 건축물 단열 강화

- 신축건물의 '20년 패시브 기술, '27년 제로에너지 기술 도입 및 노후건물(15년 이상)의 리모델링 연 3% 수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공공부문(관공서, 공공사무소, 대학, 초중고)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연 3% 보급

□ 자발적인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노력 확산

○ 자발적 기후변화 적응 참여 기업체 대상 인센티브 발굴·제공 확대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정보와 기업경영 정보를 연계하고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최소화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

ㅇ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이행현황 모니터링 등 이행체계 강화

ㅇ 지역단위 기후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및 적응 선도사업 효과분석 등을 통한 표준모델 지속 발굴·확대 전파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률(%)	6.5	16.5	21.7	30.1	- 감축률= 감축량/미래배출량 (연도별 인벤토리 산정내용 반영)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25	100	200	300	-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기후변화 대응 인식 확산 노력

○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및 국민과의 기후변화 적응분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사업 추진

* 폭염, 한파 등 현재 또는 장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피해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기후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

□ 산업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정보제공

○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계의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산업체 기후변화 취약요소를 진단·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체계 및 적응 대책에 대한 교육으로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기후변화 대응 인식 확산 지속 노력

○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저탄소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적응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지속 추진

□ 산업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정보제공·교육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확대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요소 및 적응수단 데이터베이스화 등 자료 축적 및 산업계 피드백을 통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사례 공유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미나 개최 (개최 수, 참여기업 수)	(-) (3)	(1) (30)	(1) (30)	(1) (30)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미나 개최 참여한 기업 수 *'17년의 경우 3개 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 교육 실시

13-4 전지구 2℃ 이하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 '22년까지 10기(삼천포#1·2, 호남#1·2, 보령#1·2, 영동#1·2, 서천#1·2) 폐지

□ 수송용 연료 신재생 비중 확대

○ 자동차용 경유에 '20년까지 바이오디젤(BD) 3.0기준 달성

*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 ('15-'17년) 2.5% → ('18-'20년) 3%

□ 신축 건물 단열 강화

○ 패시브 기술 도입으로 건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반 마련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발전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발전믹스 강화

○ 석탄발전 6기 LNG 전환 및 노후 석탄발전 성능개선(Retrofit),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제고('30년까지 20%)

□ 산업부문 기기·설비 효율화 및 신기술·혁신기술 적용

○ 공통기기 효율개선 및 FEMS 보급, 공정설비 효율화

○ 혁신기술 개발·보급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 온실가스 저배출 연료 및 원료 대체(유연탄, B-C유 → LNG, 바이오매스)

□ 건물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

○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 강화 및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 '25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 확대

○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등

□ 수송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감축

○ 친환경차·선박·대중교통 보급 확대

○ 3자 물류 활성화 및 화물 Modal Shift(도로→철도·해운) 촉진

ㅇ 원격근무 시행 및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 승용차 운행억제

□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ㅇ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 등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ㅇ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확대, 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설비 보급

ㅇ 공공 건축물 단열강화 및 BEMS 보급

□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

ㅇ 논물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 양질조사료(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및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694	673 ~671	661 ~648	608 ~574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 전환부문 추가감축잠재량 반영 수준에 따라 상기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

** 산림흡수, 국외감축에 따른 효과 반영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오염해역 수질개선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특별관리해역 제도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질 개선

- 특별관리해역 지정·해제·변경 기준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특별관리해역 추가 지정
- 특별관리해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관계부처 협의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확대 시행

○ 제3차('19~'23)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후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제고

○ 지자체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및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오염물질 유입 저감

□ 해양환경 조사·분석 역량 강화

○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을 통해 오염해역 파악 등 모니터링

○ 해양수질자동측정소를 통한 수질오염 조기 경보체계 시행 방안 마련

□ 연안관리 협력체계 구축

○ 육상 환경과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환경부 등) 정책협의체 운영

○ 해역별 민관산학 협의회 활성화

□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상유입 감소

○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육상기인 쓰레기의 주원인인 1회용품 사용 제한(환경부, 산업부 등)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18.5)하고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계획

○ 강 하구 부유쓰레기 유입차단막 설치, 하천·방조제 주변 쓰레기 적치장 설치, 장마·홍수 전 수거 강화 등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해양 유입 예방(환경부)

*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수립(2015)

○ 조림사업 확대, 임목부산물* 적극 수거로 초목류의 해양유입 저감(산림청)

* 벌목 등 산림사업 후 산림에 버려지는 뿌리, 잔가지 등

□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 투기 감소

○ 폐스티로폼 부표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폐부표의 해양유입 감소

-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부표 보급 시 폐부표 의무반납 등을 통해 폐부표의 유실률 저감('17, 86%→'22, 20%)

  *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원인인 폐스티로폼 부표의 생산-사용-수거-처리의 전(全) 주기를 관리, '16-'19년까지 시범 사업 후 본 사업 실시 예정

- 폐부표의 부피를 줄여 재활용플라스틱 원료로 변환하는 감용기 보급사업 지속 추진('18년까지 40대 → '22년까지 48대)

○ 제도 개선 및 적치시설 등 인프라 제공으로 폐어구(어망) 발생 원인자인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 유도

- 폐스티로폼 부표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폐어구에도 확대 적용 추진('19년 정부안 반영, 12억원)
- 폐어구의 해양 투기 예방을 위해 어민의 출입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 해상에 선상집하장 지속 설치('18년까지 400개소 → 연 50개소 추가 설치)
- 해안가에 폐기물 적재함과 어구보관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해안가 야적과 방치로 인한 해양유입 최소화
- 생분해성 어구 보급('18년 52억원) 시 폐어구 반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기자재 개발·보급을 통해 폐어구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

  ※ 장기적으로 양식용부자와 김발장에 적용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어구에도 적용하여 재활용 촉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종합적인 해양환경평가 지수 개발

○ 해양환경 및 생태를 포함한 종합적 해양환경평가 지수 개발

○ 각 해역별 해양환경 오염지표 개발

□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상유입 감소

○ 장기적으로 강·하천 유역 쓰레기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여 해양 유입량을 점진적으로 저감(환경부)

○ 해양으로의 유입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육상기인 쓰레기에 대한 하구 쪽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실시(환경부)

*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성상확인 목적임

□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유실 투기 감소

○ 해상기인 쓰레기의 주원인인 ①양식장 부자, ②어선어업의 어구 (폐어망 등), ③양식장 폐기자재에 대한 발생(판매)부터 처리까지의 체계적인 全주기적 관리 확대

○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스티로폼 부표 전면사용 금지**를 통해 해양유실로 인한 쓰레기 발생 최소화

* 기존 스티로폼 재질 대신 코팅 또는 플라스틱 부표로 대체 ('24년까지 교체대상 부표 46백만개의 50%)

** 현재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할 수 없고 고밀도 부표는 사용 가능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o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81.8	90.9	97.7	100	(해양환경기준 목표수질 달성해역수 / 연안해역수(26개소))*100
o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투기 감소 비율	2,287 천개				- 현재 부표 및 어구의 판매량과 처리량이 산정되지 않는 상태로 적정지표 측정불가 - 유사지표인 '폐스티로폼 부표 관리체계 구축' 용역 중 폐스티로폼 부표 유실투기량 확인(추정)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 및 갯녹음 해소를 위한 바다숲 조성**

○ 자연암반 개선, 모조주머니 시설 및 천연해조장 보전 등 **친환경적 기법**으로 **바다숲**을 **조성**하여 갯녹음 발생에 선제적 대응

* 바다숲 조성 누적 면적 : (´19년)21,360ha → (´22년)30,360ha▸사후관리 해역 포함

- 해역별 적합한 해조·해초류 품종을 바다숲 조성에 활용하여 유지·관리

* 전국연안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19년)25개소 → ('22년)40개소

** 해역별 맞춤 품종 : 동해(다시마), 서해(염생식물), 제주(산호)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술기반 마련**

○ 복원 유형별 갯벌복원 기술지침 마련

- 노둣길·연륙교 대상 해수소통로 설치 방법 및 폐염전, 폐양식장, 농지 등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채 방치된 갯벌복원 기술지침 수립

○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평가 지표 개발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속 추진**

○ 폐염전·폐양식장 등 **훼손된 과거 갯벌 지역**에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복원사업 계속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바다숲 조성** 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 갯녹음 발생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생 원인별 조성기법 적용**을 통해 **바다숲 조성 확대**

* 바다숲 조성 : ('25)39,360ha → (´30년)54,000ha

○ **바다숲 조성가능 해역을 격자화**하여 **지속적인 보전·보호 관리 기반 마련**

* 전국 연안 2,733개 격자(수심5~20m, 160ha/cell) 관리 시스템 구축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제도 기반 구축

ㅇ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갯벌어업,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갯벌의 보전·복원·이용 등에 관한 제도적 관리기반 마련

□ 갯벌복원사업 확대 추진

ㅇ 갯벌복원 유형을 기존 단순 복원에서 생태복원·생태관광·갯벌어업을 연계한 복합형 갯벌복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o 바다숲조성 누적면적(ha)	15,252	30,360	39,360	54,000	바다숲 조성면적 누적 실적치
o 갯벌복원면적(㎢)	0.2	1	3	6	직접(지적말소 면적), 간접(준공면적)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육상 오염물질 관리 강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관계부처 협의

○ 지자체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및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오염물질 유입 저감

□ 해양 산성화에 의한 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 확립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확대 및 강화

○ 오염심각해역에 대한 특별관리해역 추가 지정 및 오염 관리

○ 해양 오염원 추적을 통한 오염 관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해양 산성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산성화 경향 분석을 위한 조사 시스템 구축

○ 해양 산성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을 통한 pH 모니터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해양 산성화 정보 구축 및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 체계 구축

○ 해양 산성화 DB 구축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해양 산성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 표준화 마련

○ 해양생물의 해양 산성화 민감도 및 해양생태계 구조 평가

- 해양 산성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동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

□ 해양 산성화 발생 요인별 저감 기술 개발

ㅇ 해양 산성화 발생 요인 파악을 통한 저감 기술 개발

- 연안의 해양 산성화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기술 개발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o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8.1	8.1	8.1	8.1	(해양환경측정망 정점별 연평균 pH농도의 합/조사정점수)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TAC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관리 및 과도한 어업 지양

○ TAC 소진량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정위판장 보고의무 강화

- TAC 대상어종에 대해서는 미참여 업종도 자발적 어획실적 보고를 유도하여 정확한 TAC 대상 어종 어획량 실적 관리 추진
- '22년까지 수산자원조사원 확대* 추진 및 위판장별 2인 이상의 조사원 배치를 통한 TAC 어획량 모니터링 강화
- TAC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실적 관리강화 필요성이 높은 업종에 전자적 어획보고 시스템 구축 및 적용

* (`18) 전자보고 시스템 시범도입 → ('20 이후) 단계적 확대 적용

○ 실어획량 수준의 단계적 할당량 감축으로 소진율 90% 수준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어획량 제한을 통한 자원관리 효과 제고

○ TAC 대상어종에 대해 의무가입 업종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TAC 어종을 5%이상 어획하는 업종 의무참여 추진 및 지원방안 강구

□ 연근해어선 감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대상 : 근해어업 21개, 연안어업 8개, 구획어업 12개 업종)

- 연근해어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으로 전환·확대*하고, 2단계 감척 기본계획('19~'23) 수립·추진

* (연안어선) 영세·소형어선을 감척하여 어촌사회 안정화 유도(은퇴형·복지형)

* (근해어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업종 중심으로 추진 ⇒ 수산자원 회복 최대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TAC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 **(TAC 대상 확대)** TAC 어종 확대로(삼치류·청어·가자미류 등) 대상어종 어획량을 전체 연근해 생산량의 **75% 수준**으로 상향

○ **(할당량 관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할당량 배분을 통해 소진율 95% 수준으로 유도하여 실질적인 어획량 제한을 통한 자원관리 효과 제고

○ **(제도선진화)** TAC 확대 정착 후, 쿼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어획량 거래**가 가능한 **양도성 개별할당**(ITQ)으로 **전환**

□ 연근해어선 감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어선 감척)** 연근해어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 지속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o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어획량 증가	25	50	60	75	(당해년도 TAC 배정량 / 당해연도 총 어획량)*100
o TAC 대상어종수	11	14	20	30	TAC 참여 대상어종 증가수
o 감척어선 수(건)	291	1,250	지속확대		연근해어선 감척 수(건, 누계)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1 단기 이행계획('19~'22)

□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추진

○ 람사르 인증 습지도시 지정·지원 및 해양생태 해설사 제도 도입

○ 시·도지사 해양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 해양보호구역 체계적 관리 강화

○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습지보호지역 대폭 확대(서천·고창·신안·보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 강화

○ 국가 주도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 지자체 해역, 만 규모의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해양생태계 보전 네트워크 강화

○ 연안중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서 근해까지 확장하여 지정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o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28	31	34	39	최근 3년간 지정 개소수 평균 결과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 IT, BT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장 확대, 참다랑어, 뱀장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상업화·산업화 추진

○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및 인공산란장 조성, 내수면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한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 배합사료 의무 사용 확대, 우수종자 개발·보급, 양식장 수(水)처리 시설 보급 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제고

□ 수산업 유통·물류 혁신 및 수출활성화

○ 거점형 청정위판장 조성,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확대를 통한 수산물류 기반 강화

○ 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 현대화, 유통종합단지 건립,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스마트 유통시스템 확대

○ 수출지원센터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권역별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김·어묵 등)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

○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원산시표시 단속강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산물 이력표시제 확대 등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 조성 및 어가소득 증대

○ 어촌 뉴딜 300을 통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귀어귀촌마을 조성 등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젊은 청년 유입 촉진

○ 양식재해보장 대상 확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제도개선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수산정책보험 활성화

○ 수산분야 민간자본 투자 촉진, 우수기술 보유자에 대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 고품질·친환경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산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수산가공산업의 수산 신성장 산업화

○ IoT기반 수산물 유통·물류 혁신, 개인 맞춤형 미래수산식품 개발, 수산어촌 신거버넌스 구축으로 제4차 수산업 혁명 실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어가 소득(백만원)	49	57	60	65	당해연도 어가소득
어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82.3	85	86	87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 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해양환경오염 예측·제어·저감기술 확보**

○ 해양쓰레기, 해양미세플라스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등) 등에 대한 **예방 및 처리기술 개발**

○ 각종 해양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 국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의 유입·현존량 DB 및 현황지도 제작 등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연구역량 확보**

○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관측, 서식지 복원 관련 기술개발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해양건강 개선을 위한 연구역량 지속 확보**(계속)

○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역량 지속 확보** 및 개도국 등의 **기술원조 사업 확대**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3.0	5.0	5.5	6.0	정부 해양수산 R&D 투자액 / 정부연구개발예산×100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 지급대상지역 선정요건중 육지와 도서간 이격거리 규정 삭제*로 전체 도서지역(연륙도서 제외) 거주 어가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급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18.7.)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 유인도서 중 지자체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신청한 도서지역 거주 어가에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 인상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급 단가는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간 연간 평균어업 소득차의 50%를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간 어업소득 격차*로 점진적인 단가 인상추진(연간 5만원 인상)

* 어업총조사 기준 조건불리과 일반지역 소득격차 ('10년) 98만원 → ('15년) 293~424만원

○ 2015년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협의결과 '20년까지 70만원 인상예정이나 '22년까지 인상추진

* 연간 어가당 직불금 ('18년) 60만원 → ('19년) 65 → ('20년) 70 → ('21년) 75 → ('22년) 80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공익형 수산직불제 확대

○ 어업인 소득보전과 함께 자원·환경을 보전하는 "공익형 직불제"추진

- 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지와 함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자원보전, 친환경, 경영이양 등) 확대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3	10	15	20	{(당해년도 수급어가-전년도 수급어가)/당해년도 수급어가}*100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만원)	55	80	95	120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투자규모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제사회(CB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19~)

○ 국가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권고기준 달성*을 위해 범부처(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합동등 보호지역 협의체 운영

* 국가보호지역을 '21년까지 전국토의 17%이상 확대('18년까지 15.5%)

○ 각 부처별 누락된 기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국제사회(세계보호지역 DB, WDPA)에 등제하여 보호지역 면적 지속 확대 및 현행화 추진

□ 육상과 내륙담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 확대지정·관리('19~)

○ 습지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우수습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치되었던 우수습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기반 마련

○ 신규 발굴된 후보지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습지보호지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확대지정 추진

□ 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및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19~)

○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을 통해 습지 수량확보용 세굴방지막 설치, 식생도입, 지장물 철거, 육화방지사업 지속 추진

○ 또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생태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습지 보전관리 및 이용 이설 설치

□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을 확대 보전

○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44만5천ha)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맥·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 ('17) 152천 → ('22) 200천ha

○ 백두대간, DMZ 등 핵심 산림의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

* 핵심생태축 복원사업(누계) : ('17) 314ha → ('18) 331ha

○ 산림습원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 강원·경북지역 75개소(41ha)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 산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체계 도입

○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추진

* 산림재해 안정성 등 지형조건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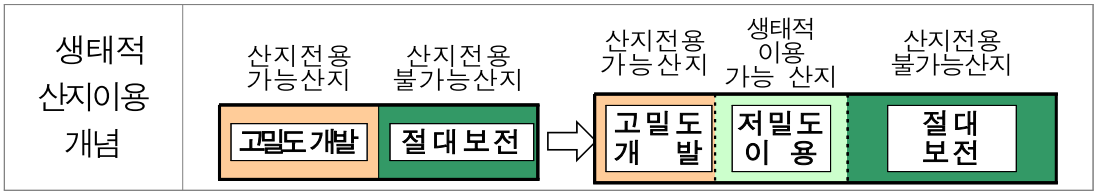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이용 확대

○ 현재 2개소 운영 중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한적 탐방지역을 (인제 점봉산, 울진 소광리)점진적으로 확대

- 2022년까지 인제 아침가리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 후 성과를 분석하여 점진적 확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협력구역에 대한 이용 확대

- 2019년까지 핵심-완충-협력구역별 행위제한 차별화 법제화

* 현행규정은 핵심-완충 등 2개로 구분, 구역별 행위제한에는 차이가 없음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평가(MEE) 등 관리기반 강화

○ 국가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평가를 통한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효과성평가(MEE*) 확대 추진

*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국가별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보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하여 IUCN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 국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평가(MEE)를 통해 국가보호지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 육상과 내륙담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 확대지정·관리

○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산지의 체계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반영하여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전면개정

○ 산지의 구분체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

□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국가 전체적인 산줄기 이해 및 산지관리에의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

□ 산림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 정비

○ 산림복원위원회,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정비

○ 산림유전자원의 조사,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협력구역 제도, 생태계서비스, 생태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신설

□ 유용식물 자원의 산업화 지원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유용식물에 대한 대량증식·재배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 및 산업 지원 강화

- 2030년까지 700종 이상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보급

○ 실용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공급자 연계 플랫폼 구축

- 유용식물증식센터,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등 산림청 소속 연구소와 수요자간 연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국가보호지역 확대	11.6%	16.5%	지속확대		내륙습지를 전국토(100,284㎢)의 16.5% 이상 확대(국가보호지역 통합DB(KDPA) 등제 현황)

15-2 삼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보고서 지표의 발굴

○ 국가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한 지표를 분석하고 '19년 발표될 국가보고서에 추가 적용 가능한 지표를 발굴('19)

- 고해상위성 및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표 적용 가능성이 높은 "1.1.c 산림의 단편화" 등을 우선 추진

□ 미 포함된 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

○ 몬트리올프로세스 7개 기준 67개 지표 모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 조사 체계를 분석·적용

- 차차기 국가보고서('24)에 추가 예정인 지표 데이터를 준비('20~22)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등에 따른 산림면적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

○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면적의 변화를 파악하고 산림생태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비율을 검토

- 면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신뢰성 및 완전성 확보

○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19개 지표를 '29년 까지 모두 포함

- '09년(1차) 28개 → '14년(2차) 36개 → '19년(3차) 39개 → '24년(4차) 45개 → '29년(5차) 54개

○ 지표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여 국가차원의 산림변화 추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

□ 산림생태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 산림 유형별 면적 비율을 관리하여 목재·비목재 생산, 미적·휴양적 가치, 특정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조성

- 안정적인 영급 비율과 균등한 산림 유형을 고려한 조림·재조림 실시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국가보고서 지표 확대(지표수)	36	39	45	5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가보고서에 측정된 지표 수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면적의 균등성					** 별도의 산식·목표치를 제시할 계획*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 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토지황폐화 중립 달성 노력을 위해 토지황폐화 중립 목표 수립**

○ 국토종합계획 등에 기초한 산지전용 수요 전망 연구('19)

- 인구 증감 추이·국가 경제 전망 등 산지전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산지전용 수요 전망 도출

○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토지황폐화 중립(LDN)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공표('20~'22)

- 전국의 토지 담당부처인 농식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LDN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 UNCCD 당사국총회 및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2021)를 계기로 LDN 목표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홍보

□ **지표 측정을 위해 기초 통계자료 분석 및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농업과학원 협력을 통해 산지·농지의 토지생산성 분석 및 지속적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

○ 본류·지류하천과 홍수 취약지에 대한 **하천정비 추진**

-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의 우선순위에 따라 홍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정비 지속 추진

  * ('17년) 국가하천 82건, 지방하천374건, ('18년) 국가하천 73건, 지방하천 400건

○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천설계기준 개정('18.12)

- 선택적 홍수방어 도입, 도시침수 예방,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을 반영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토지황폐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이행**

○ UNCCD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이행계획의 지속이행('23~'30)

□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

○ 국가하천 홍수취약구간* 개선 대책, 「하천 종합정비계획('26~'35)」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 안전도 향상

* 하천 합류부, 협착부, 감조하천 등 홍수대응 취약구간

○ 하천시설 관리 및 하천사업에 개정된 하천설계기준 반영('19.~)

[지표] 현재로서는 지표 변화의 추이나 목표를 도출할 수 없음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제사회(CB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19~)

○ 국가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권고기준 달성*을 위해 범부처(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합동등 보호지역 협의체 운영

  * 국가보호지역을 '21년까지 전국토의 17%이상 확대('18년까지 15.5%)

○ 각 부처별 누락된 기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국제사회(세계보호지역 DB, WDPA)에 등제하여 보호지역 면적 지속 확대 및 현행화 추진

□ 국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관리('19~)

○ 자연환경 및 지질·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습지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활용('19~)

○ 각 부처에서 지정·관리중인 보호지역을 통합 관리할수 있는 국가보호지역 통합 DB(KDPA)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주요 생태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 주요 산줄기, 정맥, 민통선 북방 등 주요 생태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속 확대

- ('17) 152천ha → ('22) 200천ha → ('25) 250천ha → ('30) 300천ha

○ 2019년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가치를 상실한 지역은 일제 정비하여 보호구역에서 제외

- 육화된 습지, 핵심 보호종이 서식하지 않는 경우 등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식생조사 및 관리효과성 평가

○ 2022년까지 국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318개소의 90% 이상에 대하여 1개소 이상 고정조사구를 설치하고, 5년 주기로 식생조사 실행

- 고정조사구 : ('17) 100개소 → ('22) 300개소

○ 매 5년마다 종합적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는 매년 전체 보호구역의 1/5 이상 실행

- 국유림 보호구역에 대한 시스템과 현장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 추진

□ 산림유전자원 기능증진 사업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 보호구역 지정유형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생육환경 개선

- 생태계보호: 우점종 관리를 통한 생태계 균형 유지

- 특정종보호: 해당종의 생육환경 개선 중점

□ 산림생물에 대한 희귀식물 식물목록 정비

○ 「수목원·정원법」 지정 희귀식물 571종류에 대한 목록 재정비

- 희귀식물 분포 정보에 근거한 희귀식물 571종에 대한 등급 재평가('18년)
  ※ 현재 목록 및 등급은 2012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조사 자료를 근거로 재평가 추진

□ 반달가슴곰 등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20년)

○ 반달가슴곰 등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과 체계적인 서식환경 보전으로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

○ 2020년까지 자체생존이 가능한 최소존속개체군(수)* 달성 목표

구 분	복원목표('20년)	추진실적(17년
반달가슴곰	50	48
산양	100	89
여우	50	19

* 최소 존속개체군(수) : 개체수의 변화, 환경변화, 유전적 변화,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100년 또는 1,000년 동안 생존율 99%를 지니는 개체군(수)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관 및 운영(18년 10월~)

○ 멸종위종복원사업을 체계화하여 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

○ 2030년까지 43종에 대하여 중요성·시급성·도입용이성을 감안하 단계적 도입 및 복원 추진

- 9종(19～20년) →11종(21～25년) → 23종(26～30년)

구 분		건립초기 (9종, 19～20년)	발전단계 (11종, 21～25년)	안정단계 (23종, 26～30년)
동물(28)	포유류(6)	수달(대륙사슴)	사향노루	스라소니, 여우, 산양, 무산쇠족제비
	조 류(5)	저어새	검독수리	황새, 따오기, 두루미
	양서·파충류(6)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 류(4)	흰수마자	부안종개	여울마자, 좀수수치
	곤충류(5)	소똥구리	꼬마잠자리,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대모잠자리
	무척추(2)	두드럭조개	참달팽이	-
식물(15)		나도풍란, 만년콩	노란만병초, 각시수련, 지네발란	금자란, 끈끈이귀개, 무주나무, 비자란, 석곡, 세뿔투구꽃, 진노랑상사화, 콩짜게란, 탐라란, 한라송이풀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평가(MEE) 등 관리기반 강화

○ 국가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평가를 통한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효과성평가(MEE*) 확대 추진

*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국가별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보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하여 IUCN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 국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평가(MEE)를 통해 국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 강화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가보호지역 확대지정·관리

○ 자연환경 및 지질·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습지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림생물다양성 관리 핵심기구로써 산림생태관리센터 육성

○ 2030년까지 전국 13개소에 산림생태관리 센터 설치

- ('17) 8개소 → ('22) 9개소 → ('30) 13개소

○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림생물표본관 설치하고,보호구역내 희귀·특산식물 및 산림곤충 등의 종별 표본 제작

- 확증 표본 확대 ('17) 28천점 → ('22) 40천점 → ('30) 100천점
  * 해당보호구역 내 신규 발견 종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 업무 직무 교육 등을 통한 보호지역 전문가 양성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담당자는 정규공무원 이외에 장기계속 근무가 가능한 직원을 실무인력으로 배치

- 청원산림보호직원, 지역주민 중 산림 생태관련 자격 소지자 등을 우선 채용

○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

- 산림교육원 정규 교육과정 편성, 연구기관 전문가에 의한 수시교육
  * 현장담당자의 식물분류기사, 산림보호기사, 생태복원기사 등 자격취득 지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 수립(18.8월)

○ 그 간의 멸종위기종 복원 및 보전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향후 10년 간의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및 이행

- (추진전략) ① 서식지 보전 강화,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체계적 복원, ③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④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컨트롤 타워 운영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천ha)	152	200	250	30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74.3	90	지속확대		[Σ(반달가슴곰·여우·산양 야생 개체수/최소존속개체군*의 크기×100)]/3 * 반달가슴곰 50, 여우 50, 산양 100 (마리)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내·외 생물자원 조사를 통한 국내 생물주권 확립

○ 자생생물 조사·발굴 가속화(계속)

- 약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자생생물을 지속 발굴하여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확대**
- **미탐사지역 및 미발굴 분야 중심 자생생물 발굴 가속화**

○ 생물자원 유전정보 확보 확대

- 생물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DNA바코드 마커 정보를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오·혼용 및 원산지 판별에 활용('22, 9,300종)

○ 해외 생물자원 조사 및 지원 확대

-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구 생물다양성 공동보전 연구 및 오지 원주민이 활용한 해외 유용생물자원 발굴 추진

□ 유전자원법 이행 부처 협업체계 구축

○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18~계속)

- 유전자원 관리, 연락·책임·점검기관의 행정·기술 지원, ABS 정보 제공 및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구축

○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 유전자원법 이행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지속 운영(계속)

□ 국내 관련 산업계 이행 지원 강화

○ 나고야의정서 해외 동향·법령 등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주요 당사국의 동향 및 법·제도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별 최적 대응 방안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19)
-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 및 관련 법령 해석·제공 확대

※ (현재) 21개국 법령 제공중 → **(확대) 50개국 법령 제공**(~'20)

- 일본 등 유전자원 이용국의 정부 지원책, 인식제고 및 교육활동 사례, 관계부처별 역할 및 기업 대응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전문상담창구 운영

- 유전자원 통합신고시스템(http://www.abs.go.kr) 내에 부처별 온라인 상담창구를 연계하는 온라인 통합헬프데스크 마련
- 변리사 등 BT, 특허분야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산업 분야 특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국내 유용생물자원 소재·정보 확산

- 유용자원의 맞춤형 발아·배양·증식 원천기술 개발 후 국내 바이오기업에 제공, 수입생물소재 대체 및 자생원료제품개발 지원

□ 지속가능한 산림생명자원 이용을 위한 전략적 관리 기능 강화

○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강화

- 지역별로 권역을 구분하여 자생 산림자원 수집
- 국가 조림용 우량 산림종자 생산기반 강화 및 증식기술 개발

○ 산림생명자원의 접근·이익 공유 지원

- 범부처 유전자원 통합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국민 유전자원 접근·이익 공유 신청 접수 및 처리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내 소재 발굴 연구 수행 및 유전자원 분양 확대

○ 국제적 합의 준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한 유전자원 책임기관, 점검기관 업무 수행
- 산림종자 분야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 농업생명자원 '국가책임기관' 업무 수행

○ 국내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기관 등의 신고 승인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 상호합의조건의 체결확인 및 이행에 관한 조사·관리

□ 농업생명자원 ‘국가점검기관’ 업무 수행

○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준수 신고처리

○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 해외 유전자원 접근, 상호합의조건체결서 등 준수

□ 국내자원 주권확보, 이익공유, 분쟁조정 등 대응

○ 유전자원 주권주장을 위한 지표물질 개발 및 표준화 검증체계 구축

○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제회의, 쟁점대응 및 국내 정책수립 지원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내 유전자원 활용도 증진

○ 나고야의정서로 해외국가들의 관련 법령·절차 등이 지속 마련될 예정으로, 자원의 국산화를 지원하여 불확실성에 대비 필요

○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DNA 분석 등 관련 연구 지속

□ 전략적 국제관계 형성

○ 해외생물자원 대체자원 발굴, 증식·배양 등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속

□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로 생물주권 보호 및 신성장 경제동력 확보

○ 산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의 제도적 안정화를 통한 생물주권 수호

○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의 소재가 되는 산림생명자원 발굴 및 연구개발로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 창출

○ 산림생명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농업생명자원 ‘국가책임기관’ 업무 수행

ㅇ 국내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기관 등의 신고 승인

ㅇ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ㅇ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ㅇ 상호합의조건의 체결확인 및 이행에 관한 조사·관리

ㅇ 관련 법령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

□ 농업생명자원 ‘국가점검기관’ 업무 수행

ㅇ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ㅇ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준수 신고처리

ㅇ 관련 법령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

□ 국내자원 주권확보, 이익공유, 분쟁조정 등 대응

ㅇ 국내 고유자원 주권과 이익공유 근거 구축을 위한 유전체정보 분석

ㅇ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법률 해석 및 농산업 자원 분쟁조정 지원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의 진행 건수	-	500	550	600	유전자원법에 따른 국가책임·점검기관 업무 수행 건수(자원분양, 활용결과 모니터링, 상담 등에 대한 농업유전자원 정보시스템 DB화 건수)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	-	10	20	30	CBD 사무국이 운영하는 ABSCH에 공개해야하는 국가 정보(국가기관 정보, 법률정보, 국가보고서 등)의 등록·갱신 건수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수립 시행(매년)

ㅇ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수립('00.3) 이후, 매년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00~'16)

- 환경부, 검 · 경, 지자체, 밀렵감시단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 수거

<밀렵 · 밀거래 단속실적>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적발건수	771	643	480	366	310	364	226	168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홍보 실시('00 ~ '16)

- TV 캠페인 광고, 버스광고,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배포, 전광판, 반상회보 게재 등 대국민 홍보 실시

○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15)

- 밀렵신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최고 500만원)

□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감시 및 서식지 보호 활동 지원(매년)

ㅇ 밀렵밀거래 행위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인간과의 바람직한 공존 도모

ㅇ 지역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 등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 먹이주기('17년): 269회, 2,401명 참여(먹이량 268,605㎏)
- 불법엽구 수거실적('17년) : 올무·덫 등 10,066점(뱀그물 40,470m)
- 야생동물보호 홍보실적('17년) : TV, 신문, 현수막, 반상회보 등 캠페인 실시(총 4,281회)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기반 구축

ㅇ 점차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 추진

○ 야생동물 서식밀도 및 분포조사, 서식실태 등을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제공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0)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68	150	지속확대		밀렵(총기, 엽구, 동물), 밀거래, 엽구제작판매 등 적방건수 결과보고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외래 유입 병해충·잡초의 분포 및 발생 조사

○ 공적방제 병해 발생 분포 및 발생 조사

* 대상병해 :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PPV, 선충 등

○ 전국 단위 외래 유입 해충 분포 및 발생소장 조사

- 발생 분포 및 기주 확인, 밀도 조사법 개발

* 대상해충 : 감자뿔나방, 블루베리혹파리

○ 농경지내 생태계교란 외래잡초 등 분포 및 발생 조사

* 대상잡초 : 서양금혼초, 가는털비름, 미국나팔꽃 등 10종

□ 외래 유입 병해충의 영향·취약성 평가

○ 돌발 외래 병해 발생실태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 대상병해 : 벼 도열병, 감자 시들음병

○ 침입 돌발해충 및 남방계 해충 영향·취약성 평가

* 대상해충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세대수 및 국내 분포 지역 변화 분석
- 국내 분포 및 환경 요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환경 적합도 분석
- 월동밀도 조사, 지역별 부화약충 밀도 조사 등
- 해충별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상요인, 민감도요인 등 자료 수집

□ 외래 유입 병해충·잡초의 방제기술 개발

○ 공적방제 병해에 대한 방제기술 개발

- 경종적, 화학적, 생물적 방제법 개발과 상호 연계 방법 확립

* 대상병해 : 화상병, PPV, 선충 등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도입천적 대량 증식(~'20)

- 선녀벌레집게벌, 검정알벌 등 대량증식 기술 개발

○ 꽃매미 트랩식물, 미국선녀벌레 트랩식물 등 돌발해충 선호 기주식물을 이용한 트랩식물 개발(~'21)

* 가죽나무, 해바라기 등을 트랩식물로 활용

○ 문제 외래잡초에 대한 방제기술 개발

- 물리적, 경종적, 화학적 방제법 개발과 서로 상호 연계된 방법 확립

* 대상잡초 : 서양금혼초, 가는털비름, 미국나팔꽃 등 10종

□ 외래종 침입 사전예방

○ 외래종 유입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

- 공항, 항만, 수입품 창고 등 외래생물의 비의도적 도입이 우려되는 지역 주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외래생물 모니터링 확대

○ 외래종 위해성 평가·관리 기술개발 및 관리대상종 확대

- 침입 외래생물의 분포·확산 예측 및 정량적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17~'23년)

-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생물 등 관리대상종 확대 지정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확대

□ 침입 외래종에 대한 강력한 사후대응

○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 생태계교란생물 정밀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침입 외래생물 조기 발견 및 조치

○ 친환경 방제·퇴치 기술개발 추진 및 제거사업 확대

□ 2020년까지 침입외래 식물에 대한 전국적 현황조사하고 2022년까지 침입외래식물 종합대책 마련

○ 전국 시·군단위 10개 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

- ('17) 제주, 전남, 전북 → ('18)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 ('19) 강원, 경기, 서울, 인천 → ('20) 충남, 충북, 대전

* 단풍잎돼지풀의 경우 강원, 경기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경남북 지역까지 확산된 것을 확인

*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03)292→('17)320종 '03년도 대비 28종 증가(9.6%증)

○ 침입외래 식물에 대한 전국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침입외래식물 종합 대책 마련

- 분포현황,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 돌발·외래 산림병해충에 의한 피해면적을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적기 예찰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 2022년까지 중점관리 외래 돌발해충을 중심으로 체계적 방제를 통해 외래돌발해충 등에 의한 피해를 연간 25천ha 이하로 관리

- (13년) 26,618 → (15) 22,161 → (‘16) 27,966 → (’17) 26,230ha

  * 주요병해충 :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발생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시계열 추이 분석,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패턴인식 등

○ 해외 병해충 발생동향 등 정보교류 확대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 유관기관 방제대책 협의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참여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외래 유입 병해충·잡초 모니터링 및 피해 조사

○ 돌발 및 외래유입 병해 발생 및 피해조사

- 병해 종류, 발생지역, 발생포장, 피해정도

  * 대상 병해 : 국가관리 병해

○ 돌발, 남방계 및 비래 해충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연구(~‘25)

  * 대상해충 : 돌발, 남방계 및 비래 해충 각 5종

○ 목초지 문제 외래잡초 분포조사 : 도깨비가지 등

□ 외래 유입 병해충·잡초 관리

○ 식물병의 효율적 방제기술 개발

- 경종적, 화학적, 생물적 방제법 개발
  * 대상병해 : 돌발,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 우려 병해

○ 외래 유입 해충 확산방지기술 개발
- 볼록총채벌레, 포인세티아총채벌레 등 확산방지 기술 개발

○ 목초지 문제 외래잡초의 효율적인 관리기술 개발 : 도깨비가지 등

□ 외래생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 관계부처 간 관리책임의 명확화,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국내 도입단계에서의 사전예방적 관리, **국내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 강화 추진**

□ 외래생물 관리 전 기술 활용

○ 외래생물 관리 모니터링-예측 및 위해성 평가-제거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적극적인 사후 관리 추진**
- 침입외래생물 확산 **예측 및 위해성평가 DB 구축 및 운영**

□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 구성

○ 외래식물에 대한 연구조사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주로 담당
- 산림청 : 산림지역, 환경부 : 비산림지역

○ 산림청과 환경부가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과 일반 지역에서의 외래 침입종에 대한 종합적 대응 기반 마련

○ 또한 침입 외래 병해충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협력체계 구축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외래 유입 병해충·잡초 조사 건수	4	10	13	20	외래 유입 병해충 잡초 조사 여부
돌발, 남방 및 비래 해충 발생 실태조사법 개발	6	15	20	30	해충별 실태조사 표준기법 개발 여부
돌발, 남방 및 비래 해충 영향평가 지표 개발	6	15	20	30	기후변화가 해충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지표 산출 여부
돌발, 남방 및 비래 해충 취약성 평가법 개발	6	15	20	30	돌발, 남방 및 비래 해충의 정확한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여부
외래 유입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4	10	13	20	외래 유입 병해충 잡초 방제기술 개발 여부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외래생물 관리 대상 종	148	250	350	500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관리되는 종 수 ※ 지정·고시되는 종 수 (위해우려종(법22조)+생태계교란종(법24조)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26,230	25,000 이하	25,000 이하	25,000 이하	돌발/외래 산림병해충 피해 발생 현황

15-8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주요산림 지역 훼손지 및 단절된 산림 생태축 연결·복원강화

○ 보전가치가 높은 백두대간·DMZ 내 훼손지 생태복원 추진

- 훼손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지 선정, 자생종 활용을 원칙

  * 백두대간·DMZ지역 복원계획: ('17) 315ha→ ('22) 411ha

  * 산림생태축 연결·복원계획: ('17) 5개소 → ('22) 11개소

○ 정맥·지맥, 채광·채석지 및 생활권 대규모 훼손지 복원추진

- 훼손규모, 생태계 영향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도심, 생활권 등 기타지역 복원계획: ('17) 150ha → ('22) 369ha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산림복원 개념의 고도화 및 체계화 추진

○ 지형복원, 식생복원, 생태복원 등 다양한 복원개념을 통합하고,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복원방법을 체계화

- 산림복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병행

○ 복원대상지 선정,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 Eco-region 개념의 적용, 복원소재 사용 가이드라인 포함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면적(ha)	315	411	500	700	백두대간/민북지역 등 복원 면적
도심/생활권 복원(ha)	150	369	450	500	도심/생활권지역 복원 면적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전담시설 확충으로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 성폭력·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지원 제도에 관한 홍보 실시 확대

* 해바라기센터 : ('12) 30개소 → ('16) 37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 ('12) 1개소 → ('16) 58개소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등
-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성폭력 예방교육, 성고충 상담관 운영, 현장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대 내 성폭력 근절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공공·민간부문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피해구제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성희롱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 기관 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

□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관계부처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 스토킹, 데이트폭력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스토킹’ 죄목 신설,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처벌법 제정 추진 등

- 온라인 성범죄 처벌 규정 개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등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법령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여성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식 개선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 수사관계자 ‘인권의식교육’ 지속 추진 및 수사기관 사건대응 매뉴얼개발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성폭력 사건처리 등 관계자(사법·언론·의료계) 대상 교육과 세미나의 개최 지원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관리·감독 내실화
-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인프라 확대

- 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및 피해자보호시설 확충
-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장애인 피해자 특화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확대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 대상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교육
- 해바라기센터에 배치된 성폭력피해자 조사관 대상 '성폭력피해 자녀를 둔 지적장애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보급 및 교육

○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긴급구제·보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14. 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14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기능 회복 노력 필요
  * ('13년) 6,796건 → ('14년) 10,027건 → ('15년) 11,709건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 신고의무자 직군(현 24개 직군, 약168만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명을 추가
- 신고의무 규정과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주기적 고지 및 교육 강화

□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교육
-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8개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시설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구축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사후관리

[지표]

구분	실적* ('16)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폭력사건 신고건수	30.9만	지속적 감소			- 매년 통계청 발표자료

※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조직범죄로 통계를 구분하여 개발 필요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 사례 확인·조사 등 발굴체계와 사후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쉼터, 전담치유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 학교에서 아동학대 피해학생 발견 시, 관련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협력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처합동 대책 마련 추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마련하고,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연 2회)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조치 추진

□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피해아동 내원 시 전문의가 신속하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아보전·지자체 공무원·법조인·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

○ 민간 가정의 자발적인 위탁·돌봄체계 개발 추진

[지표]

구분	실적* ('17)	목표 ('22)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아동폭력 사례 수	-	지속적 감소			** 통계산출 불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경찰권 분산 및 인권 친화적 경찰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수사권조정안시행**

- **검사의 이의 제기권 행사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검찰인사 중립성 · 독립성확보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 독립성**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실효성 확보

□ 광역단위 자치경찰

○ **자치경찰관련법률을 제 · 개정**하고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실시**

□ 경찰개혁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경찰진압 장비 사용요건 법규화,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수시보고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고, 법무부 산하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실시와 인권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확대 및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필요

* 화상조사 시스템 추가 구축 ('13년 17개 → '17년 32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확대 ('13년 42.4% → '17년 62.72%)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 구제

○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 군내 인권보호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15. 12.)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16. 6.)

○ 병역생활 전문 상담관 운영규모 확대, 국방헬프 콜센터 및 국방 인권 모니터단 확대운영 등 장병

○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강화 하고, 병영 언어문화 개선, 자살예방종합대책 추진, 인성검사 개선추진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시설 내 수용자 상대 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한 인권실태 점검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병행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 법무부와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간 화상조사시스템 확충 및 적극 활용
- 전화·이메일을 활용한 효율적 조사를 통한 신속한 조사와 직접 조사 강화

□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정 지속 추진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집단민원이나 대형·집단갈등민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효과적 조정 도모
- 분야별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의 소통기반 마련

○ 각급기관 민원담당 직원의 고충민원 마인드 함양 및 민원처리역량의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및 옴부즈만 교육 실시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고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처리역량 지원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불법자금 및 무기거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추진

○ 현황파악 이후 대책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필요

□ 불법자금 및 무기 등의 환수와 반환조치 등과 관계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현황을 파악, 대책마련 검토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개최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통해 공공 (행정)부문 청렴수준 진단

- 7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제공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유인(계속)

□ 민간 부문 청렴수준 진단

○ 민간 부문(산업 부문별) 청렴수준 신규 측정

- 민간 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을 신규 개발('18)하여 산업 부문 청렴수준 진단 추진('19~)

□ 국가 청렴수준 종합 진단

○ 공공·민간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청렴지수 개발 및 측정 추진

- 국가 청렴지수 측정모형 개발('19~'20) 후 청렴수준 진단 추진('20~)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가 청렴수준 진단 지속 추진

○ 신규 측정하는 국가 청렴지수의 신뢰도·타당도 제고를 위해 측정 모형 등을 지속 개선

○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국가 전 분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 유도

○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 청렴·반부패 노력 유인

[지표] : 민간 부문 청렴지수 및 국가 청렴지수 모형 개발 후 구체적 수치의 목표 산출 가능

구분	실적* ('17)	목표 ('20~'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국가 청렴지수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 7.94점	국가 청렴지수 측정 결과 발표	현재 기준 산출 불가 - 국가 청렴지수 측정 모형('19년 개발 예정)에 따름

○ 국가 청렴지수 측정 모형 개발 전인 '19년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민간 부문(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결과 활용

○ '19년도 국가 청렴지수 측정 모형 개발이 완료되면 '20년부터 국가 청렴지수 측정 결과를 종합지표로 활용 가능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열린 공공기관) **공공기관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

○ (평가체계 개선)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감사독립성강화**및 **노동이사제 도입**

○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고도화

○ (혁신적인 열린 정부) **정부혁신 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정보공개·기록관리 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 제고

○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사회혁신관련기본법**(가칭) **제정,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정책박람회 정례화·지방확산 등 추진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온라인서비스·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행정 구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서비스 제공,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16-8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대책마련 및 목표치에 대한 설정 검토 필요**

16-9 모든 사람에게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법적지위를 부여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현황 및 실질적 대책마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현황 및 실질적 대책마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16-11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현황 및 실질적 대책마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16-12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인권교육 진흥 추진

○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점검 기능 강화 지속 추진

- 정부 내 인권교육에 관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인권교육의 지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추진
- 국내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 실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육 자료에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7대 국제인권조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지속

□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 교과용도서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시 인권 관련 내용 포함

□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 유형별 이해,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내용으로 교육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 ‘대한민국 1교시’ 수업

□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관련 학과개설 유도

- 전국대학에 대한 학과, 학생정원 정보 제공(‘대학알리미’ 시스템, 책자 배부 등), 인권 관련 학과개설 유도
-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한 인권관련 학과개설 유도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권익 침해 유형별 제도,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을 종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콘텐츠 보완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육청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실시(특성화고 → 학교 밖 지원센터, 일반고, 중학교에 확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과 폭력예방을 위하여 성·인권 교재 개발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추진

○ 아동권리 교육 교재 개발·보급 및 아동 대상 교육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을 담은 아동권리 교재개발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

□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 및 표현을 자제하는 캠페인 실시
- 성평등 언어·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화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을 강조하는 캠페인 확산 및 홍보

○ 성불평등 명절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및 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 중·단기 이행계획('19~'30)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대책 및 남북협력방안 마련

17-1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 주기는 '16-'20년간 목표를 포괄하고 있고, 이후의 중장기 목표는 '20년중 국제개발협력위회 협의를 거쳐 수립 가능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20)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명시된 재원규모 확대 목표에 따라 '20년까지 ODA/GNI 비율을 0.2%로 확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ODA 재원 운용

- 유·무상 비율 40:60, 양·다자 비율 75:25 수준으로 유지
- ODA의 비구속성은 유상 55%, 무상 95% 수준으로 확대

□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 지원 (~'20)

○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여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 강화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20년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논의를 거쳐 '30년까지의 장기적 목표 설정

○ '30년까지 ODA/GNI 비율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인 0.3%까지 확대하겠다는 기본 목표(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를 구체적 논의 통해 검토 필요

구분	실적* ('17)	목표 ('20)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GNI 대비 ODA 비율	0.14	0.20	-	0.30	ODA/GNI*100

※ 최빈국에 대한 ODA/GNI 비율을 지표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필요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협력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KOICA를 통해 기 추진중인 '한-베트남 친선 IT 대학 설립지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지원 지속

○ 설립된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연계 사업 지원

○ 인프라 활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계사업 지원

□ 과학기술 정책 지원 및 과학기술-산업간 연계 지원

○ 과학기술 분야 정책 컨설팅 및 대학과 기업간 연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인프라, 인력, 산업(산학연)간 연계 메커니즘 활성화에 기여

- KOICA를 통해 기 추진중인 '도미니카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과 같이 과학기술 정책 컨설팅과 산학연계를 함께 지원하여 정책, 산업, 학계가 함께 연계·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지속 추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과학·기술·혁신 요소를 개발협력 전반에 반영

○ 선진기술 및 혁신을 통해 범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과학·기술·혁신 요소 반영 (~'30)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SDGs 이행에 있어 개도국 개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 개도국 수요 및 우선순위에 입각한 국별 맞춤형 사업 추진

○ 개도국이 주축이 되어 개발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삼각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 주인의식 및 SDGs 이행 역량 강화에 기여

□ 개도국 SDGs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속 지원

○ 개도국의 국가개발계획에 SDGs를 내재화하고,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개도국 SDGs 이행 역량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SDGs 이행을 위한 개도국의 수요 지속 파악 및 우리 개발협력 사업에 반영

○ 유엔에 제출하는 개도국의 자발적국별점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결과 검토 등을 통해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수요 파악

○ 개도국 수요를 반영하는 양자·다자성 양자 사업 발굴 및 지원

17-5 지속가능발전의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K-SDGs 수립 및 수정·보완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을 완료**하고, **지표 및 지표 목표치**에 대한 **수정·보완** 추진('19~)

□ K-SDGs의 모니터링 강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K-SDGs 세부목표별 모니터링 방안을 정립하고, 결과 공표를 정례화**

○ 기존 통계산출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산출 메커니즘을 개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격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경제·환경 전반의 지속성을 제고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조정 역할 확대

○ 범부처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K-SDGs의 목표를 달성하고, 제2차 K-SDGs 세부목표·지표 설정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구분	실적* ('17)	목표 ('20)	목표** ('25)	목표** ('3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조정 건수	지속 확대				정책조정 건수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수립 완료	평가 및 수정·보완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포용적 개발협력 협의체인 부산 글로벌파트너십(GPEDC)* 활동 지원**

* GPEDC: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결과로 2012.6월 출범한 포용적 개발협력 협의체로 개발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개발주체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개발협력 모니터링 지원

○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개발 주체간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19년, '21년)

○ 개도국 개발효과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GPEDC 연수 프로그램 개최('20년, '22년)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방향 검토**

○ 2014년부터 운영된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및 연수의 SDGs 이행 기여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운영 방향 검토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 단기 이행계획('19~'22)

□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구축

○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추진원칙, 목적 및 목표, 이행방안 등이 포함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 마련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국제개발협력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적 틀

-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8.12월 잠정)에서 의결 추진('18)

○ 민관협의체 신설 및 정례적 개최를 통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실현할 구체 이행과제 선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마련('19)

- 정기적으로 과제별 이행점검 실시 및 보완 검토

□ 국제개발협력 사업 기획 및 평가 단계에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무상 개발협력 신규 사업 대상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확대('19~)

○ 무상 개발협력 사업 이행점검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19~)

□ 「제3차 국제개발협력분야 종합기본계획(2021~2025)」 수립시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포함('20)

□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 비정부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아웃리치 활동 지속 전개

○ 국제개발협력 국제 담론, 정책 및 사업, 주요 이슈에 관한 민관합동 아웃리치 행사 개최

2 중장기 추진과제('23~'30)

□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지속 확대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시행, 사업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세미나 1 -

K-SDGs 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K-SDGs 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 MEMO

|K-SDGs 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 MEMO

세미나 2

- 세미나 2 -

L-SDGs 추진 사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준비에서 수립까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목 차

01 배경 및 목적
Background & Objectives

02 추진 방법
Enforcement methods

03 세부 추진 과정
Planning Processes

04 주요 추진 사례
Major Cases

2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1. 배경 및 목적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목 표 | 17개

세부 목표 | 169개

당진 지속가능발전목표

목 표 | 17개

전 략 | 57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중

3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2. 추진 방법

주요사업 진행경과

15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발족 / 활성화**

지방의제21(맑고푸른당진21)→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2015)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 및 제1기 위원 구성(110명)
- 5개 분과 | 사회, 경제, 환경, 도시계획, 교육문화
- 분과별 지속가능발전 의제발굴 등 운영 활성화
- 위원 전체 워크숍 2회(제1차, 제2차)

4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2. 추진 방법

주요사업 진행경과

16 ○ 지속가능발전 지역 여건 분석

with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 ① 추진 기반 및 체계 마련, ②추진체계 운영
- 지속가능발전 제도 구축 | ① 전담조직 구성, 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③기본조례 제정 준비 등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및 전망(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노력, 시의회 공조 유지 등)
-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교육 (공무원, 시민, 기업체 대상)
- 위원 전체 워크숍 3회(제3차, 제4차, 제5차)

5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2. 추진 방법

주요사업 진행경과

17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17개 목표, 57개 전략 | 88개 지표

-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접 연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당진시, 시의회, 지속협)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위원 전체 워크숍 4회(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 5개 분과 주관 작은 워크숍 5회
- 제1회 당진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총5강)

6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2. 추진 방법

주요사업 진행경과

18 ○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본격 가동

전담조직 구성 | 협력 사업 추진

- 지속가능발전 이행 전담조직 구성(기획예산담당관 -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 지속가능발전지표중장기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부서 목표 완료)
-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지역전문가, 공무원 교육)
- 당진SD지표 세부 목표 수립(민관 합동 워크숍)
- 시정 업무계획과 연계 추진 (`19년도 시책구상 및 주요업무계획 대상)
- 위원 전체 워크숍 4회(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예비위원)
- 작은 워크숍 5회 / 제2회 당진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총8강)

7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2. 추진 방법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당진)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2. 추진 방법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조사, 연구 , 시민 교육, 홍보
3.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행정, 기업 등의 참여 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9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3. 세부 추진과정

지속가능발전 협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기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중심 의제논의 및 참여 활성화

추진방향

- 거버넌스 중심 시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실질적 시민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
  - 제1기 위원 : 5개 분과, 110명 위촉
- 지속가능발전 선진지 견학 등 홍보 및 실천 교육 전개

10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3. 세부 추진과정

지속가능발전 지역 여건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지역의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로드맵 수립

추진방향

- 당진시 정책 지속가능성 진단
  중장기 계획 현황 및 진단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 시민체감형 지표 개발 필요
- 지속가능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전담조직 구성 : 단체장 직속, 기획총괄부서, 환경부서
- 지속가능 거버넌스 중심의 주민자치위, 시의회 연계 노력
- 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 강화
  시민, 공무원 대상 교육

11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3. 세부 추진과정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직접연계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당진형 모델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계획
- 민관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당진시 계획 → 시민 참여 계획
-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다층거버넌스구축

12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3. 세부 추진과정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4. 주요 추진 사례

지속가능발전 지역 여건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지역의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로드맵 수립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전담부서 지정 /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환경정책과 →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성지표 중장기 목표 설정
지표 목표 가이드라인 설정 (전문가 자문)
부서 목표 완료, 거버넌스 목표 10월 중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강화
공무원교육시행(강사 : 김홍장시장)
지역 리더 양성교육 (협의회 위원 대상)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시정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 추진
`19년도 시책구상 및 주요업무계획 대상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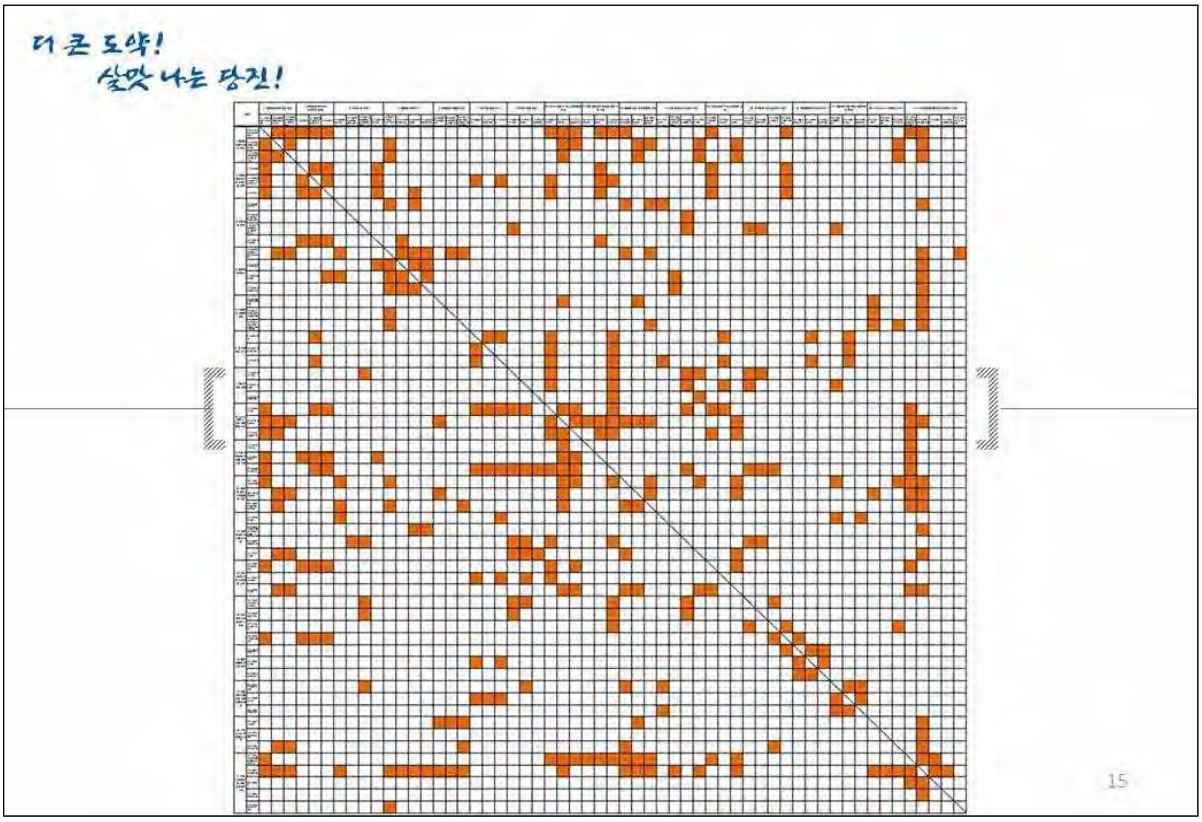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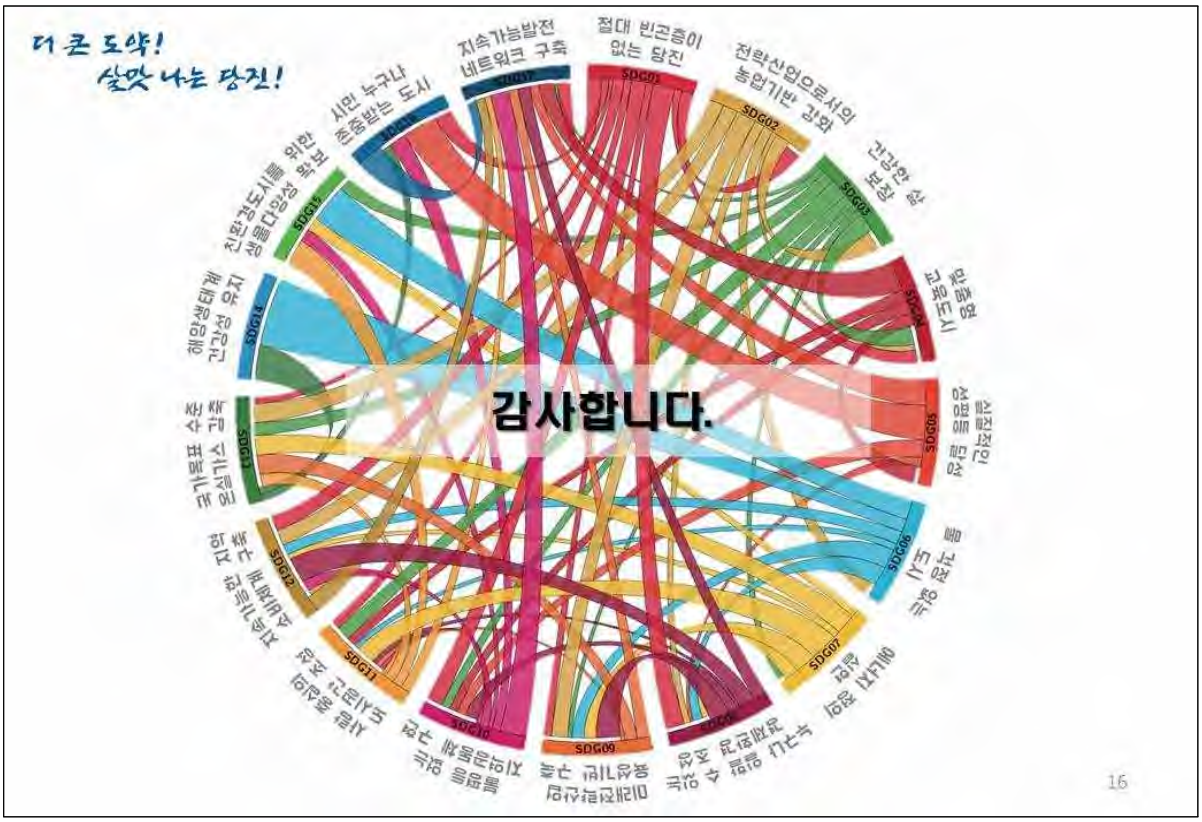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절대 빈곤층이 없는 당진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기반 강화
건강한 삶 보장
교육도시 만들기
지진전진의 성공을 위한 도시
물 관리 및 위생 보장
에너지 접근성 확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발전 조성
미래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
불평등 없는 지역공동체 구축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친환경도시를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
감사합니다.
16

- 세미나 2 -

K-SDGs 확산과 L-SDGs로 전환을 위한 자유토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K-SDGs 확산과 L-SDGs로 전환을 위한 자유토론| MEMO

|K-SDGs 확산과 L-SDGs로 전환을 위한 자유토론| MEMO